

## 머 리 말

最近 2~3年前 부터 우리는 對內外的으로 너무나 급격한 變化를 겪고 있다. 이 變化의 소용돌이를 극복하고 우리 經濟를 지속적으로 成長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全國民의 力量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國民的 潛在力을 동원하고 組織化하여 발전의 역량으로 승화시키는 일을 과거에는 政府가 주로 담당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변화된 狀況은 政府가 이러한 役割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民間主導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國民經濟의 資源을 동원하고 이를 生産力으로 조직화하는데 있어서 企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最近에 이르러서는 우리 産業과 企業의 國際競爭力은 약화되고 輸出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企業의 競爭力 回復을 위한 政策的 支援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 研究院에서는 企業의 行態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企業 關聯 租稅政策을 전반적으로 再檢討함으로써 企業稅制의 바람직한 改編方向을 제시코자 이번에 「開放經濟下의 企業稅制 改編方向」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本 報告書에서는 企業稅制가 企業의 경제활동을 歪曲시킬 가능성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改編되어 가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기업세제가 資源配分에 中立의이어야 한다는 것을 基本的인 原則으로 삼고, 法人稅率의 水準과 體系, 法人稅와 所得稅의 二重課稅 調整, 減價償却制度의 改編, 그리고 國際租稅部門의 현안문제 및 現實的인 改編方案 등을 논의하였다.

經濟의 國際化 · 開放化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와 아울러 政府 · 經濟界 · 學界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稅制改編에 대한 論議가 활발한 현 상황에서 本 報告書가 企業稅制의 合理化에 一助가 될 것을 기대한다.

끝으로 本 研究를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서울市立大의 崔明根 · 郭泰元 두분 교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90. 10.

韓 國 經 濟 研 究 院  
院 長 崔 鍾 賢

## 目 次

### 머리말

|                                |    |
|--------------------------------|----|
| 第 1 章 序言 .....                 | 1  |
| 第 2 章 法人稅率의 再檢討와 그 改編 .....    | 4  |
| I. 基本視角 .....                  | 4  |
| 1. 經濟開放의 進展과 企業稅制 .....        | 4  |
| 2. 垂直的 公平과의 關係 .....           | 5  |
| 가. 直接稅 比重提高와의 關係 .....         | 5  |
| 나. 資本所得重課稅論과의 關係 .....         | 5  |
| 3. 資源配分 中立性과의 關係 .....         | 7  |
| 가. 法人部門과 非法人部門間의 資源配分 .....    | 7  |
| 나. 法人種類間의 競爭歪曲 .....           | 8  |
| 다. 財務構造歪曲問題 .....              | 9  |
| 4. 改編의 基本方向 .....              | 9  |
| II. 稅率體系의 具體的 整備方向 .....       | 10 |
| 1. 稅率調整의 基本視角 .....            | 10 |
| 가. 法人稅率 引下調整의 限界 .....         | 10 |
| 나. 바람직한 産業支援方法 .....           | 11 |
| 2. 稅率의 單純化 .....               | 12 |
| 가. 2단계 累進의 廢止 .....            | 12 |
| 나. 非營利法人에 대한 低率差等課稅의 廢止 .....  | 13 |
| 다. 非上場大法人에 대한 高率差等課稅의 廢止 ..... | 14 |
| 3. 法人稅率의 水準 .....              | 15 |

|                         |    |
|-------------------------|----|
| 가. 우리나라 法人稅率의 水準        | 15 |
| 나. 主要國과의 稅率水準 比較        | 16 |
| 다. 稅率의 改編方案             | 17 |
| 第 3 章 企業體質 強化裝置의 合理化    | 19 |
| Ⅰ. 現行制度의 概觀과 그 分析       | 19 |
| 1. 企業體質 強化裝置의 概觀        | 19 |
| 가. 自己資本 充實의 誘引          | 19 |
| 나. 他人資本 依存經營의 抑制        | 20 |
| 2. 誘引·抑制裝置에 대한 分析評價     | 20 |
| 가. 肯定的 側面               | 20 |
| 나. 否定的 側面               | 22 |
| Ⅱ. 合理化方案의 摸索            | 27 |
| 1. 現行 分離獨立 課稅法을 유지하는 경우 | 28 |
| 가. 增資所得控除의 擴充           | 28 |
| 나. 配當稅額控除의 擴充           | 29 |
| 다. 借入金의 支給利子 損金不算入의 廢止  | 30 |
| 2. 統合課稅方法으로 轉換하는 경우     | 30 |
| Ⅲ. 建設資金利子 損金不算入에 대한 再檢討 | 31 |
| 1. 건설자금이자제도의 概要와 그 評價   | 31 |
| 2. 建設資金利子の 廢止           | 33 |
| 第 4 章 二重課稅 調整制度의 導入檢討   | 34 |
| Ⅰ. 基本視角                 | 34 |
| 1. 二重課稅의 問題點=調整의 必要性    | 34 |
| 2. 國際的 動向과 稅制調和         | 36 |
| Ⅱ. 調整方法—立法例             | 41 |
| 1. 完全統合方法               | 41 |

|                            |    |
|----------------------------|----|
| 가. 組合課稅方法                  | 41 |
| 나. 카터식統合方法                 | 42 |
| 2. 部分統合方法                  | 44 |
| 가. 支給配當控除法                 | 44 |
| 나. Imputation 方法           | 44 |
| 다. 配當稅額控除方法                | 45 |
| Ⅲ. 二重課稅 調整方法의 導入可能性 比較     | 47 |
| 1. 우리나라 現行制度의 評價           | 47 |
| 2. 導入可能한 方法의 比較檢討          | 48 |
| 가. 設例                      | 48 |
| 나. 支給配當控除方法                | 49 |
| 다. Imputation 方法           | 50 |
| 라. 半額 Gross up 方法          | 51 |
| Ⅳ. 調整方法의 選擇                | 52 |
| 1. 어느 方法을 선택할 것인가 ?        | 52 |
| 가. Imputation 方法의 도입       | 52 |
| 나. 現行制度中 폐지해야 할 것          | 53 |
| 다. Imputation 方法과 法人稅率의 높이 | 54 |
| 라. Imputation 方法과 稅收減少     | 54 |
| 2. 漸進的 方法의 選擇              | 55 |
| 3. 中小企業法人에 대한 二重課稅調整       | 56 |
| 第 5 章 減價償却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57 |
| Ⅰ. 序論                      | 57 |
| Ⅱ. 減價償却制度에 관한 基本視角         | 57 |
| Ⅲ. 우리나라 減價償却制度의 問題點        | 62 |
| 1. 우리나라 稅法上 減價償却制度의 概要     | 63 |

|                                               |    |
|-----------------------------------------------|----|
| 가. 감가상각의 베이스 .....                            | 63 |
| 나. 耐用年數 .....                                 | 64 |
| 다. 償却의 方法 .....                               | 64 |
| 라. 其他 關聯規定 .....                              | 65 |
| 마. 特別償却 .....                                 | 66 |
| 2. 耐用年數와 償却率의 問題 .....                        | 67 |
| 가. 耐用年數가  규정되는 資産의 分類가 지나치게<br>複雜하다는 問題 ..... | 67 |
| 나. 급속한 陳腐化에 대한 彈力的 對應의 어려움 .....              | 68 |
| 다. 耐用年數가 지나치게 길다는 問題 .....                    | 68 |
| 라. 外國制度와의 比較 .....                            | 70 |
| 3. 加速償却制度의 問題 .....                           | 73 |
| 가. 우리나라 特別償却制度의 問題點 .....                     | 73 |
| 나. 外國의 加速償却制度 .....                           | 78 |
| 4. 인플레이션 調整의 問題 .....                         | 80 |
| IV. 減價償却制度의 改善方向 .....                        | 81 |
| 1. 初年度 費用回收制度의 導入 .....                       | 82 |
| 2. 減價償却制度의 調整 .....                           | 85 |
| 3. 特別償却制度 .....                               | 86 |
| 4. 資産再評價制度의 整備 .....                          | 86 |
| 第 6 章 企業의 活力提高와 競爭力強化를 위한 租稅誘因政策 .....        | 88 |
| I. 序論 .....                                   | 88 |
| II. 우리나라 租稅誘因政策의 現況 .....                     | 89 |
| 1. 産業別 支援 .....                               | 89 |
| 2.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 .....                          | 90 |
| 3. 技術 및 人力開發에 대한 支援 .....                     | 90 |

|                                      |     |
|--------------------------------------|-----|
| 4. 輸出, 海外事業, 海外投資 등에 대한 支援 .....     | 92  |
| 5. 資源開發事業에 대한 支援 .....               | 93  |
| 6. 地域間 均衡開發을 위한 租稅誘因 .....           | 93  |
| 7. 産業合理化에 대한 租稅特例 .....              | 95  |
| III. 租稅誘因政策의 一般的 問題點과 改編의 基本方向 ..... | 96  |
| 1. 租稅誘因 政策目標의 散漫性 .....              | 96  |
| 2. 全體的인 調和와 調整의 未洽 .....             | 97  |
| 3. 方法上的 問題 .....                     | 98  |
| 4. 改編의 基本方向 .....                    | 99  |
| IV. 主要 個別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 101 |
| 1. 技術 및 人力開發 .....                   | 101 |
| 2. 中小企業 및 創業 .....                   | 103 |
| 3. 輸出 및 海外投資 .....                   | 104 |
| 4. 地域間 均衡開發 .....                    | 105 |
| 5. 産業合理化 .....                       | 106 |
| 第 7 章 企業의 海外進出과 그 課稅合理化 .....        | 107 |
| I. 國際化의 進展과 課稅調整의 必要性 .....          | 107 |
| II. 外國稅額의 直接控除制度 擴充 .....            | 109 |
| 1. 現行規定의 內容과 그 評價 .....              | 109 |
| 가. 現行規定의 概要 .....                    | 109 |
| 나. 國際的 二重課稅調整의 3가지 方法 .....          | 109 |
| 다. 우리 稅額控除方法의 具體的 評價 .....           | 111 |
| 2. 改善方案 .....                        | 114 |
| III. 外國稅額의 間接控除法 導入 .....            | 116 |
| 1. 序言 .....                          | 116 |
| 가. 概念 .....                          | 116 |

|                               |     |
|-------------------------------|-----|
| 나. 必要性 .....                  | 117 |
| 2. 導入方案 .....                 | 118 |
| 가. 外國子會社의 범위 .....            | 119 |
| 나. 外國子會社로 부터 받는 配當의 범위 .....  | 120 |
| 다. 간접공제대상의 外國法人稅 .....        | 120 |
| 라. 外國子會社의 配當에 대응된 外國法人稅 ..... | 120 |
| 마. 國外所得計算上 外國法人稅의 益金算入 .....  | 121 |
| 第 8 章 要約 및 結論 .....           | 122 |
| 參考文獻 .....                    | 129 |



## 表 目 次

|                                                   |     |
|---------------------------------------------------|-----|
| 〈表 1〉 우리나라 法人稅率의 水準 .....                         | 15  |
| 〈表 2〉 主要國의 法人稅率 .....                             | 16  |
| 〈表 3〉 負債比率등의 推移와 比較 .....                         | 21  |
| 〈表 4〉 資本費用의 比較計算 .....                            | 23  |
| 〈表 5〉 資本費用등의 比較計算 .....                           | 24  |
| 〈表 6〉 支給利子損金不算入과 資本費用 .....                       | 25  |
| 〈表 7〉 現行 配當稅額控除와 低所得株主의 稅負擔 .....                 | 29  |
| 〈表 8〉 附帶投資費用의 比較計算 .....                          | 32  |
| 〈表 9〉 現行 配當稅額控除에 의한 調整效果 計算 .....                 | 49  |
| 〈表 10〉 配當損金算入에 의한 調整效果 計算 .....                   | 49  |
| 〈表 11〉 Imputation에 의한 調整效果 計算 .....               | 51  |
| 〈表 12〉 半額 Gross-up에 의한 調整效果 計算 .....              | 52  |
| 〈表 13〉 新舊 ACRS 比較 .....                           | 71  |
| 〈表 14〉 韓美間 主要産業別 減價償却 耐用年數 比較 .....               | 72  |
| 〈表 15〉 特別償却制度의 概要 .....                           | 74  |
| 〈表 16〉 特別償却의 效果 I (割増償却의  경우) .....               | 76  |
| 〈表 17〉 特別償却의 效果 II (割増償却과 期初償却이 同時 적용될  경우) ..... | 77  |
| 〈表 18〉 耐用年數 短縮의 稅負擔 輕減效果 .....                    | 79  |
| 〈表 19〉 年度別 海外投資 推移 .....                          | 107 |
| 〈表 20〉 地域別 投資現況 .....                             | 108 |
| 〈表 21〉 3가지 方法의 國際的 二重課稅 調整效果 比較 .....             | 111 |
| 〈表 22〉 限度額 計算方法上의 差異와 調整效果( I ) .....             | 113 |

|                                     |     |
|-------------------------------------|-----|
| 〈表 23〉 限度額 計算方法上の 差異와 調整效果(Ⅱ) ..... | 114 |
| 〈表 24〉 海外進出形態에 따른 實質稅負擔 比較 .....    | 118 |

## 第1章 序 言

最近 2~3년전부터 우리는 너무나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對內的으로도 그렇고 對外的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變化는 우리에게 위기가 될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시각에서 보면 또 한 차례의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변화의 소용돌이를 헤치고 우리 經濟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모두의 역량을 結束한 강력하고도 슬기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國民의 潛在力을 動員하고 組織化하여 발전의 역량으로 승화시키는 일을 과거에는 정부가 주로 담당하였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같이 현재의 변화된 상황은 政府가 이러한 役割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民間主導의 단계에 다다른 것이다. 이 단계에서 노동조합이나 소비자단체 등의 合理的인 견제역할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資源을 동원하고 생산력으로 조직화하는 주도적 역할은 기업이 맡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企業의 行態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관련 조세정책이 이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데 異論이 있을 수 없다. 다만 기업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첫째 기업세제가 기업의 經濟活動을 歪曲시킬 가능성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기업세제가 資源配分에 中立的이어야 한다는 것을 개편방향논의의 가장 기본적인 原則으로 삼고 있다. 물론 企業稅制의 中心인 法人稅는 窮極的으로 中立的이기 어려운 세제이다. 그러나 법인세제의 中立性 追求를 기업세제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놓는 것은 企業稅制가 合理性을 회복해야 한다는 基本原則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는 中立性을 追求하는 가운데도 기업관련 租稅政策이 彈力性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認識하고 있다. 기업세제의 개편이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가 급변하는 對内外與件에 우리 경제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방향설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탄력적”조세정책이 中立性의 原則과 兩立할 수 있는지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현재의 우리나라 기업세제를 보면 두가지 방향이 調和되도록 개편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稅制가 單純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의도된 租稅政策이 有效하게 實行될 수 있어야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며 또 租稅運用의 社會的 費用을 줄인다는데서도 意味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基本視角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法人稅率의 水準과 體系을 검토하였다. 법인세율체계의 단순화를 통해서 그리고 稅率水準의 적정화를 통해서 資本要素의 蓄積과 配分에 있어서의 歪曲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 되었다.

다음 제3장에서는 企業의 體質, 특히 財務構造의 健全화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논의하였다. 궁극적으로는 二重課稅의 解消로 借入經營의 誘因을 근원적으로 없애야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의 代案들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法人稅와 所得稅의 二重課稅調整問題를 논의 하였다. 당장에 완전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세제를 合理化해 간다는 관점에서 이중과세조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이유와 구체적 방안이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감가상각제도 개편방안이 검토되었다. 우리 경제의 때 이른 脫產業化를 방지하고 충분한 성장잠재력을 축적하도록하기 위해서 과도적으로라도 기계설비자산의 내용연수를 대폭 단축하는등 과감하고 적극적인 감가상각제도의 운용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단순하면서도 과감한

제도로 복잡한 특별상각제도를 대체함으로써 세제전체로는 오히려 자원배분의  
조曲이 줄어들 수 있도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6장에서는 組織性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인센티브체계의 단순화와 實效性提  
高를 위한 방안이 검토되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국제조세부문의 현안문제와 현실적인 개편방안등이  
논의되었다.

## 第2章 法人稅率의 再檢討와 그 改編

### I. 基本視角

企業稅制는 法人稅로 대표된다. 그러한 우리나라 법인세의 세율은 첫째 經常的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通常所得(ordinary income)에 적용되는 基本稅率과 비경상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資本利得(capital gains)에 적용되는 特別附加稅의 稅率로 大別된다. 특히 후자는 부동산투기의 억제장치와 직접 관련된 제도인 바 이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法人企業의 富의 創出活動에 직접 관련되는 조세부담인 후자에 국한시켜서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1. 經濟開放의 진전과 企業稅制

① 稅率의 크기와 그 構造는 조세부담의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要素이다. 法人稅의 경우도 그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또한 法人稅의 세율은 資源配分 등 국민경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도 적절한 부담수준·效率과 公平이 調和되는 客觀的인 기준은 아직 明白하게 제시되고 있는 바 없다. 따라서 稅率은 立法政策上의 國民的 선택의 문제이며 이는 자본축적·所得分佈·납세도의·조세행정능력·재정수요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결정되는 國內的인 問題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② 그러나 국민경제의 對外依存度가 심화되어가고 資本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있는 개방경제하에서는 특히 기업세제를 대표하는 법인세에 있어서 세율의 선택이 국내적 사정만을 반영하는 순수한 國內的 問題라고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예컨대 1986년 미국의 레이건 行政府가 稅率을 革命的으로 引下하는 稅法改正을 이룩하자 自由市場經濟體制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강한 영향력으로 波及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개방경제의

국가들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稅制調和(the harmonization of the tax system)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視點에 서서 우리나라의 法人稅率은 再檢討되어야 한다고 본다.

## 2. 垂直的 公平과의 관계

### 가. 直接稅 比重提高와의 관계

현행의 우리稅制에 있어서 가장 批判의 초점으로 부각하는 문제가 間接稅 比重의 異常的 肥大에서 오는 租稅의 逆進負擔이다. 법인세를 직접세로 분류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율을 높여서 직접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論理가 쉽게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소득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까지 고려하는 경우 法人稅의 세율인상조정이 반드시 조세부담의 역진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학자간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法人稅는 株主에게 전가되어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賣上稅와 같거나 아니면 法人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또한 어떤 경제학자는 단기적으로 法人의 株主에게 전가되고 長期的으로는 賣上稅와 같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직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궁극적 목적이 세제전반에서 오는 逆進的 負擔을 완화하여 수직적으로 보다 衡平한 稅制를 만들자는데 있다. 그러나 法人所得稅의 최종적인 부담자가 누구인가하는 문제를 위와 같다고 볼 때 個人稅(Personal tax)가 아닌 그러한 企業稅(法人稅)의 강화가 조세의 逆進的 負擔을 완화하는데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나. 資本所得<sup>1)</sup>重課稅論과의 관계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논의는 資本所得과 근로소득간의 稅負擔 不公平 문제이다. 특히 勤勞所得과의 관계에서 근로소득은

---

1) 法人稅를 法人部門(the corporate sector)에서 使用하는 資本에 대한 조세로 보는 立場을 취하면 法人稅는 資本所得課稅의 범주에 포함된다.

세율이 완전하게 누락되고 과세시기에 있어서도 所得의 지급시점에서 대부분 源泉徵收되는데 반하여 資本所得은 稅源의 漏出이 많고, 대부분이 원천 징수되지 아니하여 납세시기가 늦으며, 근로소득 계산에서는 필요경비를 概算的으로 定額控除할 뿐만아니라 그 공제수준이 不充分한데 반하여 資本所得 계산에 있어서는 필요경비가 實額으로 전액공제되는 구조이므로 資本所得에 대한 세율은 오히려 引上調整되어야 한다는 主張이 있다. 여기에다 근로소득은 땀을 흘린 결과로 얻어 진 經濟價值인데 반하여 資本所得은 不勞所得이라고 하는 主張까지 加勢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理由들에 근거를 두고 法人稅의 負擔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方向으로의 稅率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적다.

첫째 稅源捕捉率이 근로소득에 비하여 낮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세율의 引上調整으로 상쇄하는 것은 不合理하다. 法人 모두가 같은 比率로 所得을 탈취시키고 있다는 전제가 成立할 수 있다면 세율을 引上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租稅脫漏의 정도가 各 法人마다 다른것이 움직일 수 없는 現實이므로 만약에 法人稅率을 높인다면 그 높은 만큼 성실한 法人은 正直에 대해서 罰을 더 받고, 교활한 脫稅法人은 그 不正直에 대하여 賞을 더 받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租稅回避의 유인을 더욱 자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稅源捕捉率의 문제는 租稅行政의 科學化·合理化로 접근해야 할 과제이고 세율의 引上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둘째 資本所得을 不勞所得으로 定義하고 이에대한 稅負擔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企業의 利潤·利子·配當所得이 資本要素에 관련된 所得이고 근로소득이 勞動要素의 所得이라고 定義하는 경우 前者가 重課稅되어야 한다는 論議는 經濟的인 合理性에 기준을 둔 判斷이라기 보다는 주관적 가치에 기준을 둔 판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担稅能力을 客觀的인 經濟的 支拂能力의 측면에서 파악한다고 할 때 금액이 同一하고 소득을 얻은 者의 人的事情이 同一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勞動要素의 所得이든 資本要素의 所得이든 그 担稅能力上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다만 그러한 經濟價值인 소득의 稼得過程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資本所得에 重課稅하여야 한다는 命題는 客觀的인 論理的方法으로 이를 立證할 수가 없다. 따라서 租稅負擔의 기준에다 主觀的이고 恣意的인 要素를 介入시키는 것 자체가 租稅原理上 不適合한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稅制는 경쟁적인 要素市場에서의 가격 결정에 대해 中立性을 유지함으로써 資源의 効率的 配分을 도모하되 要素所得 間에 발생하는 종합적인 소득의 격차는 정부의 소득의 分配政策 내지 再分配政策의 추진에 의해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資本所得의 一部인 法人企業利潤에만 과세하는 法人稅率을 上向調整하는 것은 소득격차의 해소문제에 대한 바른 接近方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3. 資源配分 中立性과의 관계

#### 가. 法人部門과 非法人部門간의 資源配分

法人部門의 企業利潤에 과세하는 稅率水準과 非法人部門의 企業利潤에 과세하는 세율수준에 差別을 야기시키는 法人稅는 두 부문간의 資源配分을 歪曲시키는 된다. 法人源泉所得에 대한 二重課稅의 調整이 不充分한 경우에 法人稅의 稅率이 높으면 높을 수록 이러한 資源配分の 歪曲은 더욱 심하게 되는 바 그 歪曲은 經濟成長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法人部門에의 資源配分을 過少하게 하는 結果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보다 資源을 효율적으로 生産活動에 使用하고 있는 法人部門의 경제活動을 阻害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미 常識化되어 있는 이 문제를 새삼 재음미하는 것은 우리 經濟가 지금 매우 중요한 構造調整局面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 고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국민경제가 이 水準에서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先進國 대열에 까지 도약할 것인가의 岐路에 서 있다고 하는 인식은 현재 보편화되어 있

다.

물론 이와같은 評價가 客觀性이 있다고 단언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生産性의 저하·임금의 인상·기술축적의 不足 등에 의하여 특히 제조업부문의 급격한 국제경쟁력 감퇴는 우려할만 하다고 보는 것이 共通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經濟狀況에서 企業稅制에 內在하고 있는 자원배분의 歪曲要因은 극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歪曲要因을 除去하는 方法의 가장 확실한 것은 法人稅 自體를 없애버리는 방법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個人所得課稅制度의 구상여하에 따라서는 폐지로 감소되는 法人稅收를 補填할 수도 있으나 이 方法은 의회에서의 政治的 호소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實現이 不可能하다. 차선의 方法은 法人稅의 稅率을 점진적으로라도 이를 引下調整해서 자원배분의 歪曲의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法人源泉所得에 대한 二重課稅를 完全하게 조정하는 方法이다. 法人所得稅와 個人所得稅를 統合하는 方法의 구체적 내용은 다시 상론하고자 한다.

#### 나. 法人種類간의 競爭歪曲

法人은 우리 稅法상의 稅率을 기준으로하여 크게 나누면 營利法人·非營利法人 그리고 公共法人으로 分類되고, 營利法人은 다시 非上場大法人과 一般法人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法人들에 적용되는 法人稅의 최고한계세율은 그 높이가 각각 相異하다. 同一한 經濟活動을 영위하고 같은 금액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경영주체인 법인이 어떤 종류의 法人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企業利潤이 부담하는 稅額에 차이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法人種類間에 경쟁을 왜곡시키고 資源配分の 中立性을 阻害하고 있다. 특히 營利法人과 非營利法人의 區別基準은 明白하지 못하며 그 區別基準의 구체적 설정은 稅法을 복잡하게 할 것이다. 法人稅의 稅率構造를 再檢討함에 있어서 이러한

法人種類間 差等稅率이 함께 點檢되어야 할 것이다.

#### 다. 財務構造 歪曲問題

借入資本의 資本費用인 支給利子는 法人의 과세소득계산상 損費에 算入되고, 自己資本의 資本費用인 配當은 法人의 과세소득계산상 損費에 算入되지 않는 構造下에서는 借入資本依存經營으로 偏향되어 法人의 財務構造가 惡化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를 設置한 상태에서 法人稅의 세율만이 引上調整된다면 法人企業의 재무구조는 더욱 더 借入資本에 의존하는 歪曲이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法人稅率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러한 歪曲의 폭은 감소하게 된다. 이의 근본적 치유방법은 法人稅 자체를 폐지하거나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二重課稅를 完全하게 조정하는 것인바 그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뒤에 다시 詳述한다.

#### 4. 改編의 基本方向

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론은 ①法人稅의 負擔을 특별히 높여야 할 타당한 論據는 찾기 어렵다는 것으로 要約할 수 있다. 오히려 法人稅의 세율을 下向調整해야 할 여러가지 理由를 발견하게 된다. ②특히 法人稅의 性格을 部分的 要素稅(partial factor tax)로 이해하면서 資源配分을 歪曲하는 效果를 가지고 있고, 法人段階에다 法人稅를 課稅하고, 株主등 단계에다 個人소득세를 課稅하는 것이 二重課稅가 되어 그 총체적 부담수준에서 보면 法人企業이 課稅上 不利한 不公平을 야기시킨다고 보는 주장도 받아들이는 立場에서 法人稅率 構造가 再檢討되어야 한다고 보고자 한다.

③ 따라서 국제적으로 그 세율의 높이가 調和되면서 資源配分에 中立적이고 法人種類間의 경쟁을 歪曲하지 않으며 財務構造에 나쁜 영향이 적은 그러한 適正한 方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④ 그러한 적정한 方法은 二重課稅調整의 擴充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Imputation 方法 또는 배당손급산입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세율은 상당수준까지 높여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임) 이중과세조정의 不充分性を 그대로 유지하면서

法人稅率을 現行보다 낮추는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⑤ 政府는 시행기간이 1990. 12. 31로 만료되는 방위세를 다시 연장실시하지 아니하고 폐지한다고 公言한 바 있으므로 이번 세제개편에서 이를 폐지하고 이에 代替하는 新稅目은 새로 제정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를 취하고자 한다.

## II. 稅率體系의 具體的 整備方向

### 1. 稅率調整의 基本視角

#### 가. 法人稅率 引下調整의 限界

법인세의 세율은 企業稅制의 세율을 대표한다. 따라서 법인의 본질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법인의 생성이윤이 株主에게로 흘러가는 導管이라고 이해하는 한, 法人稅의 세율은 낮을수록 좋다. 더구나 세제에 내장된 二重課稅調整이 불충분할 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반면 주식의 양도에 資本利得 課稅를 하지 아니하며, 留保所得에 대한 특례과세제도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오히려 대주주들이 법인체를 개인소득 세에 대한 租稅回避處로 이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經濟成長을 주도하는 제조업 특히 技術集約產業에 대하여는 법인세의 세율을 파격적으로 인하조정하여 세부담을 대폭 경감시킬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반면 과소비를 조장하는 事業法人에 대하여는 오히려 법인세 부담을 높임으로써 그러한 저서비스산업으로의 資源配分을 억제할 필요도 또한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법인세 세율을 일률적으로 무차별 引下調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제조업 중 그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法人稅率表를 낮게 별도로 설정할 수도 또한 없다. 이는 업종구분이 매우 어려운 뿐만아니라 세법을 지나치게 복잡화시킨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덤핑수출의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도 있다.

#### 나. 바람직한 産業支援方法

법인세 세율은 산업의 육성정책상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본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산업지원을 法人稅 稅率의 인하방법에 의하여 추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選別支援이 가능한 방법에 의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투자세액공제와 投下資本의 早期回收를 가능하게 하는 減價償却資産에 대한 償却耐用年數의 短縮이다. 이러한 조기상각법 같은 間接支援方法은 감면의 두드러진 표현을 피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법인세의 實効負擔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또한 그 지원대상을 제조업등으로 국한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직접지원방법인 投資稅額控除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법인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대폭 인하조정하는 방법은 租稅論理에 비추어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자유중국의 投資獎勵條例에서 그 시사를 얻어 본다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法人稅의 實質負擔을 낮추는 장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投資獎勵條例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新設事業體에 대하여는 5년간 영리사업소득세(법인세와 사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또는 기계설비의 償却耐用年數를 단축하여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에게는 위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그 단축은 耐用年數가 10년이상인 것은 5년으로, 10년미만인 것은 그 1/2로 하는 것이다.

둘째, 기존사업체가 생산설비를 新增設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增加分 소득에 대하여 4년간 營利事業所得稅를 면제하거나 生産設備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단축하여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중 하나를 납세자는 선택하게 된다. 내용년수의 단축은 위의 첫째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그리고 이 내용년수의 단축은 増資에 의한 설비의 확충과 단순한 설비의 대체가 아니고 生産性 向上을 위한 설비의 刷新投資에도 적용한다.

위의 방법들 중에서 기계설비의 상각내용년수 단축은 사실상 법인세의 實効

負擔을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직접 法人稅 稅率을 인하하는 것 이상으로 현저하게 낮추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産業育成을 위한 지원을 법인세 세율의 일률적인 대폭 인하로 접근하는 방법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 2. 稅率의 單純化

### 가. 2단계 累進의 폐지

우리나라의 法人稅率 構造는 法人의 과세소득금액 8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20%, 그 초과는 30% 또는 33%의 2단계 초과누진구조를 취하고 있다.

① 위와 같은 2단계 초과누진구조와 稅負擔의 垂直的 公平과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法人의 所得은 종국적으로는 그 출자자인 株主들에게 歸屬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法人의 株主들은 모두가 高所得階層에 속한다고 하는 假定이 成立할 수 있다면 소득이 많은 大法人에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진 것이다. 그러나 法人의 株主에는 저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상당수 混在할 수 있다. 이러한 實狀은 資本市場의 大衆化에서 明白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에 속하는 株主인 경우에도 그에게 귀속될 法人所得에는 높은 限界稅率이 적용되는 것이고 고소득층에 속하는 株主에게 귀속될 법인소득에도 낮은 한계세율이 적용된 效果는 同一하게 미치게 된다. 설사 법인세율의 2단계초과누진구조가 수직적 公平부담의 理想을 실현하는데 有效하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법인세율의 누진구조는 개인소득세의 그것에 유사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법인세율의 2단계 누진 구조는 조세부담의 垂直的 公平實現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② 中小企業에 대한 稅負擔 輕減裝置로서의 機能이 있는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988년 현재 中小企業의 87.4%가 課稅所得 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2단계 초과누진구조에서 낮은 限界稅率 20%는 중소기업에 대한 租稅支援의 次元에서 보아 중요성이 있다고 評價되고 있다.

이러한 效果를 긍정하면서도 이 制度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낮은 한계세율은 모든 法人에 적용되고 또는 규모의 크기에 상관없이 과세소득이 8천만을 초과하지 않으면 저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資本規模가 크면서 경영성과가 나쁜 大企業도 조세지원의 대상범위에서 제외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中小企業은 割増減價償却・稅額控除등 기타 租稅支援의 效果가 확실하게 中小企業에만 귀속하는 制度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稅率構造의 差等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또한 2단계 초과누진구조를 폐지하고 單純比例稅率化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中小企業의 87.4%에 해당하는 法人에 대한 稅率이 引上되는 것과 같다. 이 문제는 후술하는 組合課稅方法에 의한 二重課稅의 完全한 폐지로서 대처하면 오히려 中小企業法人과 個人事業間の 조세부담을 균형화시키면서 中小企業法人에 대하여 확실한 조세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③ 2단계 초과누진을 폐지하면 稅法은 그만큼 단순화되고, 또한 二重課稅 調整裝置를 合理的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에서 본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하여 評價할때 法人稅의 稅率을 2단계의 초과누진구조로 유지해야 할 理由가 없다. 따라서 單純比例稅率로 改編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나. 非營利法人에 대한 低率差等課稅의 폐지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의 收益事業所得에 대하여 一般營利法人의 최고한계세율 30% 보다 3%포인트 낮은 27%의 최고 한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社會福祉에 관한 用役의 需要가 급격히 增加하는 추세에서 政府가 財政的

制約때문에 이를 充足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비교적 얼마되지 않는 租稅支出(tax expenditure)에 의하여 이 部門에의 民間資源 投入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資源配分을 歪曲하고, 公正한 市場 競爭秩序를 亂亂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變則的인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통해서 租稅回避의 目的을 恣意적으로 달성하려는 동기유발은 우려할만한 것이다.

그리고 非營利公益法人이 그의 고유목적인 공익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收益事業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과세소득 계산상 收益事業所得 중 一定部分을 고유목적사업에 轉用할 때 이를 損金處理하는 方法으로 그 法人이 수행하고 있는 公益事業을 租稅로 支援할 수 있다. 이러한 制度가 이미 法人稅法에 들어와서 채택되고 있는데 그 위에 다시 최고한계세율을 낮추어 주는 것은 지나친 過保護的 租稅支援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비영리 法人의 최고한계세율 27%는 公益事業을 고유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收益事業所得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동창회와 같은 비영리·비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法人의 收益事業所得에도 적용하게 되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差等低稅率課稅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의 폐지는 課稅의 中立性 提高와 稅制의 單純化에 도움이 된다.

#### 다. 非上場大法人에 대한 高率差等課稅의 폐지

現行法은 非上場大法人(株式發行資本金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自己資本의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法人)의 稅率을 일반영리법인의 최고한계세율 보다 3% 포인트 높은 33%로 규정하고 있다.

① 이 差等高率課稅는 당초에 企業이 上場能力을 갖추고 있음에도 상장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稅制上不利益을 주는 方法에 의하여 上場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장치로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 후 上場節次에 時價發行制度가 들어 왔고 株價가 額面價額의 倍를 넘으면서 上場을 통하여 創業利益을 넘는 利得을 취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고있다. 그리하여 속칭 上場時의 「불타기」이득



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方法을 강구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② 다음 上場法人數의 증가도 급격해졌다.

비상장대법인에 대한 차등고세율과세제도는 1982년 12월에 처음 규정되었는데 이 당시의 상장법인 수는 312개에 불과했는데 1990년 4월말 현재 그 수는 647개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不利益을 주는 方法으로서 上場을 간접적으로 촉진해야 할 必要性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非上場大法人에 대한 差等高稅率課稅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 3. 法人稅率의 水準

가. 우리나라 法人稅率의 水準

우리나라는 法人의 通常所得에 대하여 法人段階에서 法人稅·防衛稅(法人稅의 20%)와 住民稅 法人稅割(法人稅의 7.5%)을 과세하고, 法人源泉所得이 配當되어서 株主段階에다 個人所得稅를 과세할 때 配當稅額控除를 하고 있다. 法人稅와 防衛稅는 國稅에 속하고 주민세는 지방세에 속하여 課稅主體가 상이하지만 稅金을 부담하는 担稅主體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세금이 모두 担稅水準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법인세의 최고한계세율을 기준으로 그 부담수준을 계산해 보면 <표1>과 같다.

<표 1> 우리나라 法人稅率의 水準<sup>2)</sup>

(單位: %)

| 구 분               | 영 리 법 인 |        | 비영리법인  | 공 공 법 인 |        |
|-------------------|---------|--------|--------|---------|--------|
|                   | 일반법인    | 비상장대법인 |        | I       | II     |
| 법인세               | 30.0    | 33.0   | 27.0   | 5.0     | 15.0   |
| 방위세 <sup>1)</sup> | 7.5     | 8.25   | 6.75   | 1.25    | 3.75   |
| 주민세               | 2.25    | 2.475  | 2.025  | 0.375   | 1.125  |
| 계                 | 39.75   | 43.725 | 35.775 | 6.625   | 19.875 |

1) 방위세는 가사업연도 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이 25%이므로 이에 의해 계산함

2) 1990. 1. 1 현재의 法에 의해 계산함

나. 主要國과의 稅率水準 比較

우리나라의 법인세율과 주요국의 그것을 최고한계세율을 기준으로 比較하면 <표2>와 같다.

<표 2> 主要國의 法人稅率

|     |            | 地方政府 | 中央政府 | 合 計  |
|-----|------------|------|------|------|
| 홍 콩 |            |      | 18.0 | 18.0 |
| 臺 灣 |            |      | 25.0 | 25.0 |
| 싱가폴 | 선도산업       |      | 10.0 | 10.0 |
|     | 기 타        |      | 33.0 | 33.0 |
| 日 本 |            | 20.1 | 33.3 | 49.0 |
| 호 주 |            |      | 49.0 | 49.0 |
| 英 國 |            |      | 35.0 | 35.0 |
| 美 國 |            | 9.6  | 34.0 | 40.3 |
| 西 獨 |            | 25.0 | 36.0 | 52.0 |
| 韓國  | 普通法人       | 2.25 | 27.5 | 39.8 |
|     | 非上場<br>大法人 | 2.5  | 41.2 | 43.7 |

자료 : Evans, E. A., "Australia", Pechman J.A.(eds) World Tax Reform, Brookings Institution, 1988, 및 한국수출입은행, 국비투자환경, 1987 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임.

- 1) 美國의 지방정부세는 캘리포니아주를 기준으로 하였음
- 2) 西獨의 경우 기업소득세는(Trade Income Tax)의 세율은 12.5-25.0% 사이에 있으나 최고세율로 계산함
- 3) 캘리포니아주세와 서독의 기업소득세는 중앙정부의 법인세계산시에 소득공제를 인정하므로 이를 계산에 반영함
- 4) 西獨의 법인세율은 56%이나 배당시에 20%를 환급해 주므로 배당분에 대한 법인세율은 36%가 됨
- 5) 日本의 지방세는 법인소득계산시 공제가 가능한 기업세 13.2%와 공제할 수 없는 주민세로 구성됨. 주민세는 법인세(33.3%)의 20.7%이므로 소득에 대하여 6.9%가 됨. 비용 공제되는 기업세는 계산에 반영함

위와같이 단순비교할때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美國의 水準이고 西獨・日本보다 낮으며 英國보다 높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배당세액공제는 법인원전소득

에 대한 二重課稅의 調整이 不充分하지만 英國과 西獨은 배당분에 대하여 임putation(Imputation)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분에는 法人稅 負擔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은 점을 고려해 넣으면서 비교해야 한다. 이렇게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西獨・英國 보다 훨씬 높은 셈이다. 日本의 경우도 배당소득에 대한 二重課稅의 調整이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충분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다. 稅率의 改編方案

① 公共法人에 대한 최저세율(minimum tax)제도를 제외하고 法人種類間의 稅率을 統一하고 2단계초과누진구조를 없앤다. 公共法人에 대한 세율도 단순비례세율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社員이나 出捐者에게 배당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個人所得稅를 과세받는 일이 없고 따라서 二重課稅調整裝置인 배당세액공제도 받는 일이 없게된다. 영리법인과와의 이러한 차이점에서 오는 세율인상조정의 不利益은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收益事業所得을 轉入할때의 寄附金控除制度로 보완한다.

③ 첫째 二重課稅의 調整方法인 Imputation 方法을 채택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에는 세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배당부분에 대하여는 法人稅 負擔이 없는것과 같기 때문에 기업에다 큰 부담을 주지 아니한다. 방위세가 폐지되면서 이를 本稅에 흡수시킨 法人稅의 單純比例稅率은 이를 「35%수준」으로 설정한다. 주변세인 법인세율을 합친 세율수준은 37.625%가 될 것이다. 이와같이 設定하는 경우 최고한계세율 30%를 적용받던 법인은 그 세율이 2% 포인트정도 낮아지고, 33%를 적용받던 법인은 그 세율이 6%포인트 정도 낮아지며, 비영리 법인의 세율은 1.8%포인트 정도 높아진다.

그리고 單純比例稅率로 設定하는 경우 현행세율구조상 25.5%를 적용받던 8천만원이하의 과세표준금액이 모두 12% 포인트 높은 37.625%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이에 의한 法人稅增加要因인 세율인하조정으로 인한 稅收減小額을 相計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민세는 현행세율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분세흡수로 인한 법인세율의 상승때문에 사실상 세율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게된다. 예컨대 30%인 법인세의 주민세율은 소득에대해 2.25% 수준이었으나 35%에 대한 그것은 2.625%가 되는 것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8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현행법상 적용되는 주민세율이 사실상 1.5%가 적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지방주민세의 세수는 그 증가기여도가 더 클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바람직한 결과가 될 것이다.

둘째 Imputation 方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현행수준의 배당세액공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單純比例稅率化하는 法人稅率은 「30%수준」으로 낮추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法人源泉所得에 대한 二重課稅의 조정이 不充分하기 때문이다. 이 수준은 법인세할 주민세 포함으로 32.25%의 수준이 될 것이다.

### 第3章 企業體質 強化裝置의 合理化

#### 1. 現行制度의 概觀과 그 分析

##### 1. 企業體質 強化裝置의 概觀

###### 가. 自己資本 充實의 誘引

우리나라 法人稅法은 법인기업의 자기자본을 充實化시키면서 그 財務構造가 건실해 지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增資所得控除制度」를 두고 있다. 즉 內國法人이 법인주주 이외의 者로부터 金錢出資를 받아 增資를 하면 그 증자한 때로부터 36개월간 증자액에 15%(18%)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課稅所得 계산상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한다(法稅 10의 3).

이를 計算式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text{增資金額} \times \frac{\text{增資登記후의 月數}}{12} \times 15\%(18\%) = \text{增資所得控除額}$$

增資는 법인이외의 者로부터 받은 금전출자이어야하고, 基本控除率 15%는 貸出金利水準을 고려하여 定해진 것이며 上場法人과 中小企業에는 18%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고, 이것이 적용되는 기간은 증자의 變更登記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36개월간만 적용하며, 증자소득공제액은 各事業年度 所得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의 다음 順位로 공제되고 移越控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법인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기 위한 誘引裝置라고 할 수 있다.

#### 나. 他人資本 依存經營의 抑制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一定比率을 초과하는 借入金에 대하여 과세소득계산상 그 지급이자를 損金에 불산입하고 있다. 즉 차입금 비율(負債 ÷ 自己資本)이 200%를 초과하는 法人으로서 다른 법인에 出資한 株式등과 業務無關假支給金を 保有하고 있는 경우에는 自己資本의 2배를 초과하는 借入金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중 法定算式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과세소득 계산상 損金不算入하고 있다(法稅 18의 3 ①). 비록 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업무와 관련이 없는 假支給金を 保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借入金이 自己資本의 2배를 下廻하고 있으면 이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제도는 他人資本依存的 經營에 대한 制動裝置라고 할수 있다. 그 計算式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left. \begin{array}{l} \bullet \text{ 다른 法人의 株式등 價額積數} + \text{假支給金積數} \\ \bullet \text{ 總借入金の 積數} - \text{自己資本의 積數} \times 2 \end{array} \right\} \text{中 작은 金額} \\ \text{支給利子} \times & \frac{\quad}{\text{總 借 入 金 の 積 數}} \\ & = \text{支給利子損金不算入額} \end{aligned}$$

이는 支給利子の 무제한적인 損金算入에 制動을 가하여 借入資本依存經營形態를 自己資本에 의한 經營형태로 유도하고자 하는데 그 立法趣旨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 誘引・抑制裝置에 대한 分析評價

##### 가. 肯定的 側面

증자소득공제와 借入金의 支給利子 손금규제는 법인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① 먼저 우리나라 법인기업의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의 추이를 보면 <表 3>과 같다.

〈表 3〉 負債比率等の推移と 比較

(單位: %)

| 연도   | 우리나라  |      | 미 국   |      | 일 본   |      | 대 만   |      |
|------|-------|------|-------|------|-------|------|-------|------|
|      | 부채비율  | 차입의존 | 부채비율  | 차입의존 | 부채비율  | 차입의존 | 부채비율  | 차입의존 |
| 1979 | 377.1 | 48.4 | 99.1  | 27.8 | —     | —    | 160.5 | —    |
| 80   | 487.9 | 49.3 | 101.4 | 28.5 | 412.4 | 35.4 | 176.9 | 38.3 |
| 81   | 451.5 | 49.4 | 104.7 | —    | 342.0 | 34.3 | 175.9 | —    |
| 82   | 385.8 | 45.9 | 106.2 | —    | —     | —    | 166.4 | —    |
| 83   | 360.3 | 43.7 | 104.0 | —    | —     | —    | 158.5 | —    |
| 84   | 342.7 | 41.5 | 110.1 | —    | —     | —    | 134.5 | 35.6 |
| 85   | 348.4 | 46.7 | 121.0 | 23.9 | 268.8 | 34.7 | 113.6 | —    |
| 86   | 350.9 | 46.0 | 127.3 | —    | —     | —    | 101.5 | —    |
| 87   | 340.1 | 42.9 | 133.1 | —    | —     | —    | 154.8 | —    |
| 88   | 296.0 | 39.4 | 138.2 | —    | —     | —    | —     | —    |

資料: 財政金融統計(財務部, 1990.5)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各年度)

註: ① 負債比率 = (고정부채 + 유동부채) ÷ 자기 자본 × 100

② 借入金依存度 = 對外借入金 ÷ ( 자기 자본 + 타인 자본 ) × 100

우리나라 법인기업 경영상의 차입금의존경향은 점차 감소하고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형태로 전환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와 増資誘因 및 차입의존억제장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통계의 제한으로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실시시기와 관련시켜 본다면 첫째 증자소득공제는 1978. 1. 1. 부터 공개법인과 중소기업법인에 국한시켜 그 시행이 개시되었다. 이 제도가 모든 法人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바뀐것은 1981. 1. 1 부터이다. 증자 소득공제의 効果인지는 그 관계가 불분명하지만 1982년부터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둘째 支給利子の 손금규제제도는 1981. 1. 1 에 처음으로 시행되었고 (이때에는 借入金이 자기자본의 300%를 초과하는 것이 규제요건이었음), 1986년 부터는 그 규제요건을 더욱 강화하였다(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00%를 초과하면 규제대상이 됨). 이 규제가 완전히 效力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1987년과 1988년에는 부채비율등이 더욱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어떻든 증자소득공제가 모든 法人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부채비율이 一定率을 초과하면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산입을 규제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에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추세가 위의 두가지 유인·억제장치의 기능에 힘입은 것이라고 본다면 이는 肯定的으로 評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나. 否定的 側面

위에서 본 유인·억제의 두가지 장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法人稅 課稅制度는 資本費用負擔上 借入資本에 의한 경영이 有利하고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이 不利한 基本構造를 유지하고 있다.

첫째 증자소득공제가 適用되고 있는 기간에 있어서 法人段階와 株主段階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他人資本과 自己資本의 資本費用및 金融所得者の 負擔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법인단계에서만 兩者間の 資本費用을 계산하면 <表4>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 <設例>

- 1) 증자 또는 借入에 의해 조달한 財源인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다고 가정하고
- 2) 그 추가투자에서 利子공제전 利益이 20억원 발생했고
- 3) 配當率과 利子率은 똑같이 年 12%로 하며
- 4) 조세부담액은 총자본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 5) 株主는 1人이라고 가정하며 株主는 다른 所得이 없고
- 6)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1990. 7. 1 현재)에 의하여 세부담액을 계산한다.



〈表 4〉

資本費用의 比較計算

〈法人段階〉

(單位：천원)

| 區 分                   | 自己資本       | 他人資本       |
|-----------------------|------------|------------|
| ① 追加投資資本              | 10,000,000 | 10,000,000 |
| ② 追加投資에서 온 利益         | 2,000,000  | 2,000,000  |
| ③ 支給配當                | 1,200,000  | —          |
| ④ 支給利子                | —          | 1,200,000  |
| ⑤ 増資所得控除(15%)         | 1,500,000  | —          |
| ⑥ 法人稅課稅所得             | 500,000    | 800,000    |
| ⑦ 租稅負擔額 <sup>1)</sup> | 201,462    | 307,400    |
| ⑧ 資本費用(③또는④+⑦)        | 1,401,462  | 1,507,400  |
| ⑨ 資本費用率(⑧÷①)          | 14.01%     | 15.07%     |

1) 조세부담액은 법인세율 20%, 30%로, 방위세율은 25%를 적용하되 증자소득공제액에는 割増稅率을 주된세율은 법인세액에 7.5%를 적용하여 계산했음.

위에서 계산된 資本費用率은 배당율·利子率의 高低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증자소득공제율이 貸出金利子率(은행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증자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36개월간에는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비용율이 오히려 낮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自己資本과 他人資本間의 자본비용이 균형화하는 것은 그 공제기간내에 限하는 것이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자기자본(増資)은 다시 資本費用이 높아지는 본래의 상태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다.

② 다음은 株主段階까지 포함시켜서 양자간의 資本費用및 금융소득자의 부담을 계산해서 비교하면 〈表5〉와 같이 나타난다. 法人에다 출자하고 있는 株主등의 입장에서는 이와같이 계산해 보는 결과가 오히려 그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다.

〈表 5〉 資本費用등의 比較計算

〈法人段階+株主段階〉

(單位: 千圓)

| 區 分                     | 個人株主      | 個人貸主      |
|-------------------------|-----------|-----------|
| ⑩ 配當・利子所得(③・④)          | 1,200,000 | 1,200,000 |
| ⑪ 所得稅算出稅額               | 590,475   | 752,856   |
| ⑫ 配當稅額控除                | 72,600    | -         |
| ⑬ 租稅負擔額 <sup>2)</sup>   | 660,290   | 752,856   |
| ⑭ 資本費用과 金融所得者 稅負擔(⑬+⑫)  | 2,644,290 | 2,260,256 |
| ⑮ 資本費用과 金融所得者 稅負擔率(⑭÷⑩) | 26.44%    | 22.60%    |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산출세액 590,475에서 배당세액 공제 72,600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방위세와 주민세를 계산한 것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기간내의 경우도 法人段階의 資本費用과 株主段階의 金融所得者負擔을 합친 費用은 자기자본이 약 4%포인트 높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比率의 높이는 배당소득이多數의 주주에게分散配當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他人資本도 그 수만큼의 여러사람으로부터 같은 비율로 차입했다면 차입금에 대한 資本費用과 金融所得者の租稅負擔率도 함께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自己資本의 자본비용과 金融所得者の 負擔의 合計가 높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배당세액공제율이 법인세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서 二重課稅調整이 不充分하다는데 있다. 말하자면 배당소득 1,200,000 원원이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은 증자소득 공제가 없다면

$$\text{법인세액} \times \frac{\text{배당소득}}{\text{법인과세소득}} = 592,000 \times \frac{1,200,000}{2,000,000} = 355,200$$

355,200천원인데 배당세액공제액은 72,600천원에 불과하여 282,600천원의 二重課稅效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結論的으로 증자소득공제는 그 공제기간안에서도 자기자본과 타인자본간의 資本費用 및 金融所得者の 負擔을 균형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自己資本

에 의한 經營形態를 유도하는 장치로서는 크게 未洽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支給利子 損金規制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評價할 수 있다.

① 법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단계에나 法人所得稅를 課稅하고, 稅後所得이 주주들에게 배당될 때 株主段階의 배당소득에나 다시 또 個人所得稅를 과세하는 二重課稅가 自己資本에 의한 經營에 不利하게 나타나고, 他人資本에 의한 經營에 有利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不合理를 是正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借入金의 支給利子を 송두리째 損金不算入하는 방법이다. 즉 自己資本의 資本費用이라고 할 수 있는 支給配當이 손금불산입된다고 한다면 他人資本의 자본비용인 支給利子도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하는 論理가 성립될 수 있고, 또한 支給配當과 支給利子を 똑같이 損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自己資本과 他人資本間의 資本費用은 <표6>과 같이 간단하게 균형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法人企業의 他人資本 依存的 經營형태는 일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表 6>

支給利子損金不算入과 資本費用

(單位: 천원)

| 구 분    |                        | 자기자본*      | 타인자본       |
|--------|------------------------|------------|------------|
| 法人所得課稅 | ① 追加投資資本               | 10,000,000 | 10,000,000 |
|        | ② 追加投資에서 온 利益          | 2,000,000  | 2,000,000  |
|        | ③ 支給配當                 | 1,200,000  | -          |
|        | ④ 支給利子                 | -          | 1,200,000  |
|        | ⑤ 法人稅課稅所得              | 2,000,000  | 2,000,000  |
|        | ⑥ 租稅負擔額                | 784,000    | 784,000    |
|        | ⑦ 資本費用                 | 1,984,000  | 1,984,000  |
|        | ⑧ 資本費用率                | 19.84%     | 19.84%     |
| 利子配當   | ⑨ 利子・配當所得              | 1,200,000  | 1,200,000  |
|        | ⑩ 所得稅額                 | 752,856    | 752,856    |
| 所得課稅   | ⑪ 資本費用과 金融所得者 稅負擔(⑦+⑩) | 2,736,856  | 2,736,856  |
|        | ⑫ 資本費用과 金融所得者 稅負擔(⑪÷①) | 27.36%     | 27.36%     |

\*法人段階 課稅에는 増資所得控除가 없고 株主段階의 배당소득과세에는 배당세액공제가 있을 필요 없음

이와같은 방법을 채용하는 경우 資本費用과 資金所得者 負擔은 균형을 이루게 되지만 二重課稅가 強化되고, 그리고 架空所得課稅 때문에 資本費用등은 증가하게 된다. 이는 法人企業의 對外競爭力을 약화시킬 것이다. 우리의 現行 支給利子 損金不算入制度는 部分的으로 이러한 不合理을 內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現行 법인세법이 一定比率 (自己資本의 200%) 이상의 借入金이 있을 때 그 초과부분의 借入金에 대한 支給利子를 法人의 과세소득 계산상 損金에 不算入하는 것은 적년 많던 이러한 思考에다 기초를 둔 發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간편하고 명료한 방법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企業稅制는 이 방법의 채택을 주저하고 기피하고 있다. 그것은 이 방법과 그 論理를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租稅原理와 근본적으로 어울릴 수 없는 결함을 內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資本費用 및 金融所得者負擔을 균형화하는 方法으로는 合理的이고 科學的인 二重課稅의 調整方法이 있기 때문이다.

② 支給利子 損金不算入制度의 根本的인 결함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架空所得에 과세하는 모순이다. 借入金에 대한 支給利子는 金融費用으로 法人밖으로 流出된 經濟價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 계산상 이를 費用으로 공제하지 않는다면 공제받지 못한 지급이자액 만큼 課稅所得이 架空的으로 커지며, 이러한 架空所得에다 조세부담을 지운것이 된다. 이는 所得 있는 곳에 課稅한다고 하는 租稅의 基本命題에 어긋나는 것이다.

철사 지급이자 손금규제가 借入金에 의존하여 경영하는 行態를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가공소득에 부담된 조세액만큼 法人企業의 재무구조는 惡化될 수밖에 없다. 이는 不合理한 경영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 不合理한 政策手段을 선택한 것과 같다.

둘은 租稅法을 支配하고 있는 帝王原則인 實質課稅의 原則에 위배된다. 과세

소득의 계산에 있어서는 實質的인 經濟的 利潤을 實體的 眞實에 맞게 事實과 內容을 判斷하여 稅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實質主義이다. 그런데 經濟的 實質에서 보면 지급이자란 그만한 경제가치가 利潤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債權者(資本의 貸主)에게 귀속된 것이 實體的 眞實인데 이미 流出된 것을 法人의 所得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인 것이다.

셋은 法人段階에 과세할 때에는 그 支給利子를 비용이 아니라고 하여 法人所得으로 과세하면서 債權者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손금부인된 利子相當額이 그 債權者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고 있으므로 이에다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元來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채무자인 法人의 損金이되어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만 과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는 그 不算入된 支給利子額에 대하여 法人稅와 所得稅를 二重課稅하는 모순을 낳고 있는 것이다.

③ 支給利子 손금규제는 세법을 필요이상으로 복잡하게 하고 납세순응을 어렵게 만든다. 稅法의 單純化를 지향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이 제도는 바람직한 立法態度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視角에서 볼 때 支給利子 損金規制는 租稅를 어떤 目標達成을 위한 政策的 道具로 利用할 수 있는 限界를 넘어서서 「濫用」된 것이라고 評價된다. 政策的 도구로서 조세를 利用하는 것은 부담이 귀착될 所得이 實在하는 경우에 한하여 差等重課稅하거나 差等輕減하는 것이지 所得을 架空的으로 의제하여 이에다 부거운 負擔을 지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II. 合理化方案의 摸索

우리나라의 企業體質 強化를 위한 財務構造 改善 誘引 및 他人資本 의존경영에 대한 抑制裝置는 原則的인 正攻方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枝葉的이고 便法的인 方法을 채택하고 있다. 正攻法은 EC諸國이 채택하는 二重課稅의 調整인 것이다. 이중과세 조정방법을 正面으로 도입하는 경우 사실상 증자소득공제나

借入金에 대한 支給利子の 損金不算入같은 복잡한 제도는 不必要해진다. 二重課稅 調整만으로 他人資本과 自己資本의 자본비용및 金融所得者 負擔이 같아지기 때문에 法人稅는 他人資本에 의한 경영실패 그 자체를 없애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合理化方案은 二重課稅 調整方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現在와 같이 分離獨立課稅方法을 유지하는 경우의 그것과, 이중과세를 조정하여 統合課稅方法을 채택하는 경우의 그것을 나누어 검토해야 할 것이다.

#### 1. 現行 分離獨立課稅法을 유지하는 경우

##### 가. 増資所得控除의 擴充

현재와 같이 配當稅額控除가 二重課稅를 不充分하게 조정하여 自己資本에 대한 資本費用및 金融所得者負擔이 他人資本에 대한 그것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増資所得 控除制度의 擴充이 크게 要求된다.

① 控除期間을 延長하여야 한다. 法人段階에서 自己資本과 他人資本間의 資本費用을 감도록 하는 기능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36개월간에 국한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自己資本의 비용이 높아지는 우리 企業稅制의 本來의 구조로 환원되어 버리는데 현행 그 공제기간은 너무 짧다고 評價되기 때문이다. 최소한 5年(60개월)정도로 延長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現행법은 증자소득공제액의 移越控除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課稅所得이 크지 못한 기성법인이 장래 業種을 전환하려고 하거나 새로운 業種分野에 進出을 시도하거나 시설개체투자를 계획하여 재원을 미리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많은 금액의 増資를 주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증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증자소득공제액을 이월결손금처럼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시켜서 공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월공제허용기간은 이월결손금의 경우와 균형을 맞추어 5年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③ 공제율의 水準은 기본공제율 15%, 상장법인과 중소기업법인의 특혜공제

을 18% 수준으로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나. 配當稅額控除의 擴充

分離獨立課稅方法을 계속해서 現行法처럼 유지하는 경우에는 法人段階의 資本費用과 株主등의 個人所得稅 負擔의 合計額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간에 형평을 이룰 수 있는 정도까지 배당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이 배당세액공제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배당세액공제액이 그 주주등의 개인소득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現행법과 같이 「없는 것」으로 하면 저소득계층의 배당소득자에게는 그 공제율의 引上效果가 미칠 수 없다. 現행법에 의하여 이를 계산해 보면 <表7>과 같다.

<表 7> 現行 配當稅額控除와 低所得株主의 稅負擔  
(單位：천원)

| 구 분           | 계 산 예     |         |
|---------------|-----------|---------|
| ① 稅前課稅法人所得    | 2,000,000 |         |
| ② 法人稅額        | 592,000   |         |
| ③ 配當可能利益      | 1,408,000 |         |
| ④ 實地配當(③×50%) | 704,000   |         |
| ⑤ 株主持分率       | (甲) 50%   | (乙) 1%  |
| ⑥ 受入配當金       | 352,000   | 7,040   |
| ⑦ 所得稅額        | 166,475   | 681     |
| ⑧ 配當稅額控除額     | 21,720    | 844.8   |
| ⑨ 納付稅額        | 144,755   | △ 163.8 |
| ⑩ 分離課稅稅額      | —         | 1.056   |

- 1) 法人稅額·所得稅額·納付稅額에는 방위세·주민세를 포함하지 않음
  - 2) 배당세액공제는 現행공제율에 의해 계산함
  - 3) 乙주주 납부세액인 △163.8천원은 환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4) 분리과세 세액은 소득세 원천징수 10%, 교육세 원천징수 5%로 계산됨.
- (A15)

위 表에 의하여 배당세액공제율이 충분한 수준인가의 여부를 검토해 보면 첫째 甲의 수입배당금 352,000천원에 부담된 법인세액은 148,000천원 ( $592,000 \times 50\% \times 50\%$ )인데 배당세액공제액은 21,720천원에 불과하다. 배당세액공

제액을 계산하는 율이 累退構造인데 반하여 법인세율은 累進構造이고, 배당세액공제율의 높이도 법인세율보다 현격하게 낮기 때문에 그 공제수준이 不充分한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그 공제율은 법인세율의 수준과 구조가 비슷한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低所得階層의 株主는 受入配當에 대한 所得稅額이 681천원인데 배당세액공제액은 844.8천원이다. 그러나 그 초과액 163.8천원은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 部分의 배당세액공제액 만큼 세금을 더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만약에 乙주주가 소액주주에 해당된다고 하면 오히려 종합소득세를 과세받는 것보다 조세부담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배당세액공제액 > 소득세액”의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환급제도가 없으면 배당세액공제율의 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효과는 低所得階層의 소액투자자에게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 다. 借入金의 支給利子 損金不算入의 廢止

負債比率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支給利子를 손금에 不算入하는 제도는 借入金依存經營行態에 制動을 가하는 有效한 장치임에 틀림없다. 이 제도가 負債比率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推測하기에 充分하다. 그러나 보다 決定的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이 架空所得에 대한 課稅이며 이러한 가공소득과세는 결과적으로 法人企業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이미 詳述하였다. 不合理를 바로잡기 위하여 不合理한 手段을 使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2. 統合課稅方法으로 전환하는 경우

① 법인세와 소득세를 완전통합하거나 부분통합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여러가지로 개선책을 검토한 사항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은 부분통합방법의 하나인 支給配當損金算入方法이나



아니면 EC제국에서 채택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는 Imputation方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統合方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 章에서 상세히 보기로 한다.

② 統合課稅方法을 채택하는 경우 법인단계의 자본비용과 주주등의 부담조세의 合計額은 배당된 利潤部分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現行法이 규정하고 있는 増資所得控除와 負債比率이 200%를 초과하는 借入金利子에 대한 損金規制는 不必要해 진다. 이는 稅法의 單純化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Ⅲ. 建設資金利子 損金不算入에 대한 再檢討

#### 1. 建設資金利子制度의 概要와 그 評價

① 法人企業이 借入金を 재원으로 하여 事業用의 고정자산을 買入・製作・建設하는 경우에 그 借入金에 대한 支給利子を「건설자금의 이자」라고 하며 이러한 건설자금의 이자는 과세소득 계산상 當期費用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고정자산의 取得價額에 加算해야 한다.

건설자금으로 사용된 借入金額을 분명하게 區分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借入金에서 발생된 支給利子を 손금불산입하고 그러한 區別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按分計算된 支給利子額을 損金不算入하게 된다.

- $$\text{支給利子} \times \frac{\text{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text{在庫資産의 積數} + \frac{\text{建設假計定 및 事業用}}{\text{固定資産의 積數}}} = \text{建設資金利子}$$
- $$\text{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 \times \text{당좌대월이자율} = \text{限度額}$$

② 建設資金利子の 損金不算入制度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不合理하다.

첫째 時價가 同一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借入金を 재원으로 매

입·제작·건설한 경우에는 높아지고 자기의 재원으로 매입·제작·건설한 경우에는 낮아진다. 이것은 모순이다.

둘째 借入金의 支給利子는 이미 법인 밖으로 流出된 經濟價值임에도 不拘하고 이것이 회사내부에 留保된 것처럼 의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財務諸表上의 法人資産이 事實上 과대하게 表示된다. 우리나라의 企業會計基準은 本來 이 건설자금이자 原價算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가 다음에는 그 원가산입을 기업의 선택에 맡기도록 했었는데 지난 4월의 개정에서는 이를 原價에 산입하도록하여 세무회계와의 차이를 없애버렸다. 그러나 이는 어떠한 合理的 論據를 가진 개정이라기 보다 稅務會計의 입장에 추종함으로써 양 회계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不便을 최소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설자금이자를 과세소득계산상 손금에 不算入하는 제도는 다른 선진국의 法人所得稅制에서 찾아 보기 힘든 규정이다. 이는 이 제도내에 무리한 不合理가 內在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셋째 投資에 대하여 沮害的인 효과를 미친다. 이를 계산례로 分析해 보면 <表8>과 같다.

<表 8>

附帶投資費用의 比較計算

(單位: 千圓)

| 구 분                       | 건설자금이자 없음  | 건설자금이자 있음 |
|---------------------------|------------|-----------|
| ① 借入金額                    | 10,000,000 |           |
| ② 投資로 증가한 所得<br>(금융비용공제전) | 2,000,000  |           |
| ③ 支給利子(10%)               | 1,000,000  |           |
| ④ 課稅所得                    | 1,000,000  | 2,000,000 |
| ⑤ 租稅負擔額                   | 386,900    | 784,400   |
| (법인세)                     | (292,000)  | (592,000) |
| (방위세)                     | (73,000)   | (148,000) |
| (주민세)                     | (21,900)   | (44,400)  |
| ⑥ 附帶投資費用(③+⑤)             | 1,386,900  | 1,784,400 |
| ⑦ 比率(⑥÷①)                 | 13.87%     | 17.84%    |

위 사례의 경우 투자에 따른 부대비용은 건설자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때가 그러한 것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약 4% 포인트 높아진다. 투자에 따른 부대비용의 상승은 투자수익율의 저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은 法人企業의 施設投資에 대하여 지해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建設資金利子の 폐지

건설자금의 이자를 법인소득 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가장 큰 이유는 施設投資에 대한 沮害때분이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投資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직접적인 지원방법으로 「特定設備投資에 대한 투자세액공제」(租減 71) 및 「임시투자세액공제」(稅減 72)를 규정하고 있고 간접적인 지원방법으로는 투자준비금제도를 두고 있다. 물론 조세감면규제법상 투자유인제도는 업종별·시설종류별의 선별적인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稅制안에서 한편에는 투자저해적인 제도를 두고 다른 편으로는 투자유인적인 제도를 둔다는 것은 合理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반약에 바람직하지 못한 업종에의 시설 투자를 억제하고자 한다면 건설자금 이자의 손금불산입을 적용받는 업종만을 法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製造業의 施設投資에 대하여는 건설자금 이자의 損金不算入을 피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第4章 二重課稅 調整制度의 導入檢討

### I. 基本視角

#### 1. 二重課稅의 問題點—調整의 必要性

法人部門에 투자된 資本으로 부터 發生한 所得에 대하여 法人段階의 법인세와 株主段階의 종합소득세를 두번 과세하는 것이 資源配分上의 歪曲을 招來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일찍이 하버거(Harberger)가 지적한 바 있고, 실제로 있어서도 그 歪曲의 크기가 작지 않다는 研究들이 많다.<sup>1)</sup> 하버거의 研究는 주로 법인부분과 비법인부분간의 資本配分 歪曲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들이 二重課稅 때문에 發生할 수 있다.

펠드스타인(Feldstein)과 프리쉬(Frisch)는 二重課稅를 해소함으로써 다음 네가지의 效率性 向上效果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2)</sup> 이 네가지의 문제는 二重課稅 調整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二重課稅는 법인부분과 비법인부분간의 資本配分을 歪曲한다. 즉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높은 조세부담은 資本을 非法人部門으로 흐르게 하는데 이는 잠재적 국민소득의 손실이다. 따라서 法人稅와 所得稅의 統合은 비법인부분으로부터 법인부분으로 資本을 轉位시켜서 총국민소득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다.

1) Harberger, A.C., "The Incidence of Coporation Income Tax,"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 June 1962, pp. 215 ~ 40 및 Shoven, J.B. and J. whalley, "A General Equilibrium Calculation of the Effects of Differential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in the U. 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 Nov. 1972, pp. 281 ~ 321 등 참조, 이들은 사원배분의 歪曲效果가 미국稅入의 약 2~12%에 달하는것으로 추정했다.

2) Feldstein, M.S. and D. Frisch, "Corporate Tax Integration : The Estimated Effects on Capital Accumulation and Tax Distribution of Two Integration Proposals," *Natl Tax Journal*, 30, Mar. 1977, pp. 37 ~ 52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小企業이 法人體로의 전환을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二重課稅問題하고 인식되고 있다.

둘째 統合課稅는 전반적으로 資本所得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貯蓄과 관련된 歪曲이 줄어든다. 이것은 二重課稅의 조정이 반드시 저축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저축의 증감은 이론적으로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法人源泉所得에 대한 조세부담의 감소는 저축자가 資本所得으로 얻는 稅後收益을 증가시킬 것이므로 저축을 늘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 二重課稅의 조정으로 자본의 순수익율이 높아지면 현행세제가 가지고 있는 저축에 대한 歪曲은 감소할 수 있다. 즉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이 보다 적게 歪曲됨으로써 자원배분상의 效率性 向上은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二重課稅는 配當을 抑制하는 효과가 있다. 法人이 利潤을 社內에 많이 留保하는 것은 法人企業의 財務構造를 건실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社內留保가 지나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法人稅率과 個人所得稅率에 있어서 전자가 낮을 때 그 稅率差異에서 오는 조세부담을 장기간 이연시키기 위하여 배당을 기피할 수 있다. 이 때에는 法人이 오히려 租稅回避處(tax shelter)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은 社內留保가 과대하면 法人企業이 신규투자를 할 때 財源調達을 資本市場에서 해야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는 바 法人企業이 資本市場의 테스트를 받지 않게되면 投資의 의사결정이나 經營行態가 방만해 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그런데 統合課稅는 配當과 留保에 대하여 中立性을 유지하는 位置로 한 걸음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넷째 二重課稅는 自己資本經營이 課稅上 不利하게 처우되고 부채에 의한 損金調達을 課稅上 有利하게 한다. 그런데 二重課稅를 調整하면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을 유리하게 하는 誘引을 除去하게 된다. 二重課稅가 없어지면 支給利子의 資金算入때문에 생기는 他人資本과 自己資本間의 資本費用 격차가 근본적

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負債比率이 높아서 他人資本依存經營行態가 심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자본비용을 균형화시켜서 타인자본 경영이 유리한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效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다.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는 利子所得의 대부분이 分離課稅되고 配當所得의 大部分이 종합과세된다고 할 때 法人稅負擔은 확실하게 自己資本調達을 不利하게 만든다. 소액주주 이외의 上場法人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자산소득의 가계 단위합산과세등 때문에 法人稅가 아니더라도 세부담이 무겁다. 그런데 여기에 法人稅 負擔까지 加勢하는 경우 利子所得에 비하여 세부담의 불균형은 더욱 가중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아도 法人企業의 自己資金 調達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二重課稅를 實効性 있게 조정하는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 2. 國際的 動向과 稅制調和

① EC가 會員國間의 稅制調和를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租稅・財政委員會(俗稱 Neumark 위원회)는 資本自由移動의 장애제거의 목적을 두고 1963년에 法人所得稅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sup>3)</sup>

첫째 법인원천소득중 배당부분과 내부유보분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회원국은 통일된 제도를 設定할 必要가 있다. 配當部分을 내부유보분 보다 輕課稅하는 西獨方法이 바람직하다.

둘째 법인소득세의 세율은 내부유보분에 대해 약 50%, 배당분에 대해 15% 내지 20%정도가 적당하다. 배당에 대한 輕減稅率은 각 회원국의 成長政策 내지 경기정책에 따라 어느정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法人間의 배당에 대한 법인소득세의 면세조건은 이를 완화하여 二重課稅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등이 었다.

② EC 閣僚理事會는 1975년에 「法人課稅와 配當에 대한 원천과세제도의 調和에 관한 理事會의 提案指令」(Proposed Directive of the Council concerning

3) 佐藤進, 「付加價値稅論」, (東京: 稅務經濟協會, 1973), pp. 53~58

the Harmonization of System of Company Taxation and Withholding Taxes on Dividends)를發했다.<sup>4)</sup> 그 내용은 법인세율을 45% 내지 55%로 하며 法人稅額에 대하여는 株主段階 課稅에 Imputation 制度를 도입하고, 배당에 대하여는 25%로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채택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회원국간의 法人所得稅制를 調和(the harmonization of systems of company taxation)시키려는 조치이다.

③ 主要國의 二重課稅調整에 대한 動向은 다음과 같다.<sup>5)</sup>

1) 英國: 영국은 소위 Gross-up 방법에 의해 전통적으로 法人所得稅와 個人所得稅의 통합을 시도해 오다가 1965년에 노동당정부에 의해 獨立課稅(二重課稅)제도로 바꾸었다. 다시 1972년에는 다시 統合課稅方法인 Imputation 方法을 채택한 것이다.

2) 프랑스: 종래 프랑스는 獨立課稅方法을 채택해 왔는데 1965년에 그 당시의 영국과는 반대로 Imputation 方法을 채택했다.

3) 西獨: 전통적으로 獨立課稅方法을 채택해 왔다. 그런데 1953년에 支給配當輕課方法(配當分에 輕課稅・留保分에 重課稅)을 채택했고 1977년에는 支給配當分 輕課稅方法에다 영국・프랑스와 같은 Imputation 方法을 채용하였다.

4) 伊・아이랜드도 현재 Imputation 方法을 채택하고 있다.<sup>6)</sup>

5) 캐나다: 1967년에 카터報告書(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n Taxation)에 의해 法人所得稅와 個人所得稅의 完全統合方法이 제시되었다. 그랬으나 이는 채택되지 못하고 部分統合方法인 半額 Gross-up 方法을 채택하기에 이르고 있다.

4) *The Taxation of Companies in Europe*, 4, (Amsterdam : IBFD) pp. II-57 ~ II-67

5) 品川芳宜, 「課稅所得と企業利益」, (東京: 稅務研究會, 1982), pp. 64 ~ 65

6) *Individual Taxes-A Worldwide Summary*, (New York : Price Waterhouse, 1987), P. 117, P. 120

6) 美國： 미국은 小事業法人에 대해서만 완전통합방법인 조합과세방법을 채택하고 있을뿐 일반법인에 대하여는 전통적으로 獨立課稅方法을 고집해 오고 있는 나라이다. 법인세율이 5 단계의 초과누진구조로서 17%에서 46%에 이르고 利潤의 과다한 社內留保方法으로 法人을 조세회피처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留保利益稅(Accumulated Earning Tax)를 과세하고 있었다. 배당세액공제 마저도 채택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資本所得에 대한 과중한 조세부담이 미국경제의 효율을 저해하고 성장을 둔화시킨다고 하는 비판이 가해졌다.

1984. 11에 레이건행정부의 재무부가 발표한「公正・單純・經濟成長을 위한 稅制改革案」에서는 法人稅率을 33%의 單一稅率로 하고, 저축을 저해하며 법인 부문에의 資本配分을 저해하는 二重課稅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法人의 과세소득 계산상 支給配當의 50%를 공제(50% dividend-paid deduction)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그런데 1985年「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조세제안」(The president's to the Congress for Fairness, Growth, and Simplicity)에서는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33%가 되도록 초과누진구조로 설정하며 支給配當에 대하여는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상 10%를 공제(10% dividend-paid deduction)을 하자고 후퇴했었다. 그런데 1986年の 改正法에서는 法人稅率을 3단계 초과누진의 15%내지 34%로 낮추었을 뿐 二重課稅의 調整裝還는 채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나 法人稅率이 크게 引下되고 아울러 個人所得稅率도 종래 최고한계세율 50%에서 28%로 대폭인하 하였기 때문에 비록 이중과세를 조정하지는 아니하지만 二重課稅의 幅은 대폭적으로 완화된 셈이다. 二重課稅의 調整 필요성이 상당히 除去되었다고 할 수 있다.

7) 日本： 이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이 配當稅額控除方法으로 二重課稅를 조정하고 있으나 그 조정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매우 不充分하다. 그리하여 1980年 首相의 조세자문기관인 稅制調査會는「財政體質 改善을 위한 稅制上 취해야 할 方策에 관한 答申」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바 있



다.

즉 「현행의 배당경과세제도 및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배당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간의 二重的 稅負擔의 一部를 조정하여 분리 독립과세방법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가지 경제적인 나쁜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法人稅를 經濟에 대하여 가능한 한 中立化하는 제도이며, 이를 大企業이나 배당소득자에 대한 우대조치 내지 정책세제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세부담의 조정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분리 독립과세방법을 채용하면 株式에 의한 資金調達에 비하여 借入에 의한 資金調達쪽이 유리하고, 내부유보가 중시되어 배당억제 경향이 발생하며, 배당을 중요시하는 少額株主가 불리해 지고 資本市場에 의한 테스트기능이 저해된다. 그리고 세부담을 조정하는 통합과세방법을 취하고 있는 나라에 投資하는 것이 유리한 반면 국내투자가 不利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여 資本自由化에 따른 外國에의 投資促進(고용수출)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國際的 動向을 注視하면서 당면적으로는 二重課稅의 調整이 不充分한 현행의 배당세액공제제도를 유지하자고 결론을 맺었다.

다시 1986. 10. 28에 稅制調査會는 二重課稅의 調整問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법인세·소득세의 負擔調整에 관한 기본구조를 재검토함에 있어서 企業의 所有와 經營이 분리된 현실적인 經濟·社會의 狀態에서 보면 법인세는 企業 獨自의 부담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負擔調整은 不必要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理論的으로는 法人所得은 최종적으로 株主에게 귀속하고, 주주의 소득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게되므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간에 어떤 부담조정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행방법은 法人段階(법인세율이 유보분에 대하여는 43.3%, 배당분에 대하여는 33.3%) 및 株主段階(배당세액공제)의 쌍방에서 조정하고 있는 바 이는 稅制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簡明한 稅法構造라는 觀點에서 보면 그 조정을 법인단계 또는 株主段階 중 어느 한곳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法人段階의 조정은, 가령 기업이 一定한 배당율의 유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

는, 법인세부담의 경감이 반드시 배당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부담조정의 효과가 주주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조정방법으로서의 不充分性외에도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단계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본래 조정할 필요가 없는 外國人株主나 비과세법인주주에게 支給하는 배당에 까지 自動적으로 조정의 효과가 미치게 되어, 경제의 국제교류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稅收의 安定的 確保까지 고려한다면 難點이 많다. 그러므로 부담조정의 方法으로서 이번 기회에 配當輕課稅를 폐지하고 株主段階에서 조정하는 方向으로 제정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 주주단계에서의 부담조정방법으로서는 現行의 配當稅額控除方法과 유럽諸國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위 Imputation 方法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 배당세액공제는 稅務行政이 간편하고, 도입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제도로서 安定되었다는 點을 고려하면, 諸外國에 있어서의 動向에 대해 注視하면서, 당면적으로는 현행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여기에서는 1980年の 의견보다 二重課稅 調整의 필요성과 그 조정방법의 선택문제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④ 우리의 經濟가 對外指向의으로 개방의 정도를 높여가고, 國際的 交流가 심화되면서 資本自由化에 까지 간다고 할 때 法人所得稅制는 필연적으로 다른 主要國家의 그것과 調和시키지 아니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資本所得에 대한 稅負擔의 정도에 따라서 말이 빠른 資本은 민감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의 經濟的 政治的 統合이 추진·진전됨에 따라 EC회원국들은 급속하게 法人所得에 대한 二重課稅가 調整되는 稅制調和를 실현해 나아갈 것이고, 다른 先進國들도 이에 대응적으로 二重課稅를 充分히 조정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資本所得의 실질적인 세부담경감을 도모하려고 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를 종래와 같이 大企業이나 配當所得者에 대한 稅制優待처럼 생각하여 도외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의 우리경제의 여리가 지 움직임과 資本市場의 개방일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資本所得에 대한 二重課稅가 국제간의 資本移動에 미칠 效果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중과세의 조정조치에 관한 당위성을 주의깊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二重課稅의 調整은 法人所得課稅制度의 經濟에 대한 中立性 提高의 추구이며, 資本所得에 대한 課稅上 優待로서 大法人企業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가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II. 調整方法－立法例

### 1. 完全統合方法

法人源泉所得에 대한 法人所得稅와 個人所得稅를 완전히 통합하는 방법은 가장 단순한 것이 法人所得稅를 폐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富의 創出過程인 法人의 經濟活動에 대하여 所得課稅의 간섭을 없애버리고 所得이 발생한 후에 그 소득을 出資者인 株主(資本主)등에 배분시켜서 그에게 個人所得稅만을 과세하는 구조를 취하게 될 것이다. 完全統合方法의 하나로써 美國이 채택하고 있는 組合課稅方法은 바로 法人稅를 폐지하는 방법에 해당될 것이다.

#### 가. 組合課稅方法(Partnership method)

① 이 방법은 法人의 주주등을 個人間 共同事業의 組合員(partner)과 같이 보고, 課稅期間에 法人이 稼得한 所得은 그것이 실제로 배당되었는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계산상 소유주식에 比例하여 각 주주에게 割當配分시킨다. 이렇게 配分歸屬시킨 소득에 대하여는 株主에게 個人所得稅를 과세한다. 따라서 법인단계에다는 法人所得稅를 전혀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美國에서 조합과세를 받을 수 있는 法人은 다음과 같은 小事業法人 (small business corporation)이다.(內國歲入法第1361條(6)項)

첫째－內國法人이어야 하고

둘째－株主가 35인을 초과하지 않으며

세째－個人이 아닌 株主가 없어야 하고

넷째－外國人・非居住者인 株主가 없어야 하며

다섯째－發行株式이 한가지 종류어야 한다.

위의 要件에 해당하는 小事業法人은 이 조합과세방법에 의한 과세와 정규법인세(regular corporation tax)에 의한 과세중 어느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조합과세방법에 의하여 과세를 받는 방법의 선택에는 全株主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小事業法人에 대한 조합과세는 미국의 內國歲入法(Internal Revenue Code) 제1장의 Subchapter S. 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과세를 받는 소사업법인을 “Subchapter S Corporation”이라고 한다.

#### 나. 카터(Carter)式 統合方法

이는 1967年 캐나다의 王立稅制研究委員會(the Royal commission on Taxation)의 연구보고서에서 제안한 방법이다. 이를 간주하면 다음과 같다.

- ① 法人所得은 50%의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 ② 個人所得은 최고한개세율을 50%로 하여 초과누진으로 과세한다.
- ③ 法人의 稅後所得은 실지배당 여부에 관계없이 주주에게 株式所有比率 등으로 할당 배분한다.
- ④ 居住者인 주주의 소득세 과세소득에는 실지 배당된 금액 유보소득을 할당, 배분한 금액과 歸屬法人稅額( $\text{配當所得額} \times \frac{\text{法人稅率}}{1 - \text{法人稅率}}$ ) 이 모두 포함되게 한다.
- ⑤ 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때 그의 소득세액에서 상기 歸屬法人稅額을 세액공제(credit)한다. 만약에 세액공제액(귀속법인세액)이 주주의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납세의무자인 주주에게 還給(refund)한다.
- ⑥ 法人의 損失도 주주에게 割當・配分하여 주주의 소득과세에 반영시킨

다.

이 方法을 事例로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事例〉

- 1) 法人所得: 6,000
- 2) 法人稅率: 50% 比例
- 3) 甲株主: 총발행주식 200주 중 100주를 소유
- 4) 稅後利益 중 1,000은 실지배당하고 나머지 2,000은 社內에 留保함
- 5) 甲株主가 적용받는 平均稅率은 40% 또는 55%로 가정

〈計算方法〉

첫째 甲株主의 배당소득 계산

- 실지 배당액  $= 1,000 \times \frac{100}{200} = 500$
- 유보소득할당액  $= 2,000 \times \frac{100}{200} = 1,000$
- 귀속법인세액  $= (500 + 1,000) \times \frac{50}{50} = 1,500^*$

\* 이렇게 계산한 귀속법인세(imputed corporation tax)는

$$(6,000 \times 50\%) \times \frac{100}{200} = 1,500 \text{과 같음}$$

- 甲주주의 配當所得金額  $= 500 + 1,000 + 1,500 = 3,000$

둘째 甲株主의 所得稅計算

$$3,000 \times 40\% - 1,500 = \triangle 300^*$$

\* 300은 甲株主에게 환급함.

- $3,000 \times 55\% - 1,500 = 150^*$

\* 이 150은 甲이 소득세로서 納付함.

이러한 統合方法은 비록 二重課稅를 株主段階에서 調整하고 있으나 法人段階에다 과세한 法人所得稅 全額이 個人所得稅額에서 귀속법인세로서 세액공제되기 때문에 法人所得稅 課稅가 없는 것과 같아진다. 그러므로 二重課稅 때문에

야기되었던 여러가지 歪曲現象이 모두 除去된다. 그리고 주주단계에서 二重課稅를 조정하기 때문에 非居住者(外國人)가 받는 配當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그 조정을 배제하기가 용이하다.

## 2. 部分統合方法

가. 支給配當控除法(dividend-paid deduction method)

① 이는 法人段階에서 法人源泉所得에 대한 二重課稅를 조정하는 方法이다. 法人所得中 배당되는 부분을 自己資本에 대한 비용으로 보아 支給利子처럼 法人의 課稅소득 계산상 損金으로 인정하여 공제하는 것이다.

실지배당금액을 손금으로 공제하여 課稅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법인소득세는 留保所得(未配當의 法人利潤)에만 課稅되고 배당된 법인소득은 주주의 개인 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율에 의해 課稅된 個人所得稅만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인소득 중 실지배당된 부분에 대해서만 二重課稅가 除去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部分統合에 불과하다.

② 이 方法은 調整의 효과가 株主에게 귀속되는 것이 명백하고, 비교적 조정 방법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종합과세받지 아니하는 非居住者가 받는 배당에 까지 무차별로 적용되는 단점이 있다.

### 나. Imputation 方法

① 이는 株主段階에서 二重課稅를 調整하는 方法이다. 이 方法은 약간씩의 變形은 있지만 현재 EC회원국인 英國·西獨·프랑스가 채택하고 있다. 그 內容과 原理를 간주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法人所得에 대하여 法人段階에서 法人所得稅을 課稅한다. 稅率은 대부분의 立法例가 단순비례세율이다.

둘째 法人稅 차감 후 소득 중 실지배당이 되면 그 배당금은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課稅하게 되는데 그 배당소득은 歸屬法人稅額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귀속법인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實地配當額} \times \frac{\text{法人稅率}}{1-\text{法人稅率}} = \text{歸屬法人稅額}$$

어떤 株主가 배당받은 금액이 700이고 법인세율이 30%라고 가정하면 귀속법인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다.

$$700 \times \frac{0.3}{1-0.3} = 700 \times \frac{30}{70} = 300$$

配當所得金額은 1,000(700+300)이다.

셋째 株主의 個人所得稅額에서 귀속법인세액을 세액공제한다. 개인소득세액보다 귀속법인세액이 크면 그 차액은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인 주주에게 환급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計算式으로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 (\text{實地受入配當} + \text{歸屬法人稅額} + \text{다른 綜合所得}) \\ & \times \text{個人所得稅率} - \text{歸屬法人稅額} = \text{納付稅額} \cdot \text{還給稅額} \end{aligned}$$

Imputation 方法은 배당된 法人所得에 대한 法人所得稅만이 二重課稅 調整이 되고 留保된 法人所得에 대한 法人稅額은 二重課稅調整이 되지 아니하므로 部分統合方法에 해당한다.

② 이 조정방법은 二重課稅를 除去한 效果의 株主歸屬이 明白하고 또한 종합과세받지 않는 非居住者의 수입배당등에 대하여 그 적용을 선별적으로 배제하기가 쉽다. 그리고 배당손금산입방법에 비하여 法人利潤의 社內留保・配當에 대해 보다 中立的이라고 할 수 있다.

다. 配當稅額控除方法

① 이 方法은 주주단계에서 二重課稅를 調整하는 제도이다. 법인원천소득에

서 배당된 소득이 주주의 個人所得稅 과세소득에 합산되어 있는 경우 株主의 소득세액에서 「합산된 배당금액에 所定率(배당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credit)한다. 이 방법에서는 주주의 과세소득에 배당금액을 合算할 때 배당액 그 자체만이 배당소득이 되고 귀속법인세액을 배당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또한 배당세액공제액이 개인소득세액 보다 클 때 그것을 없는 것으로 보고 환급하지 않는 點이 Carter式 統合方法 또는 Imputation 方法과 중요하게 다른 점이다.

이 方法은 우리나라·日本등이 채택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方法을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實地受入配當金 + 株主의 다른 所得金額) × 個人所得率  
 - (實地受入配當額 × 配當稅額控除率) = 納付所得稅額
- 配當稅額控除限度額 = 算出稅額 ×  $\frac{\text{配當所得金額}}{\text{統合所得金額}}$

② 이 方法도 이중과세조정의 效果가 株主에게 歸屬되는 것이 明白하다. 그리고 行政上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二重課稅 調整이 배당세액공제율의 크기 여하에 따라서 不充分하기 쉽고 충분히 그 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이 매우 부정확한 단점이 있다.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적용받는 개인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법인세율 보다 낮은 주주는 모두 공제한도액에 걸려서 배당소득액에다 세액공제율을 곱해서 계산된 금액을 일부 공제받지 못하며, 이와같이 그 공제받지 못하는 배당세액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저소득계층의 주주들이 사실상 고소득계층의 주주들 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저소득계층의 주주들이 소액주주에 해당하여 16%로 분리과세를 받는 경우에도 이 보다 낮은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계층은 過大課稅(over-taxation)를 받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검토한 조정방법이외에도 支給配當輕課稅方法・受入配當控除法・資本利得課稅法・強制配當法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方法들은 二重課稅調整方法이 부정확하거나 實現可能性이 희박하므로 그 검토를 생략한다.

### Ⅲ. 二重課稅 調整方法의 導入可能性 比較

#### 1. 우리나라 現行制度의 評價

① 우리나라는 前章에서 본 바와 같이 現金增資를 誘引하기 위하여 增資所得 控除制度를 두고 있는 바 과세소득 계산상 增資額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은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에서 支給配當額을 控除하는 것과 사실상 같다. 그리므로 증자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있는 3年間에 있어서는 증자에 의한 追加所得部分에 한하여 二重課稅를 조정하는 것과 같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증자소득공제가 허용되는 時間的 범위내에서 그것도 증자에 의해 추가로 증가되는 소득부분에 한하여 그 효과가 미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二重課稅의 調整效果는 매우 제한적이며, 不充分함을 알 수 있다.

② 우리나라 稅制에서 二重課稅를 조정하는 장치는 배당세액공제이다. 그 控除率은 현재 배당소득금액 1,000만원 이하는 12%, 1,000만원 초과는 6%이다. 법인세의 최저세율 20%를 적용받는 법인으로 부터 1,000만원의 배당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먼저 그 1천만원이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면

$$10,000,000 \times \frac{0.2}{1-0.2} = 10,000,000 \times \frac{20}{80} = 2,500,000 \text{ 원}$$

과 같이 된다. 그런데 이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10,000,000 \times 12\% = 1,200,000 \text{ 원}$$

인 바 1,300,000원 상당이 조정되지 않고 있다. 배당한 법인이 법인세율의 높은 限界稅率인 30%를 적용받고, 배당세액공제율 6%를 적용받게 되면 조정의 不充分性은 더욱 현격해진다.

이 제도의 단점은 前章과 전절에서 이미 상세하게 論證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한다.

## 2. 導入可能한 方法의 比較檢討

### 가. 設例

① 二重課稅 調整을 하는 경우의 立法例에서는 법인세 세율을 單純比例稅率로 設定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2장에서 방위세를 本稅에 통합하는 경우 法人稅率을 35%의 單一比例稅率로 提案했으므로 二重課稅 調整方法上 적용하는 세율은 35%로 한다.

② 資本金은 法人企業 個人企業 공히 100억원, 稅前利益은 20 억원, 法人企業의 株主는 1人으로 가정한다.

③ 配當은 稅後所得 100%를 배당하는 경우와 50%를 배당하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한다.

④ 個人企業의 所得稅額은 1990. 7. 1 현재의 稅率로 적용하되 방위세는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⑤ 現行제도에 의한 배당세액공제도 1990. 7. 1 현재의 제도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음 법인세율을 35%로 하고 現행 배당세액공제율에 의하여 調整效果를 分析한 결과는 <表9>와 같다.

〈表 9〉

## 現行 配當稅額控除에 의한 調整效果 計算

(單位：천원)

| 區 分              | 計 算        |         |         |
|------------------|------------|---------|---------|
| ① 資本金            | 10,000,000 |         |         |
| ② 所得金額           | 1,000,000  |         |         |
| ③ 法人稅額           | 350,000    |         |         |
| ④ 配當可能利益         | 650,000    |         |         |
| ⑤ 配當比率           | 100%       | 50%     | 0 %     |
| ⑥ 受入配當金          | 650,000    | 325,000 | —       |
| ⑦ 所得稅算出稅額        | 315,475    | 152,975 | —       |
| ⑧ 配當稅額控除額        | 39,600     | 20,100  | —       |
| ⑨ 納付稅額           | 275,875    | 132,875 | —       |
| ⑩ 稅負擔稅額<br>(③+⑧) | 625,875    | 482,875 | 350,000 |
| ⑪ 負擔比率           | 63.58%     | 48.28%  | 35.0%   |

나. 支給配當控除方法 = 配當損金算入

배당손금산입방법에 의하여 二重課稅가 調整되는 效果를 계산하면 〈表10〉과 같다. 이 경우에도 配當率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 조정효과의 차이가 발생

〈表 10〉

## 配當損金算入에 의한 調整效果 計算

(單位：천원)

| 區 分     | 計 算        |            |            |
|---------|------------|------------|------------|
| 配當比率    | 100%       | 50 %       | 0 %        |
| ① 資本金   | 10,000,000 | 10,000,000 | 10,000,000 |
| ② 所得金額  | 1,000,000  | 1,000,000  | 1,000,000  |
| ③ 配當額   | 1,000,000  | 500,000    | 0          |
| ④ 課稅所得  | 0          | 500,000    | 1,000,000  |
| ⑤ 法人稅額  | 0          | 175,000    | 350,000    |
| ⑥ 受入配當金 | 1,000,000  | 500,000    | 0          |
| ⑦ 所得稅額  | 490,475    | 240,475    | 0          |
| ⑧ 負擔稅額  | 490,475    | 415,475    | 350,000    |
| ⑨ 負擔比率  | 49.0%      | 41.5%      | 35.0%      |

한다. 그것은 配當된 部分에 限하여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部分統合方法이기 때문이다.

첫째 100%配當의 경우에는 法人稅負擔이 零이기때문에 이는 個人事業의 조세부담수준과 一致한다.

둘째 배당비율이 낮아질 수록 세부담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것은 法人稅率이 個人所得稅보다 平均稅率이 낮음으로 인하여 法人所得 중 社內留保分の 조세부담이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法人稅率이 소득세율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으면 法人所得의 留保는 개인소득세의 조세피난처로 法人을 이용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法人所得稅率과 個人所得稅率의 격차여하에 따라 이 方法은 배당축진적이 아닐 수 있다.

셋째 현행 배당세액공제방법보다는 100%, 50%의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조정효과가 현저히 크다.

#### 다. Imputation 方法

配當分에 대한 Imputation 方法에 의하여 二重課稅가 조정되는 효과를 分析하면 <表11>과 같다. 이 경우에도 배당을 여하에 따라 그 조정효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Imputation 方法에 의한 調整效果는 支給配當控除方法에 의한 조정효과와 同一하다. 행정상등 제문제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면 어느 方法을 택하거나 같은 것이다. 나머지 다른 사항에 관한 문제는 지급배당공제법에서 評價한 것이 그대로 이 方法에도 타당한 것이다.

〈表 11〉

Imputation에 의한 調整效果 計算

(單位：천원)

| 區 分        | 計 算        |         |         |
|------------|------------|---------|---------|
| ① 資本金      | 10,000,000 |         |         |
| ② 所得金額     | 1,000,000  |         |         |
| ③ 法人稅額     | 350,000    |         |         |
| ④ 配當可能利益   | 650,000    |         |         |
| ⑤ 配當比率     | 100%       | 50 %    | 0 %     |
| ⑥ 受入配當金    | 650,000    | 325,000 | 0       |
| ⑦ 歸屬法人稅額加算 | 350,000    | 175,000 | 0       |
| ⑧ 課稅配當所得   | 1,000,000  | 500,000 | 0       |
| ⑨ 所得稅算出稅額  | 490,475    | 240,475 | 0       |
| ⑩ 歸屬法人稅控除  | 350,000    | 175,000 | 0       |
| ⑪ 納付所得稅額   | 140,475    | 65,475  | 0       |
| ⑫ 負擔稅額     | 490,475    | 415,475 | 350,000 |
| ⑬ 負擔比率     | 49.0%      | 41.5%   | 35.0%   |

## 라. 半額 Gross-up 方法

이 方法은 그 근본구조가 Imputation 方法과 같다. 株主段階에서 調整하는 方法이고 配當된 部分에 대해서만 二重課稅가 調整되는 것이다.

다만 歸屬法人稅額의 50%만을 실지배당액에 加산하여 配當소득금액을 計算하고, 주주의 個人소득세액에서 귀속법인세액의 50%만을 세액공제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 方法은 법인소득에 대한 二重課稅 調整으로 인하여 法人稅收가 격감하는 것을 우려하는 경우에 채택하기가 편리하다. 이 반액 Gross-up 方法은 현재 캐나다에서 채용하고 있는 제도인 바, 당시 캐나다의 完全한 獨立課稅에서 完全한 統合課稅로의 轉換을 제안한 Corter 報告書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兩者의 절충방법으로 이 方法을 立法化했다.

이 方法에 의하여 二重課稅가 調整되는 效果를 計算하면 〈表12〉와 같다.

〈表 12〉

半額 Gross-up에 의한 調整效果 計算

(單位: 千圓)

| 區 分             | 計 算        |         |         |
|-----------------|------------|---------|---------|
| ① 資本金額          | 10,000,000 |         |         |
| ② 所得金額          | 1,000,000  |         |         |
| ③ 法人稅額          | 350,000    |         |         |
| ④ 配當可能利益        | 650,000    |         |         |
| ⑤ 配當比率          | 100%       | 50 %    | 0 %     |
| ⑥ 受入配當金         | 650,000    | 325,000 | 0       |
| ⑦ 歸屬法人稅의 50%加算* | 175,000    | 87,500  | 0       |
| ⑧ 配當所得金額        | 825,000    | 412,000 | 0       |
| ⑨ 所得稅算出稅額       | 402,975    | 196,475 | 0       |
| ⑩ 歸屬法人稅50%控除    | 175,000    | 87,500  | 0       |
| ⑪ 納付所得稅額        | 227,400    | 108,975 | 0       |
| ⑫ 納付負擔稅額        | 577,400    | 458,975 | 350,000 |
| ⑬ 負擔比率          | 57.7%      | 45.9%   | 35.0%   |

\* 歸屬法人稅額의 半額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주. 배당배율 50%의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325,000 \times \frac{0.35}{1-0.35} \times 50\% = 325,000 \times \frac{35}{65} \times 50\% = 87,500 \text{ 과 같이 산출됨}$$

위의 計算結果를 現行制度의 調整效果와 比較하면 100% 배당의 경우 부담비율은 “57.7% 대 62.6%”, 50% 배당의 경우 부담비율은 “45.9%대 48.3%”로 나타난다. 즉 우리의 배당세액공제가 半額 Gross-up 方法에 의한 조정효과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가 있다.

#### IV. 調整方法의 選擇

##### 1. 어느方法을 선택할 것인가?

가 Imputation 方法의 도입

調整效果에 있어서는 配當損金算入方法을 택하든 Imputation 方法을 택하든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計算方法에 있어서 후자가 전자에 비해 복잡하다고 하는 短點이 있다. 반대로 前者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지 못하고

分離課稅해야 하는 비거주자 株主 또는 배당소득등에 대해 비과세받는 株主등에 대해서 까지 법인단계에서 二重課稅를 무차별 조정하는 短點이 있다. 二重課稅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두번 과세되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거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처럼 어느 한 세목의 과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 調整이 不必要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계산은 약간 복잡하지만 주주단계에서 소득세 과세여부에 따라 선별적 조정이 가능한 Imputation 方法이 보다 우수한 方法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部分統合方法을 채택한다고 할 때에는 Imputation 方法을 도입한 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EC의 중요회원국가들과 稅制調和를 이룩할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判斷된다.

나. 現行制度 中 廢止해야 할 것

① Imputation 方法을 채택하면 支給配當을 손금산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法人段階의 資本費用과 株主段階의 所得稅負擔의 合計는 他人資本과 自己資本間에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均衡을 이루게 됨으로 自己資本의 増加를 稅制上 誘인하고 있는 現행 증자소득공제는 폐지해야 한다. Imputation 方法은 現행 증자소득공제보다 增資誘因이 사실상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적용시한의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② 一定比率이상의 부채가 있는 法人에 대하여 적용되는 支給利子 損金不算入制度도 폐지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과세소득계산상 그 초과 차입금에 대한 支給利子の 損金性を 부인하므로써 他人資本이 課稅上 有利한 결합을 除去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결합은 Imputation 方法의 채택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借入金으로 문어발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는 現行法人稅法에서와 같이 法人株主에게 배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二重課稅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의 제재로서 대응하면 된다고 판단된다.

#### 다. Imputation 方法과 法人稅率의 높이

① 배당되는 부분의 법인소득에 대하여는 Imputation 方法에 의해 二重課稅가 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株主의 개인소득세액이 귀속법인세액 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주주에게 환급하기 때문에 法人稅率이 높다고 하더라도 총부담세액을 증가시키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 세율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

② 法人稅率의 높이는 法人所得 중 社內留保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만약에 法人稅率이 個人所得稅의 平均稅率보다 높은 경우에는 社內留保所得은 個人事業者の 소득보다 더 무거운 조세부담을 지게 된다. 반대로 낮은 稅率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社內留保所得이 개인사업의 소득보다 過少課稅되고 따라서 株主들이 배당을 기피시키면서 法人을 개인소득세의 조세피난처로 活用하는 폐단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株式讓渡에서 발생하는 資本利得에 所得稅率로 과세한다면 다만 課稅가 株式讓渡時까지 이연되는 폐단은 있지만 法人이 조세피난처로 되는 기능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특히 주식양도차익에 資本利得稅를 과세하지 않거나 낮은 比例稅率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法人稅率을 개인소득세 세율의 平均稅率 水準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의 현행 소득세율에 의하여 一최고한계세율의 바로 아래단계인 40%가 적용되는 50,000,000원 까지의 방위세 불포함 세액으로 平均稅率을 구하면 31%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35% 단순비례세율은 적합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 라. Imputation 方法과 稅收減少

① 이 方法을 채택한다고 할 때 現行 증자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되던 法人稅額은 이의 폐지로 인하여 法人稅의 增收效果로 나타날 것이다.

② 配當稅額控除制度에 의한 현행 세수감소분은 이것이 Imputation 方法으로 對替되기 때문에 Imputation 方法에 의한 二重課稅調整으로 감소되는 금액에 흡수될 것이다.



즉 “Imputation에 의한 세수감소액 - 배당세액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증가액 =실지세수감소액”과 같이 된다.

③ 負債比率 200% 초과분 借入金利子の 損金不算入으로 과세되던 法人稅額은 이의 폐지로 인하여 法人稅의 減收效果로 나타날 것이다.

④ Imputation 方法의 채택으로 法人稅가 減收되는 효과는 配當性向(配當金 ÷ 當期純利益 × 100)여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배당성향을 全業種에 걸쳐서 30%(제조업기준으로 1988년은 27.2%였으므로 30%는 과소추정이 아니다)로 가정하고, 통계의 제약으로 계산근거는 不分明하지만 상기 ① 내지③의 增減要因이 상호상계되어 稅收의 中立的이 된다고 보면 Imputation 方法을 채택하는 경우 현재의 法人稅收의 30%가 감소한다고 추계할 수 있다. 1989년 법인세수 22,474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약 6,800억원 정도의 세수결함을 추측할 수 있다.

Imputation 제도에 의하여 配當性向이 약간 올라가서 35%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수의 감소액은 8,000 억원 정도에 머무르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投資가 活性化되어 經濟가 成長하게 되면 이 稅收減損은 짧은 時間內에 回復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 漸進的 方法의 選擇

① Imputation 方法의 채택에 대하여 稅收減少衝擊을 크게 우려한다면, 二重課稅 調整이 不充分的 部分統合方法이기는 하지만, 半額Gross-up 方法의 채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方法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현행 배당세액공제 방법 보다는 二重課稅의 조정폭이 크다. 이 方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資本費用과 株主의 소득세부담의 合計額에서 볼 때 他人資本이 經營上 有利하게 된다. 그러므로 배당세액공제를 半額 Gross-up 方法으로 대체한다면 金錢出資를 유인하는 증자소득공제는 비록 그 공제율을 약간 下向調整해서라도 유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架空所得에 과세하게 되는 支給利子 損金不算入(부채비율 200% 초과시에 적용하는 제도) 제도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② 처음 채택은 50%Gross-up으로 하되 점차 60% 그로스·업· 70% 그로스·업과 같이 그 比率을 점진적으로 上向調整해 가면 一定期間이 경과한 후에는 Imputation 方法이 되어 버릴 것이다. 이 비율상승에 맞추어 증자소득공제율은 반대로 점진적 引下調整이 가능할 것이다.

### 3. 中小企業法人에 대한 二重課稅調整

① 法人稅의 稅率을 35%로 하면서 2段階超過累進을 폐지하여 單純比例稅率로 개편하면 年間所得이 8천만원 이하인 中小企業에 대하여는 事實上 稅率을 引上한 결과가 된다. 小事業法人의 조세부담을 높이는 것은 규모경제의 이익마저 누리지 못하는 中小企業 育成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方向의 企業稅制의 개편은 中小企業育成·支援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産業政策에도 배치될 것이다. 法人稅率의 上向調整幅을 상쇄할 만큼 각종의 準備金制度를 擴充하는 方法으로 대처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납세순응력이 미비한 中小企業法人에게는 그 효과가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② 中小企業法人은 사실상 數人의 共同事業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小事業法人과 個人事業者間의 所得課稅 負擔을 完全하게 衡平化하려면 美國의 組合課稅方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적용대상범인은 그 對象範圍가 적정하도록 미국의 경우처럼 그 要件을 定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租稅減免規制法上의 中小企業의 범위와 一致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조합과세방법에 의한 과세는 法人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第 5 章 減價償却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I. 序論

資本所得의 課稅에 있어서 減價償却制度의 重要性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財産稅의 累進稅率을 결정하는 것이 課稅率과 財産의 評價額인 것처럼 資本所得과 課稅에 있어서 累進稅率을 결정하는 것은 課稅率과 減價償却率이라고 해도 과히 틀리는 말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資本所得의 課稅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減價償却制度가 갖는 重要性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減價償却이 중요한 것은 資本비용의 構成要素로서 그것이 차지하는 相對적 比重이 크다는 것 뿐 아니라 減價償却을 正確하게 測定할 수 있는 客觀적인 方法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미에서 이것을 “操作”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操作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보면 客觀적이고 公평한 減價償却의 “불”을 正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積極적인 觀點에서 보면 減價償却制度를 여러가지 政策목적의 達成을 위해 政府가 操作할 수 있는 政策變수로 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 章에서는 減價償却制度를 政策變수로 보고 이를 어떻게 運用하여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論議를 전개한다. 먼저 減價償却制度에 관한 政策적 視角을 정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減價償却制度의 現狀을 問題點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때에 각 분야별로 關連되는 主要 外國의 減價償却制度를 比較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減價償却制度의 改善方案을 제시한다.

### II. 減價償却制度에 關한 基本視角

減價償却이란 資本所得의 算出과정에서 使用된 資本(固定資産)의 가치 減少를 一定한 方法에 따라 推定하는 會計절차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單位會計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生産者耐久財의 구입 및 설치비용등을 그 耐用期間에 걸쳐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期間損益計算을 정확하게 하자는 것이 減價償却制度의 중요한 會計學的 目的이라고 할 수있다.

그러나 조세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본소득과세의 베이스를 객관적이고 일관성있는 방법에 따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자원배분에 대한 조세의 왜곡효과를 극소화한다는 측면을 기본적으로 강조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생산활동에 투입된 자본서비스의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해야하므로 이른바 자본의 經濟的 減價率(economic depreciation)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관심을 갖게되는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자본의 경제적 감가율에 가까운 減價償却率이 稅法上의 減價償却率이 되도록 해야하고 그 밖에 다른 왜곡요인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한다는 점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와같은 근본적인 시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sup>1)</sup>

한편 이와같은 입장이 기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경제여건에 따라서는 보다 적극적인 시각에서 減價償却制度를 운용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稅法上 減價償却制度에 인위적인 “왜곡”을 도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두가지 시각이 상충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원배분의 효율을 극대화자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다만 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정보 및 정책판단 능력등에 대한 평가가 다를 때 이와같은 시각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세계상의 減價償却制度가 資本의 經濟的 減價率을 정확하게 반영한 중립적인 것이어야 된다고 보는 시각은 시장의 동태적 자원배분기능이 거의 완전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설사 완전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정책당국의 판단보다는 시장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후자의 시각 즉 減價

1) 경제적 감가율의 개념과 측정방법등에 대해서는 Hulten and Wykoff(1981) 및 박대원(1985) 참조.

償却制度를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은 시장의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동태적 관점에서 볼 때 개별경제주체의 미래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닐 수 있으며 더구나 개별적 혹은 私的인 최적화가 사회적인 최적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입장이다. 특히 國際化와 이에 따른 외국시장과의 상호 의존성등을 감안할 때 외국제도 때문에 생긴 왜곡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게되는 것은 당연하며 여기에서도 정부의 개입필요성이 제기될수 있다.

市場이 動態的인 資源配分의 최적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정부가 그것을 보완개선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정부가 자원배분에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질 때 정책선택의 구체적 의사결정이 경제적 요인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위험은 상존한다. 의사결정과정의 민주화되어 소수의 테크노크라트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다양한 利益集團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정책결정이 합리성을 상실하게 될 위험성은 더욱 증대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일반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 경제여건은 減價償却制度를 통한 동태적 자원배분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하는 여러가지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거론될 수 있는 요인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투자의 위축과 이에 따른 경기의 둔화 및 수출의 부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수출의 부진 때문에 투자가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기도 부진한 것이라는 설명이 더 논리적인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과정에서 인과관계가 어떤 것이건 간에 한계투자의 기회비용을 낮추어주는 것이 이러한 순환과정으로부터의 탈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減價償却制度를 이용하여 이와같은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대책자원의 이유때문에 減價償却制度 자체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의 우리경제가 묘한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우리경제는 최근의 임금상승과 환율변동 등 상대가격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여 급속한 구조조정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리경제의 여러가지 어려움은 이와같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마찰과 진통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나아가서 이와같은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져야만 우리경제는 先進國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경제구조, 특히 산업의 구조조정은 상대적으로 비싸진 노동을 기술과 자본으로 대체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相對價格構造의 변화에 대한 기업의 매우 합리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같은 상대가격의 변화가 要素市場의 需給狀況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는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것 처럼 향후의 우리나라 노동공급속도는 상당기간 둔화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애다가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져왔던 기존의 재래제품시장을 포기할 때 尖端分野에서 급속히 比較優位를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를 갖지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돌파구는 제조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른바 탈산업화현상이 가속화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최근의 수입자유화에 힘입은 소비재수입의 급증, 금융및 부동산시장에서의 財테크에대한 가계 및 기업의 관심고조, 소득수준의 향상과 분배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소비수준 및 패턴의 고도화 등은 탈산업화의 조짐인 동시에 脫産業化를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여러가지 요인들중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런추세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경제수준을 가지고 제조업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의미의 산업구조고도화의 단계를 생략한 채 소프트한 산업구조로 바로 다음질해가는 것이 經濟 '先進化'의 길이 아님은 자명한 것이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動態的인 관점의 資源配分에 減價償却制度를 가지고 정책적인 개입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減價償却制度를 통한 자본비용의 인하를 추진

하는 방향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임금의 상승 등 때문에 노동과 자본의 상대 가격이 높아진데다가 자본의 비용을 낮추어주면 상대가격의 왜곡은 더 심해진다는 모순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減價償却을 통한 資本費用의引下는 첨단산업보다는 재래식 장치산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인센티브를 줄 것이며 이러한 부문은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이 비교적 낮은 부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재래식 제조업부문의 투자증가는 오히려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조업 부문의 限界生産費用을 낮추어 주므로 國際競爭力의 維持와 이에의한 製造業基盤의 확충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최근의 노동시장상황을 보고 노동의 공급과잉가능성을 믿지 않으려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 이유는 정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능공을 구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에 대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른바 블루칼라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빠르게 올랐음에도 이 부문에서 인력수급의 애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학력간 직종간 임금(혹은 더 넓은 의미의 보수)구조가 합리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비용의 하락은 자본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노동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임금구조의 합리화와 부문별 노동수급의 애로를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減價償却制度에 대한 기본적 시각은 資源配分에 대한 中立性의 추구 즉 경제적 감가패턴에 접근시켜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산업발전의 방향을 시장의 시그널이 바로 잡아주지 못한다고 판단하게 하는 여러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현재진행중인 산업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과도적으로, 減價償却制度를 적극적인 産業構造調整政策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시각에서 이 제도의 개편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최근의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減價償却制度가 經濟的 減價率을 반영하는

중립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일반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쟁적으로 이 제도를 投資促進 및 競爭力強化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전반까지 선진국들은 파격적인 減價償却制度를 운용하여 왔다. 대표적인 것으로 美國의 加速費用回收制度(ACRS)와 英國의 投資初年度 完全償却制度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法人稅의 有效稅率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났으며 더구나 부문간 및 자산 유형간의 유효세율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 투자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의 세제개편에서는 과도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강화되어 경제적인 감가율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OECD제국들의 최근 세제개편에서는 이와같은 방향을 표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아직도 강력한 投資誘因效果가 減價償却制度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자산의 유형별 또는 용도별로 자본비용의 격차가 심하여 부문간에 왜곡이 일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特別減價償却制度가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減價償却制度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너그럽지 못하다고 판단되며 特別減價償却制度에 의한 부문간의 왜곡은 선진국에 비해서 작지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의 국제경쟁력비교라는 관점에서도 減價償却制度를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산업발전단계까지를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시각에서 우리나라 減價償却制度의 問題點을 分析하고 그 개선대안을 검토한다.

### Ⅲ. 우리나라 減價償却制度의 問題點

앞에서 논의한대로 우리나라의 減價償却制度를 적극적인 관점에서 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제도가 담당해야할 역할을 설정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우리나라의 減價償却制度는 尖端이나 在來를 불문하고 제조업 부분의 機械設備投資를 촉진하는 역할을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담당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를 좀더 지속시키고 고용확대에도 도움을 주며 전반적인 산업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리면서도 자원배분에 미치는 불필요한 왜곡효과는 극소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減價償却制度의 問題點을 분석한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 현행 稅法上 減價償却制度를 개관한다.

#### 1. 우리나라 稅法上 減價償却制度의 概要

減價償却制度를 규정하는 요소는 (1) 減價償却 베이스 (2) 耐用年數 또는 償却率 그리고 (3) 減價償却의 방법 등 세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순서로 우리나라 제도의 특성을 개관하고 기타 減價償却 관련제도와 特別償却制度를 살펴본다.

##### 가. 減價償却의 베이스

기본적으로 取得原價를 減價償却對象으로 하고 있다. 취득원가의 포괄범위에 대한 사항은 제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의 제작, 건설, 매입, 설치 등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완전하게 原價主義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가격의 변동을 감안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減價償却베이스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시가에 준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 자산 재평가제도에 대해서는 뒤에 좀더 상세히 논한다.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자본의 취득원가를 100%회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잔존가치를 10%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자산재평가나 特別償却등에 의해서 100%이상 회수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제도에서는 90%만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도입된 정확한 이유

를 알기는 어려우나 定率法으로 減價償却을 행할경우 耐用年數를 償却率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달리 정당화 될 근거가 있는 것 같지 않다.<sup>2)</sup> 특히 오늘날에는 수명을 다한 자산이 상당한 正의 殘存價值(scrap value)를 갖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며 잔존가치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선진국들의 추세이다.

#### 나. 耐用年數

減價償却制度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耐用年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法人稅法 施行規則 별표에 자산 종류별, 용도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있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건물, 구축물, 수송기기, 기구 및 비품 등), 사업별 고정자산(산업별 용도별 기계 장치), 우마 과수등 생물자산, 무형 고정자산 등의 耐用年數 또는 수확가능연수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영화 필름의 償却率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 규정된 耐用年數나 償却率은 대체로 실제의 耐用年數에 가깝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건물은 대체로 30~40년 (주택 사부선 점포등은 60년, 극약등을 사용하는 부식하기 쉬운 공장은 8년) 기계류는 대체로 6~11년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가 30만원 (금형의 경우 10만원)미만의 고정자산은 취득 즉시 상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다. 償却의 方法

자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상각방법을 규정하여 놓고 있으며 법인은 그 중에서 선택하여 신고 하도록 되어 있다. 有形固定資產은 定率法 또는 定額法중에서 택하도록 되어 있고 無形固定資產은 定額法만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鑛業權은 定額, 또는 生産量比例法 중에서 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鑛業에 직접사용되는 광업권이외의 사업별 고정자산은 정율, 정액, 또는 생산량비례법중 아무것이나 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有形固定資產은 定率法,

2) 정율법으로 100%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각율이 높아도 무한대의 기간이 필요하다.

無形固定資産은 定額法, 그리고 鑛業權은 生産量比例法을 따르게 하고 있다. 일단 선택된 방법은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이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sup>3)</sup>

라. 其他 關聯規定

(1) 期中 取得資産의 期間計算

월수를 계산하여 월수에 비례하여 減價償却額을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한다.

(2) 再評價時 또는 中古資産 取得時의 耐用年數 調整 등

해당자산의 잔존 耐用年數에 이미 경과된 耐用年數의 40%(2년 미만은 2년으로 하고 1년미만의 단수는 질사한다)를 더하여 耐用年數로 한다. 기존자산에 대하여 자본지출을 행한 경우 그 자산의 耐用年數가 남아있으면 자본지출액을 減價償却베이스(장부가액)에 가산하여 남은 耐用期間 동안에 減價償却한다. 만일 내용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잔존가치만 남아있으면 경과인수의 40%를 耐用年數로 하여 상각한다.

(3) 減價償却의 是否認 計算

稅法上 인정되는 감가상가비를 減價償却範圍額이라고 한다.<sup>4)</sup> 이 範圍額이 회사가 계상한 減價償却費보다 크면 그 차액을 減價償却費 是認不足額이라고 한다. 반대로 회사가 減價償却 範圍額 이상으로 減價償却費를 계상하였으면 그 차액을 減價償却費 否認額이라고 한다. 不足額과 否認額은 서로 상계가능하나 자산종류에 따른 제약을 받는다. 즉 모든 유형고정자산간에는 是認額과 否認額의 상계가 가능하고 생물자산은 생물자산간에만 상계가 가능하다.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특정종류내에서만 상계가 가능하다. 예를들면 한 특허권에서 발생한 부인액은 다른 특허권에서 발생한 부족액과만 상계가 가능하다. 또 不足額

3) 허용되는 경우는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4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된때, 또는 해외시장의 경기변동이나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 등이다.

4) 우리나라의 稅法上 減價償却制度는 減價償却 上限의 성격을 갖는 範圍額반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任意償却制度이다.

과 상계하고 남은 償却否認額은 損金에는 산입되지 않으나 누적 이월이 가능한 반면 시인부족액은 당기에 상계되지 못하면 移越되지 못하고 소멸된다.

#### (4) 減價償却의 擬制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稅法上 규정하는 減價償却費(特別償却은 제외)를 손금에 강제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減價償却의 擬制라고 한다. 이는 세금이 면제 또는 감면되는 기간중에는 상각하지 않고 있다가 면제 또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 減價償却費를 계상함으로써 면제 또는 감면효과를 부당하게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 (5) 리스와 減價償却

리스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하고 있다.<sup>5)</sup>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임차회사가 리스회사의 금융으로 상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임차회사가 이 리스자산을 減價償却하도록 하고 있으며 리스료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만을 손금산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리스자산에 대한 減價償却은 리스회사가 하고 이용(임차)회사는 리스료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 나. 特別償却

여러가지 산업정책적 목적이나 기타의 이유로 세법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減價償却範圍額 이상으로 減價償却費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法人稅法 施行令 제51조에는 機械設備의 장시간 가동에 대한 特別償却과 에너지절약시설, 산업폐기물 및 폐유처리시설 등에 대한 特別償却이 규정되어 있다. 이외의 모든 정책목적의 特別減價償却은 租稅減免規制法에 규정되어 있다. 租稅減免規制法에 규정되어있는 特別減價償却의 경우는 17가지나 되며 여기에 조세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및 종합한도제등이 더하여져 제도를

5) 금융리스는 (1) 리스기간 종료시 임차인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거나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 실행일 현재 取得價額의 10%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채리스 원금으로 하여 再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3) 리스기간(채리스기간은 포함하지 않음)이 리스물건의 세법상 내용인수를 초과하는 경우등을 포함한다. 이외의 리스는 모두 운용리스로 분류된다.

매우 복잡하게 하고 있다.

特別償却의 방법은 보통 일반 減價償却範圍額에 이 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당해년도의 減價償却範圍額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취득년도에 취득액의 일정비율을 즉시 손급산입할 수 있게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현행의 特別償却制度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特別償却과 관련된 問題點을 논의할 때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 2. 耐用年數와 償却率의 問題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우리나라 稅法上 耐用年數는 자산 형태별, 용도별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1) 耐用年數가 지나치게 세분류되어 실제의 적용이 복잡하다는 점, (2) 耐用年數가 비교적 길어서 비용회수가 지연되거나 불충분하게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3) 특히 신기술 개발 등으로 급속한 진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등이다.

가. 耐用年數가 규정되는 資産의 分類가 지나치게 複雜하다는 問題

有形固定資産만 보더라도 기계장치 이외의 자산과 事業別 固定資産등은 매우 상세한 분류에 따라 耐用年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회계처리하고자 할 때 그 자산이 정확하게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찾는 것이 반드시 쉽고 명백한 것이 아닐 수 있다. 또 자산의 종류마다 耐用年數가 다르므로 減價償却費의 계산이 복잡하다. 미국의 ACRS 등처럼 서너가지의 그룹으로 모든자산을 대별하여 각 그룹마다 동일한 減價償却率이나 耐用年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훨씬 더 단순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耐用年數 규정이 세분되어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첫째로 급속하게 회계업무의 전산화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계산의 복잡성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다. 둘째로 현재의 耐用年數 규정하에서도 미국의 ACRS 처럼 단순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이와같은 복잡성은 그 자체로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되기 어렵다.

#### 나. 급속한 陳腐化에 대한 彈力的 對應의 어려움

減價償却率이나 耐用年數를 자세하게 규정해 놓으면 그 자체가 제도를 경직되게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우선 새로운 종류의 산업이나 기계 또는 설비 등이 생기는 경우에 적절한 耐用年數를 세법에서 찾지 못할 수 있다. 또 기존의 기계나 설비가 예상치 못한 기술의 개발 등으로 급속하게 진부화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 耐用年數의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조정들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른 수시조정(ad hoc adjustment)의 형식을 취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접근은 일관성이 없어 불안정하고 또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와같은 조정에 있어서의 탄력성의 결핍이라는 문제 외에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해 불합리하게 긴 耐用年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당면한 불만이 높다는데 있다.

#### 다. 耐用年數가 지나치게 길다는 問題

요컨대 耐用年數나 減價償却率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불만은 耐用年數가 지나치게 길고 따라서 減價償却率이 비현실적으로 낮다는 데 있다. 물론 耐用年數 한가지만 가지고 자본비용회수의 속도가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特別償却등 실제로 적용되는 減價償却期間을 단축시켜주는 제도가 있고 또 減價償却베이스의 인플레이 조정이 얼마나 잘 이루어 지느냐, 어떠한 減價償却方法을 사용하게 하고 있느냐 등이 모두 실제적인 資本費用回收速度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資本費用의 回收期間이 길다 또는 짧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경제적 감가율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외국의 제도이나 또는 다른 기준이어야 하느냐 등이다.

우선 기준은 앞에서 논의한 대로 減價償却制度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감가율이나 외국의 제도등이 모두 중요한

참고자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減價償却制度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궁극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것이 定量的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하는 것은 현재의 정보와 연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耐用年數가 지나치게 길다는 주장 자체도 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충분치 못하다는 등의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간접적인 것이며 더구나 어느정도 단축되어야 하나에 대한 다음 절에서의 논의는 더욱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판단에 의한 것임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한다.

特別償却이나 인플레이 조정, 그리고 減價償却의 방법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더 논의하겠지만 特別償却은 글자 그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 평균의 자본회수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해도 耐用年數의 조정을 대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인플레이 조정을 위해서 資產再評價制度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기면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심각해 질수록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플레이의 조정을 단순히 耐用年數의 단축으로 해결하는데도 다른 부작용이 따른다.<sup>6)</sup> 이에 대해서는 뒤에 좀더 논의한다. 減價償却의 방법도 定率法이나 定額法 등 가속상각의 효과가 전혀 없는 제도만이 허용되고 있으며 殘價率을 10%로 규정하고 있어 투자비용이 100% 회수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일반적으로 모든 투자 자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국에 비해 볼 때 특정한 경우에만 特別償却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적어도 減價償却制度에 관한 한 기계 등에 대한 투자가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자본비용회수속도가 일반적으로 너무 느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6) 미국의 ACRS제도 등이 좋은 예이다. 투자를 촉진하는데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유효세율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지나치게 기복을 보인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라. 外國制度와의 比較

우리나라 減價償却制度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問題點 즉 자본비용의 회수 기간이 일반적으로 너무 길다는 문제점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 제도를 살펴본다.

미국은 일찍부터 減價償却制度를 적극적인 투자촉진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미국 뿐 아니라 긴밀한 경쟁관계에 있는 구미의 여러나라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효과가 있는 減價償却시스템을 경쟁적으로 도입해 왔었다. 1962년에 발표한 미국의 “減價償却指針”은 경제적 수명과 비슷하게 資產壽命을 규정하고 있는 Bulletin F 상의 資產壽命을 30-40% 단축하여 세무회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약10년 뒤인 1971년에 도입된 ADR(Asset Depreciation Range)시스템은 機械設備과 공익사업용 건물 등의 耐用年數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減價償却指針에 제시된 기간을 다시 상하 20%범위내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조정하여 세무회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81년에 시행된 Economic Recovery Tax Act에 의해서 이른바 ACRS(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가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하에서는 모든 減價償却자산이 3년, 5년, 10년 그리고 15년의 耐用年數를 적용받는 네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되어 減價償却制度 전체가 단순해지고 자본회수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하여 미국의 경우 減價償却制度상의 耐用年數는 자산의 유효사용연수라는 개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투자된 비용의 회수기간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논리적 근거는 1970년대중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가격의 급등을 減價償却制度가 충분히 조정해주지 못한데서 연유된 인플레이稅를 상쇄하여 인플레이稅에 의한 투자의 부진을 해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었으며 특히 과도한 조세감면효과로 유효세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더구나 자산의 종류간 유효세율의 왜곡이 심하게 나타나 1986년의 세제개편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새로운 ACRS(New ACRS)”인데 명분상으로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없는 경제적 減價償却을 지향한다는 것이지만 과거의 ACRS에서보다 자본회수기간을 다소 연장하고 종류별로 조정한 것뿐이며 아직도 경제적 減價償却패턴 보다는 상당히 조기에 자본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를 남겨두고 있다(표13 참조).

〈표 13〉

新舊 ACRS 比較

|     | 1981 ACRS                                                               | 1986 ACRS                                                                                                                             |       |
|-----|-------------------------------------------------------------------------|---------------------------------------------------------------------------------------------------------------------------------------|-------|
| 3년  | ADR 4년이하의 모든 資産<br>用車, 輕트럭 포함                                           | ADR 4년이하의 모든 資産<br>乘用車, 輕트럭은 포함되지 않음                                                                                                  | 3년    |
| 5년  | 위의 그룹에 속하지 않는<br>모든 機械裝備: 鑛山用<br>構築物                                    | ADR 4년초과, 10년미만의 資産<br>추가분: 乘用車, 경트럭, 일부<br>技術裝備, 컴퓨터를<br>이용한 電話交換機, 바이<br>오 매스 property, 研究<br>및 實驗設備, 半導體 製造<br>裝備, 自然力利用 發電設備<br>등 | 5년    |
| 10년 | ADR 資産壽命 18년-25년<br>사이의 모든 公益事業用<br>建物 및 構築物                            | ADR 10년이상-16년미만의 資産<br>(鐵道軌道, 農藥 및 園藝<br>專用構築物 등)                                                                                     | 7년    |
|     |                                                                         | ADR 16년이상 20년 미만                                                                                                                      | 10년   |
| 15년 | ADR 資産壽命 25년이상의<br>公益事業用 建物 및 構築물,<br>광산용 구축물, 유전 등을<br>제외한 모든 건물 및 구축물 | ADR 20년 이상-25년 미만의 資産<br>下水處理設備 등 포함                                                                                                  | 15년   |
|     |                                                                         | ADR 25년 이상으로 이하에 해당<br>되지 않는 資産                                                                                                       | 20년   |
|     |                                                                         | 賃貸用 住宅                                                                                                                                | 27.5년 |
|     |                                                                         | 非住居用 資産                                                                                                                               |       |
|     |                                                                         | ADR 수명이 규정되지<br>않은 자산 또는 27.5년<br>이상인 자산(엘리베이터,<br>에스컬레이터 포함)                                                                         | 31.5년 |

資料:CCH Tax Law Editors (1986)

좀더 구체적으로 <표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機械設備의 경우에는 신 ACRS에서는 대체로 그대로 있거나 耐用年數가 2년정도 연장되었을 뿐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대체적으로 상당히 짧다. 새로운 제도에서 뚜렷한 변화는 건물의 耐用年數가 대체로 倍 정도 길어졌다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것이다.

영국의 減價償却制度<sup>7)</sup>는 최근까지도 미국의 ACRS를 크게 능가하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1984년까지 항공기나 선박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機械設備는 이른바 초년도상각제도(First Year Allowances)에 의해서 투자당년도에 100% 비용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으며 산업용건물의 경우에는 초기상각(Initial Allowances)에 의해 투자당년도에 투자액의 75%(1980년 이전에는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비용처리되고 그 다음해부터 25년(1962년 11월 7일

<表 14> 韓美間 主要資産別 減價償却 耐用年數 比較

| 資産種類  | Hulten-Wyckoff    |                 | 美 國   |        |           | 韓 國 <sup>3)</sup> |
|-------|-------------------|-----------------|-------|--------|-----------|-------------------|
|       | 經濟的 <sup>1)</sup> | 資産壽             | ADR   | ACRS   | New ACRS  | (特別償却 不考慮)        |
|       | 償却率               | 命 <sup>2)</sup> | 資産壽命  | (1981) | (1986)    |                   |
| 가구비품  | 0.1100            | 18              | 8     | 5      | 5         | 5-10              |
| 엔진터빈  | 0.0786            | 25              | 12.48 | 5      | 7         | 9                 |
| 광산기계  | 0.1650            | 12              | 7.68  | 5      | 5         | 4-12              |
| 공장기계  | 0.1225            | 16              | 10.16 | 5      | 7         | 8-10              |
| 트럭버스  | 0.2537            | 8               | 5     | 5      | 5         | 4                 |
| 산업용건물 | 0.0361            | 55              | 28.80 | 15     | 31.5      | 25-40             |
| 상업용건물 | 0.0247            | 81              | 47.60 | 15     | 27.5-31.5 | 40-60             |
| 의료용건물 | 0.0233            | 86              | 48    | 15     | 31.5      | 50                |

주 1. Jorgenson and Sullivan(1981)에서 발췌.

2. 자산수명  $\approx 2 / \delta$ , 단  $\delta$ 는 경제적 자본감가율.

3.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耐用年數임. 자산분류가 반드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7) 이 부분은 한국조세연구소(1987)에서 발췌요약한 것임.

이후 취득분) 또는 50년(1962년 11월 6일 이전 취득분)에 걸쳐 투자총액(초기 상각 75%포함)을 定額法에 의해서 상각하도록 허용하였다.

이와같은 과격적인 초고속상각제도는 법인세의 유효세율이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1984년의 재정법에서 Spreading Rules을 도입하여 초년도상각 또는 초기상각을 과감히 줄이기에 이르렀다. 機械設備의 경우 초년도상각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1985년 3월 말까지 75%, 1986년 3월 말까지 50%)하여 1986년 3월말까지 끝나는 재정년도 이후에는 년 25%의 償却率에 의한 定率法の 年次償却만이 인정되고 있다. 산업용 건물의 경우에도 초기상각비율이 75%에서 50%, 25% 등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되어 지금은 25년 또는 50년간의 定額法에 의한 년차상각만 인정되고 있다.

참고로 機械設備에 대한 定率法償却率 25%는 산존가액을 10%로 할 경우의 耐用年數 8년에 해당된다.

### 3. 加速償却制度의 問題

減價償却制度를 적극적인 정책목적에 활용하고자 할 때 여러가지 형태의 加速償却制度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속상각의 구체적 방법은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에 의하여 계산된 減價償却範圍額을 인정 비율로 할증하여 償却範圍額을 세산하게 하는 소위 特別償却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제한적으로 초년도 상각이 인정되고 있다.

#### 가. 우리나라 特別償却制度의 問題點

特別償却制度의 問題點이라면 하나는 特別償却의 혜택이 주어지는 대상과 그 정도의 선택이 합리적인지의 문제와 加速償却制度로서 우리나라의 特別償却制度가 갖고있는 방법론적인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표15〉에 요약된 것처럼 特別償却制度는 法人稅法施行令, 租稅減免規制法, 및 外資導入法 등에 할증상각 또는 初年度特別償却 등의 방법을 적용받는 모두 21가지의 特別償却대상이 규정되어 있다. 대체로 機械設備의 집약적 사용에 의한 조기마모의 반영, 에너지절약, 공해방지, 기술개발, 지방이전, 경기조절,

〈表 15〉

特別償却制度의 概要

|                  |                                                     |                                                                                                                      |                       |                       |                  |
|------------------|-----------------------------------------------------|----------------------------------------------------------------------------------------------------------------------|-----------------------|-----------------------|------------------|
| 特<br>別<br>償<br>却 | 法人稅法 施行令 제5<br>1조 제1항 제1호 및<br>제2호·제8항 제1호<br>및 제2호 | ① 鑛業·製造業·電氣·가스業중 年平均<br>매일 12시간 이상(15시간 또는 18시간)<br>稼動에 대한 特別償却(同令 同項 제1호)<br>{一般償却範圍額의 20/100(30/100 또는<br>50/100)} |                       |                       |                  |
|                  |                                                     | ② 建設業 중 國土建設工事用 重機중 연평<br>균 매일 12시간 이상 使用에 대한 特別償<br>却(同令 同項 제2호){一般償却 範圍額의<br>20/100}                               |                       |                       |                  |
|                  |                                                     | ③ 에너지 節約型施設投資·산업폐기물처<br>리시설 및 洩유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상각<br>(同令 제8항 제1호 및 제2호){取得價額의<br>90/100}                                 |                       |                       |                  |
|                  | 租 稅 減 免 規 制<br>法                                    | ① 中小企業에 대한 特別償却(同法 제1<br>4조 제1항){一般償却範圍額의 50/100.<br>그러나 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한 中小企業<br>優先育成業種은 100/100}                        | 重                     |                       |                  |
|                  |                                                     | ② 中小企業協同化 事業計劃에 의하여<br>設置한 共同利用施設에 대한 特別償却<br>(同法 제14조 제2항){一般償却範圍額의<br>50/100}                                      | 複                     |                       |                  |
|                  |                                                     | ③ 外國航行事業에 대한 特別償却(同法<br>제32조){一般償却範圍額의 50/100}                                                                       | 不                     |                       |                  |
|                  |                                                     | ④ 鑛業에 대한 特別償却(同法 제36조)<br>{一般償却範圍額의 100/100. 그리고 石<br>炭·鑛業에 있어서 鑛山用 社宅의 경우에<br>는 50/100}                             | 可                     |                       |                  |
|                  |                                                     | ⑤ 防衛産業, 航空工業에 대한 特別償却<br>(同法 제40조){一般償却範圍額의 100/1<br>00}                                                             | 能                     |                       |                  |
|                  |                                                     | ⑥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에 대한 特別償<br>却(同法 제40조의 3){一般償却範圍額의<br>100/100}                                                          | 重<br>複<br>不<br>可<br>能 | 重<br>複<br>不<br>可<br>能 | 重<br>複<br>可<br>能 |

|                                                                            |             |                                        |
|----------------------------------------------------------------------------|-------------|----------------------------------------|
| ⑦ 首都圈외의 地域으로 移轉하는 法人<br>本社移轉에 대한 特別償却(同法 제43조의<br>3){一般減價償却範圍額의 50/100}    | 可<br>能      |                                        |
| ⑧ 事業轉換 또는 主力業種施設에 대한<br>特別償却(同法 제46조의 3){一般減價償却<br>範圍額의 100/100}           |             |                                        |
| ⑨ 新技術企業化의 事業用資産에 대한<br>特別償却(同法 제18조 제1항){取得價額의<br>30/100. 國產機資材는 50/100}   |             |                                        |
| ⑩ 新技術企業化의 研究試驗用施設에<br>대한 特別償却(同法 제18조 제2항){取得價<br>額의 90/100}               | 重<br>複<br>不 |                                        |
| ⑪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特別償却(同法<br>제43조){取得價額의 30/100. 國產機資材는<br>50/100}              |             |                                        |
| ⑫ 醫療法人의 醫療設備에 대한 特別償却<br>(同法 제71조 제3항){取得價額의 30/1<br>00. 國產機資材는 50/100}    |             |                                        |
| ⑬ 景氣調整을 위한 投資資産에 대한 特別<br>償却(同法 제72조 제2항){取得價額의 3<br>0/100. 國產機資材는 50/100} | 可<br>能      |                                        |
| ⑭ 特定設備投資에 대한 特別償却(同法<br>제71조 제1항){取得價額의 30/100. 國產機<br>資材는 50/100}         |             |                                        |
| ⑮ 製造業, 鑛業, 水産業의 輸出 등에 대한<br>特別償却(同法 제25조){一般償却範圍額의<br>30/100}              |             |                                        |
| ⑯ 賃貸事業者의 賃貸國民住宅에 대한<br>特別償却(同法 제72조의 3){一般償却範圍<br>額의 100/100}              |             |                                        |
| ⑰ 勤勞者를 위한 寄宿舍의 新築·購入에<br>대한 特別償却(同法 제72조의5 제2항){一<br>般償却範圍額의 100/100}      |             |                                        |
| 外資導入法<br>(제14조 제2항 제2호)                                                    |             | 一般減價償却範圍額의 100/100에 外國人<br>投資比率을 算한 金額 |

資料：申 瓚 秀 (1990) P.469

수출지원, 근로자 복지향상, 임대주택 공급촉진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特別減價償却制度들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하고 너그러운 혜택은 까다로운 중복직용의 배제규정과 종합한도제 등에 의해서 실제의 총수혜가능규모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特別減價償却制度가 사용하는 숫자의 단위(예컨대 100%, 50% 등) 때문에 이 제도의 세감면효과는 대단히 큰 것같은 인상을 주고있는 것이 사실이나 실제의 정감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이다. <표16>에서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特別償却의 할증율이 200%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投資稅額控除率로 환산하면 약 5~7%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耐用年數가 길고 또 할인율이 크다면 特別償却의 효과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으나 현 여건에서 20% 이상의 할인율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할증율이 100%라

〈표 16〉 特別償却의 効果 I (割増償却의 경우)  
(單位: 投資 100원당 稅負擔輕減額의 現價, 원)

| 割増率  | r=10% |      | r=15% |      | r=20% |      |
|------|-------|------|-------|------|-------|------|
|      | T=10年 | T=5年 | T=10年 | T=5年 | T=10年 | T=5年 |
| 200% | 6.05  | 4.81 | 6.88  | 5.49 | 7.42  | 6.05 |
| 100% | 4.41  | 4.74 | 4.82  | 4.12 | 5.05  | 4.41 |
| 50%  | 2.85  | 2.55 | 3.01  | 2.72 | 3.08  | 2.85 |
| 30%  | 1.93  | 1.77 | 2.00  | 1.86 | 2.02  | 1.93 |
| 20%  | 1.37  | 1.28 | 1.41  | 1.33 | 1.42  | 1.37 |

주: 1. r = 割引率, T = 耐用年數

2. 法人稅率을 30%로 가정하고 法人稅 正減效果만 계산한 것임.

3. 計算式: 세 부담정감효과 = 법인세율  $\times (Z - Z_0)$

$Z_0$ : 할증상각이 없는 경우의 미래 감가상각액 현재가치

Z: 할증상각이 있는 경우의 미래 감가상각액의 현재가치

$$Z_0 = \frac{d}{r+d} [1 \cdot \text{Exp}\{-(r+d)T\}]$$

$$Z = \frac{d(1+s)}{r+d(1+s)} [1 \cdot \text{Exp}\{-(r+d+ds)T\}]$$

단,  $d = (-\ln 0.1) / T$ 로서 殘價率을 0.1로 가정했을때의 감가상각율을 나타내며

s는 割増率임.

고 하면 실제의 세부담 경감효과는 4-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割増償却方式이 아니고 期初償却方式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17>에서 보는 바와같이 할증상각이 전혀 없고 기초상각을 30% 허용하는 것은 약 3-4%의 투자세액공제와 대등한 효과를 갖는다. 할인율이 높을 수록 그리고 耐用年數가 길수록 감면효과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기초상각과 할증상각은 대체로 중복적용이 허용되고 있는데 기초상각비율이 높으면 할증상각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기초상각이 90%인 경우에는 할증상각이 없는 경우와 100% 할증이 허용되는 경우에 세부담 경감효과에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초상각의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와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때 두가지 대안이 불균형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조감법 18조 1항의 1과 2에서는 投資稅額控除率 3%와 10%를 期初償却率 30%와 50%에 각각 대응시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표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償却率 30%는 대체로 투자세액 공제율 3%와 대응시키는 것이 무리가

〈표 17〉 特別償却의 効果 II (割増償却과 期初償却이 동시적용될 경우)  
(單位4: 投資 100원당 稅負擔輕減額의 現價, 원)

| 할인율<br>割増率 | 내용인수 r=10% T=10년 |      |      | r=15% T=10년 |      |       | r=15% T=5년 |      |      |
|------------|------------------|------|------|-------------|------|-------|------------|------|------|
|            | 기초상각율 30%        | 50%  | 90%  | 30%         | 50%  | 90%   | 30%        | 50%  | 90%  |
| 200%       | 7.19             | 7.95 | 9.47 | 8.49        | 9.56 | 11.70 | 6.37       | 6.96 | 8.14 |
| 100%       | 6.04             | 7.13 | 9.31 | 7.04        | 8.53 | 11.50 | 5.41       | 6.28 | 8.01 |
| 50%        | 4.95             | 6.35 | 9.15 | 5.78        | 7.62 | 11.32 | 4.44       | 5.58 | 7.87 |
| 30%        | 4.30             | 5.89 | 9.06 | 5.07        | 7.12 | 11.22 | 3.83       | 5.15 | 7.78 |
| 20%        | 3.91             | 5.61 | 9.00 | 4.66        | 6.82 | 11.16 | 3.46       | 4.89 | 7.73 |
| 0%         | 2.96             | 4.93 | 8.87 | 3.67        | 6.12 | 11.70 | 2.53       | 4.22 | 7.60 |

주: 1. <표16> 註記 참조.

2. 계산식: 세부담경감효과 = 법인세율(30%) × { $\alpha + (1 - \alpha)Z - Z_0$ }

단,  $\alpha$  = 期初償却率, Z와  $Z_0$ 는 <표16>의 경우와 동일함

없으나 기초 償却率 50%는 투자세액 공제율 5%와 대응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기초상각의 경우에도 이 제도가 投資稅額共除率에 비해서 단위가 큰 숫자를 사용하므로서 더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착각이 상기한 법제의 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수혜대상의 합리성에 관해서는 租稅減免制度 전체를 보면서 논의해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 나. 외국의 加速償却制度

우리나라의 제도가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복잡하고 요란하면서도 실효성은 별로 없는데 반해서 외국의 경우는 대개 가속상각 대상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복잡하지 않으며 또 별로 눈에 거슬리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서 무역마찰을 야기할 근거를 별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전산업에 걸쳐 초기상각이라든가 상각기간의 대폭적인 단축등을 통해서 실제로 커다란 지원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표18>은 減價償却期間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경우의 세부담 경감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특히 선진국과 같이 殘價額을 남기지 않고 모두 상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약 5% 정도의 세부담 경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割増償却方式으로 환산하면 가장 높은율인 100% 할증상각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減價償却方式에 있어서도 가속효과를 도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0%遞減法 또는 150%遞減法(200%/150% declining-balance method)등을 사용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定額法에 의해 계산된 減價償却額에 일정배율을 곱하여 減價償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 減價償却배이스를 定額法과는 달리 계속 조정해 나감으로서 定率法처럼 減價償却額이 체감되도록하는 제도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i$ 년 경과후의 減價償却額  $D_i$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D_i = A \{ (L-2) / L \}^{i-1} (2 / L)$$

여기에서 A는 取得價額을 나타내며 L은 稅法上의 資產壽命을 나타낸다. 그리고 2라는 수치는 이것이 200%遞減法임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150%의 경우에는 2 대신 1.5를 대입하면 된다. 이 식에서  $A \{ (L-2) / L \}^{i-1}$ 항이 나타내는 것은 i년 경과후의 장부가액이며  $(2 / L)$ 항은 장부가액에 적용되는 減價償却率 (定額法에 의한 비율  $1 / L$ 의 두배)을 나타내는 것이다. 200%遞減法의 경우에 對 資產壽命이 5년이라면 40%의 定率法 減價償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법에 규정된 耐用年數 5년짜리 자산의 定率法 償却率은 36.9%로 되어 있다.

〈표 18〉 耐用年數 短縮의 稅負擔 輕減效果  
(單位: 投資 100원당, 원)

| 割引率 | 耐用年數            | 耐用年數10년을 5년으로                |
|-----|-----------------|------------------------------|
|     | 10年을 5年으로 단축(A) | 단축하고 殘價 10원은  마지막년도에 손비처리(B) |
| 20% | 4.31            | 5.41                         |
| 15% | 3.80            | 5.22                         |
| 10% | 3.00            | 4.82                         |

註: 1. 法人稅率은 30%로 가정하였으며 法人稅率 輕減效果만 계산한 것임.

2. 特別償却은 전혀 없는 것으로 계산함.

3. 계산식: (A) 세무당경감액=법인세율×( $Z_5 - Z_0$ )

$Z_5$ =〈表 16〉의  $Z_0$ 와 같으나 이때 T=5임.

$Z_{10}$ =〈表 16〉의  $Z_0$ 와 같으나 이때 T=10임.

(B) (A)의 세무당경감액+ 법인세율 × 0.1 × Exp(-r×5).

미국의 신ACRS에 의하면 減價償却期間이 10년 이하인 자산은 전부 200% 遞減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15-20년 자산은 150% 遞減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리고 임대용 주택과 비주거용 자산 등 耐用年數가 27.5년 이상인 자산은 定額法에 의해 減價償却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경우에 定額法에 의한 감가상각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시 遞減法으로 전환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遞減法을 사용하되 減價償却額이 극대화 되는 시점에서 定額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점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잔존가치 없이 완전상각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일본은 부분적으로 割増償却方式의 特別償却制度를 사용하여 특정한 목적의 투자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비교적 많지 않으며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加速償却制度나 기타 투자 인센티브들을 대개 환경 관련 투자를 촉진하는 수단이나 사양산업등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역의 투자활성화 및 고용촉진 수단 등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減價償却制度가 상당히 큰 가속상각 효과를 가진 것이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사실상 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수준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 4. 인플레이션 調整의 問題

유형고정자산의 회계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原價主義를 채택해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기에는 減價償却制度가 資本費用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세제측면에서 보면 이런 현상은 기업의 이익을 과대계상하게 하고 결국 세부담을 실제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재고자산의 회계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세부담의 증가는 인플레이 稅가 실제로 대단히 컸다는 점이 실증적으로도 밝혀진 바 있다.<sup>8)</sup>

이러한 현상은 資本形成을 阻害하고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잠식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서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대두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자본소득과세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의 조정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

8) Feldstein and Summers(1979)는 미국의 경우 1954-77년간 인플레이션 때문에 법인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한 세액을 추정하였다. 추가적으로 부담한 세액의 법인세액에 대한 비율은 이 기간중 최저 11.6%(1962)에서 최고 95.1%(1974)에 이르며 70년대 후반기에는 평균 50%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1965년에 영구적인 제도로써 資産再評價制度가 도입되어 인플레이션 조정을 세제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정책방향과 의지가 천명되고 또한 추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減價償却制度를 합리화하는 목적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sup>9)</sup> 무엇보다도 耐用年數가 비교적 짧은 機械設備등의 경우에는 資産再評價制度를 사용하여도 그 혜택이 크지 않으며 더구나 자산재평가는 기업의 전자산을 대상으로 하게 됨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일 자체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요컨대 기계나 기타 설비등 耐用年數가 짧은 자산의 인플레이션 조정 수단으로서 資産再評價制度는 너무 ‘발이 무거운’ 제도라고 생각된다. 보다 쉽게 활용될 수 있는 효과직인 인플레이션 조정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등 일부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세 부담의 증대를 보상할 목적으로 資本費用의 조기회수제도를 실시하였으나 이러한 제도도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국면에서는 과도한 조정이 이루어져 유효세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는(마이너스가 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IV. 減價償却制度의 改善方向

앞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에 비추어 減價償却制度를 어떻게 운영하여야 할 것인가를 논의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減價償却制度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특징과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減價償却制度가 개편되어야 할 방향은 이제 자명하여 졌다고 할 수 있다.

기본 방향을 몇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機械設備 등 製造業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산의 減價償却期間을 대폭 단축한다.

---

9) 郭泰元(1986)에 우리나라 資産再評價制度의 効果와 여러가지 특징 및 問題點 등이 분석되어 있다.

둘째 이와함께 복잡한 特別償却制度를 과감하게 정리한다. 좀 더 확실하게 말하면 特別償却制度를 완전히 폐지한다.

셋째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플레이 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넷째 이와함께 資産再評價制度의 성격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이와같은 방향에서 좀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부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1. 初年度 費用回收制度의 導入

이 제도는 주로 인플레이션의 조정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제도이다. 減價償却制度에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으면서 減價償却會計를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경험적으로 발전된 제도가 아니고 고안된 제도라는 점에서 다소 생소한 것이 결점이라면 결점일 수 있다.

이 제도는 Auerbach and Jorgenson(1980)에 의해서 제안된 것으로서 그 요지는 투자 초년도에 투자된 자산의 내용기간동안 계상될 減價償却額 플로우의 현재가치를 비용으로 인정해 줌으로서 資本費用의 회수를 투자초년도에 완결한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1원을 투자할 경우의 초년도 회수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z = \int_0^{\infty} g e^{-(r+g)s} ds$$

이 식에서  $g$ 는 減價償却率을 나타내고  $r$ 은 현가를 계산하는 割引率을 나타낸다. 그리고  $s$ 는 시간을 나타내는 變數이다.  $z$ 는 初年度 費用回收比率이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예컨대 같은 종류의 자산 100만원을 투자 했다면 초년도에 회수하는 減價償却額의 현재가치는  $(z \times 100\text{만})$ 원이 된다. 만일 경제적 감가율을  $g$ 에 대입하여  $z$ 를 계산한다면 이 경우의 初年度 費用回收制度는 중립적인 것이 된다. 즉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적인 것이된다. 이 제도가 인플레이

10) 이 비율을 매번 計算할 필요는 없다. 資産別 또는 그룹별로  $Z$ 를 계산하여 정해 놓으면 된다.

선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다.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된 초년도 비용회수액이 취득연도에 바로 회수되므로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줄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흔히 이 제도를 가속상각제도의 한가지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국등에서 사용하던 initial allowance 나 first year allowance 같은 제도하고는 그 발상에서부터 다른 것이다. 영국의 제도들은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적극적으로 줄여줄 목적으로 도입된 가속상각제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初年度費用回收制度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따라서 가속상각의 의미를 갖는냐의 여부는 위의 식에서  $g$ 의 값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와 관련된 문제일 뿐이며 이 제도 자체가 가속상각제도중의 한 가지는 아닌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잔존가액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각 자산별로  $z$ 를 계산한 減價償却率만 규정해 놓으면 잔존가액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정율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것으로 가정해도 완전상각이 가능해진다.

이 제도를 耐用年數가 긴 자산에 적용할 때는 무리가 따른다. 무엇보다도 할인율의 변동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여러가지 불확실 요인이 있으며 특히 중요한 문제는 비용면에서 일종의 集結效果(bunching effect) 또는 初期負荷(front-loading)效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어느 연도에 대형 건물을 취득한 경우 初年度 費用回收制度를 적용하면 상각해야 할 비용은 매우 커지나 이 건물이 이익에 기여하는 것은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므로 과세면에서도 손익의 기간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더구나 초년도 비용회수제도는 資產再評價制度를 대체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耐用年數가 긴 자산(주로 부동산)은 자산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이유가 있다. 따라서 初年度 費用回收制度는 機械設備등 耐用年數가 짧은 자산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중고자산의 취득이나 자산의 처분하고 관련해서 약간 주의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 취득의 경우에는 신규자산과 똑같이 취득가격에

초년도 회수비율을 적용하여 초년도 회수액을 계산하면 된다. 중고자산의 既使用期間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定率法을 전제하고 있으면 상각율에는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에서 계산한  $z$ 는 사용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동안의 인플레이션과 자산의 진부화나 마모 등에 의한 자산가치의 변화는 취득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처분한 쪽에서의 처리는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종래의 경우에는 판매가격과 장부가액의 차이로서 처분이익을 계산할 수 있고 이것을 법인세의 課稅베이스에 합산해 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初年度費用回收의 경우에는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다고해도 자산의 판매가액 전체가 과세소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때 과세소득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제도의 제안자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판매가액에 初年度回收率을 곱한 금액, 다시 말해서 취득자가 損費로 처리한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자산을 원래 취득했을 당시에 이 자산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일시회수제도를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았던 것 중에서 이 자산을 중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당초의 過多回收分을 양도 당시의 現價로 익금산입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방식의 처리는 행정적으로 간편할 뿐 아니라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 세제가 중립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취득자와 양도자의 한계세율이 같다면 자산의 양도가 전체 稅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에서 언급한 初期負荷(front-loading) 효과는 機械設備의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다. 신규창업의 경우나 대폭적인 시설확장 또는 改替投資가 이루어지는 경우 初年度 費用回收制度가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일종의 平準化(averaging)措置가 필요하다. 회수시점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종래와 같은 年次償却을 해 가다가 적절한 시점에서 장부 잔액에 대하여 일시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는 비용의 移越을 허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자본에 대한 투자는 비용으로 회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비용의 계상시점을

기업이 가장 유리하게 선택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현행의 減價償却 是否認制度라든가 減價償却의 擬制制度는 오히려 부당하게 기업의 투자비용회수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減價償却制度의 調整

앞에서 우리는 경제적 감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어도 앞으로 얼마동안은 減價償却制度를 적극적인 製造業 投資促進의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할 필요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미국의 ACRS제도처럼 減價償却資産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로 획일적인 減價償却期間을 적용하게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初年度 費用回收制度에서는 減價償却期間이 별 의미를 갖지않는다. 할인율과 減價償却率만 정해 놓으면 위의 식에서 바로 초년도 회수비율이 계산될 수 있다. 따라서 각 그룹별로 적용할 減價償却率만 정해놓으면 된다.

初年度費用回收制度는 耐用年數가 비교적 짧은 機械設備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므로 우리나라 세법상 사업용고정자산을 중심으로 3 또는 4의 그룹으로 減價償却率을 규정하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초년도에 100%회수하는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고 減價償却率이 70%인 자산(미국의 자산수명 3년 자산에 해당), 40%인 자산(미국의 자산수명 5년자산에 해당) 등으로 그룹을 지어 사업용고정자산들을 여기에 모두 포함 시킬 수 있다.<sup>11)</sup>

기타의 자산중 건물이나 구축물등 耐用年數가 15년을 넘는 것들과 무형고정 자산은 현재와같은 방법으로 減價償却하며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받는 재평가자

---

11) 이것은 기계설비에 관한한 미국의 개정전 ACRS제도와 비슷한 수준의 가속상각효과를 갖는다. 미국의 3년자산은 200% 체감법을 적용할 경우 년 감가상각율이 67%(2/3)인 정율법과 같은 속도로 감가상각하게 된다. 여기에 정액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회수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효과가 추가된다. 5년자산은 감가상각율 40%에 해당한다.

산으로 분류하고 이상에서 언급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유형고정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그룹에 적당히 나누어 넣으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한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이러한 고속상각제도가 결코 정상적인 제도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제도가 아니므로 장기간 지속되어서도 안된다. 우리경제가 어려운 구조조정의 고비를 성공적으로 넘기고 다시 안정되고 균형적인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減價償却率  $g$  는 경제적 자본감가율에 가장 가까운 값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는 減價償却制度가 완전히 중립적인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3. 特別償却制度

機械設備등의 減價償却의 속도를 전반적으로 加速化하는 조치가 실시되면 모든 特別償却制度는 완전히 폐지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효성이 높지 않으면서 큰 혜택을 특정한 산업에 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特別償却制度는 더 존속시켜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위와같은 일반상각의 가속화로 特別償却이 전면적으로 폐지되어도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 등 減價償却制度 이외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初年度回收率에 특별추가회수율을 가산해 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減價償却制度 자체를 가속화 시키는 것은 特別償却制度 뿐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다른 인센티브제도들도 과감하게 정비하여 공평하면서도 단순하고 동시에 성장잠재력 배양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개편하자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도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 4. 資産再評價制度의 整備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계류에 대해서 初年度 費用回收制度가 적용된다면 資産再評價制度의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初年度 費用回收制度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들은 재평가될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나



회계학적인 목적에서 본다면 기업의 중요한 자산항목이 되고있고 가격의 변동 폭이 큰 부동산의 경우만이라도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의 자산상태를 정당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요자산을 시가에 가깝게 평가 하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계학적 필요와 함께 租稅政策的인 관점에서도 토지나 건물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지가공시제의 도입으로 토지의 공식적인 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부동산만을 재평가하는 것은 전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에 비해 행정적으로도 훨씬 비용이 덜 들 것이다.

그러므로 不動産에 관해서는 周期的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차익은 실현된 양도소득과 같이 과세하거나 혹은 讓渡所得보다는 다소 낮은 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함께 資産再評價稅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再評價差益에 대한 과세는 미실현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나 기업의 장부상에 '실현된' 이익에 과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土地超過利得稅의 경우보 나는 시행상의 문제가 덜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양도소득세를 재평가단계에서 부담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의 실제 양도시에는 과세되어야 할 소득이 줄어들게 되며 이에 따라 기업간 자산이동이 훨씬 부드러워질수 있을 것이다.

## 第6章 企業의 活力提高와 競爭力強化를 위한 租稅誘因 政策

### I. 序論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상황에서 企業의 投資意慾을 북돋우고 競爭力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면에서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게 요청되는 優先順位가 높은 政策이라고 판단된다. 産業部門에서 충분한 施設 및 技術開發 投資가 이루어지고 構造調整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만이 우리나라의 成長潛在力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흔히 租稅誘因을 租稅支援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이것을 企業에 대한 政府의 特혜 내지는 지원이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인식에서 정부나 기업 모두 탈피할 필요가 있다. 租稅誘因은 흔히 특정부문이나 특정한 활동(activity)에 이윤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흐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租稅誘因에 반응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稅後利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것을 特혜로 보거나 지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판단된다. 혜택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와같은 인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인식은 여러가지로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로 이러한 유인을 特혜로 인식하는 기업들은 이 特혜의 확대나 유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租稅誘因政策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는데 그 불평의 이유가 대체로 이윤효과가 기대하는 것만큼 크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입장에서조차 이러한 인센티브를 特혜로 인식하게 될때 여러가지 비정상적인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우선 租稅誘因政策의 有效性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른바 租稅支出

즉 얼마만큼의 세수가 특정한 租稅誘因과 관련하여 일어났는가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租稅支出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혜택의 척도로서 더 적합한 것이며 효과 즉 바라는 방향으로의 자원의 이동을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부적합하다. 나아가서 혜택을 ‘分配’ 해주는 입장에 서게 되면 그 행태는 ‘政治的’인 성향을 띄게 되며 ‘合理的’ 또는 ‘分析的’인 판단기준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과거에 이루어졌던 여러가지 유형의 租稅誘因政策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 시각을 갖게된데는 租稅誘因政策의 본질에 대한 기업이나 정부의 잘못된 인식과 그에 따른 왜곡된 행태의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본다.

租稅誘因은 동태적인 시각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때 정부가 가격메카니즘에 개입하는 한가지 방법이다. 따라서 그 목적은 사회가 바라는 행동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報償’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행동자체를 ‘誘導’ 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租稅誘因은 당근의 성격일 수도 있지만 회초리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또 그 有效性의 판단기준은 한개의 당근으로 혹은 한대의 매로 말을 얼마나 더 빨리 그리고 멀리 뛰게 하였느냐에 있는 것이자 말이 당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시각에서 우리나라 租稅誘因政策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우리나라 租稅誘因制度의 개요를 정리하고 다음에 문제점과 개선의 방향을 논의한다.

## II. 우리나라 租稅誘因政策의 現況

### 1. 産業別 支援

1970년 대중에 租稅誘因의 주종을 이루었던 중요산업지원은 1980년대 초에 대폭 정비되었고 1986년말의 개편으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

그러나 法人稅法에서 製造業, 鑛業, 電氣業, 가스업 등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超過稼動 特別償却의 허용을 이들 산업에 대한 일반적 지원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외국항행사업, 석탄광업, 방위산업, 항공산업 등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이 있으나 전과같은 특정산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각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행의 세제에서는 産業別 支援은 없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고 판단된다.

## 2.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

- (1) 投資準備金制度：中小企業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자산가액(장부가액)의 15%를 投資準備金으로 설정하여 손급산입하고 4년거치후 투자상당액은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급산입하고 나머지는 4년이 되는 課稅年度에 즉시 입급산입하고 기간중의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는 제도이다.
- (2) 特別減價償却制度：中小企業의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는 50%의 割増償却이 허용되고 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한 中小企業優先育成業種중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는 100%의 割増償却이 허용된다.
- (3)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特定期間租稅減免(Tax Holidays)制度：농어촌지역에 창업한 中小企業과 首都圈外의 지역에 창업한 技術集約型中小企業은 창업일로부터 3년간은 法人稅(所得稅)를 전액면제하고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한다. 首都圈內에 창업한 기술집약형 中小企業은 창업일로부터 3년간 50%, 그후 2년간 30%의 세감면 혜택을 받는다.

## 3. 技術 및 人力開發에 대한 支援

- (1) 技術開發準備金：설정하여 손급산입하고 일정기간후 익급에 다시 산입하는 구체적 절차는 中小企業의 投資準備金制度의 경우와 같다. 적용대상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기술용역업, 정보처리사업, 방위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 금융·보험업 등이며 내국인이어야 하고 준비금 설정한도는 연간수

입의 1.5%(技術集約産業의 경우 2%)와 소득금액의 20%(기술집약산업의 경우 30%)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여기에 500만원을 가산한다.

(2) 技術 및 人力開發에 대한 稅額控除: 적용대상은 技術開發準備金의 경우와 같다. 技術 및 人力開發費로 지출한 금액의 10%를 稅額控除한다. 技術 및 人力開發費의 정의는 租減法施行令 [별표6]에 나와있다.<sup>1)</sup>

(3) 新技術企業化事業 등에 대한 投資稅額控除 또는 特別償却: 新技術企業化事業을 위한 내국인의 투자(중고품 제외)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3%(국산기자재의 경우 10%)를 稅額控除하거나 해당자산 취득가액의 30%(국산의 경우 50%)를 일시 상각할 수 있다.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이나 직업훈련시설 등에 내국인이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액의 8%(국산의 경우 10%)를 稅額控除하거나 투자액의 90%를 일시 상각할 수 있다.

(4) 中小創業 投資會社가 창업자에 또는 新技術事業 金融會社가 신기술사업자에 각각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차익은 익금에 不算入 한다.

(5) 技術用役事業에 대한 所得控除: 내국인이 영위하는 技術用役事業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의 50%를 課稅所得金額에서 공제한다.

(6) 투융자 손실준비금: 中小企業 創業投資會社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新技術事業金融會社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에 대해서는 그 투융자액의 50%를 준비금으로 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는 4년간 거치하여 기간중 발생한 투융자손실과 상계하고 잔액은 거치기간 종료

---

1) 대체로 연구부서의 인건비, 연구용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 연구시설 임차비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건비, 기술개발을 위한 위탁용역비, 특허나 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직무발명보상금, 도입기술의 소화개발비, 위탁훈련비, 직업훈련분담금, 사내직업훈련비용, 국가기술자격검정응시경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제조업)의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이다.

즉시 익금 산입한다.

- (7) 이 밖에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 4. 輸出, 海外事業, 海外投資 등에 대한 支援

- (1) 輸出損失準備金 : 수출, 관광 등 외화획득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외화수입의 1% 또는 동사업으로부터 얻은 소득의 50% 중 작은 금액을 輸出 損失準備金으로 설정하여 손급처리할 수 있다. 이 준비금은 발생한 손실과 상계할 수 있고 잔액은 2년(선박이나 기계의 수출의 경우는 5년) 거치후 3년간에 분할하여 익금산입 한다.
- (2) 海外市場 開拓準備金 : 용역수출을 하는 내국인이 해당되며 외화수입금액의 1%를 준비금으로 할 수 있다. 이의 손급산입, 손실과의 상계 및 익급처리절차등은 輸出損失準備金의 경우와 같다.
- (3) 特別償却 : 제조업, 광업, 수산업 등의 수출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30%割増償却할 수 있다.
- (4) 海外事業所得控除 : 해외건설 또는 산업설비수출사업으로 획득한 외화의 2%를 당해사업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다.
- (5) 海外事業損失準備金 : 준비금 설정한도는 외화수입금액의 2%이며 손실과 상계하고 5년거치후 3년분할하여 익금산입 한다.
- (6) 海外投資損失準備金 : 해외투자액의 20% 범위내에서 준비금을 설정하고 발생한 손실과 상계하며 잔액은 3년 거치후 4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 한다.
- (7) 海外資源開發投資 配當所得에 대한 法人稅등의 免除 : 자원개발투자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8) 外國航行事業에 대한 特別償却 : 외국항행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해서는 50%의 割増償却이 인정된다.

5. 資源開發事業에 대한 支援

- (1) 鑛業投資準備金 : 광업수입의 2%(해외투자의 경우는 4%)를 投資準備金으로 설정하고 그 처분은 中小企業 投資準備金의 경우에 준한다.
- (2) 鑛業에 대한 特別償却 : 내국인이 광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용자산(광산용 사택제외)은 100%, 탄광의 사택은 50% 割増償却한다.
- (3) 畜産業에 대한 所得控除 : 내국인이 영위하는 축산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간 소득금액의 20%를 공제한다.
- (4) 山林開發所得에 대한 所得稅 등의 免除 : 조립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세한다.

6. 地域間 均衡開發을 위한 租稅誘因

- (1)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投資準備金 및 特別償却 : 농공지구 또는 농어촌 부업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 운영하는 내국인의 경우 사업용자산가액의 15%(도서지역은 20%)까지 投資準備金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처분은 中小企業 投資準備金에 준한다. 또 이러한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은 100% 割増償却할 수 있다.
- (2) 農工地區 入住企業 및 醫療脆弱地域 新設病院에 대한 租稅特例 : 농공지구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의료취약지역에 병원을 신설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당해공장 또는 병원에서 얻는 소득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3년간은 法人稅(所得稅)를 全額免除하고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한다. 상기 병원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8%(국산의 경우 10%) 投資稅額控除를 허용한다.
- (3) 地方移轉準備金(공장 및 법인 본사) : 대도시지역의 공장시설가액의 1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4년기치후 이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나머지는 즉시 익금산입하며 4년간의 이자상당액을 法人稅에 가산 납부한다. 법인본사에 대해서도 지방이전을 위한

준비금으로 社屋價額의 10%를 설정하여 같은 요령으로 처분할 수 있다.

- (4) 地方移轉을 위한 工場 또는 法人本社 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 등 免除 : 대도시에서 지방이전을 위하여 공장건물과 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法人稅, 特別附加稅 및 讓渡所得稅를 면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수도권지역에 위치하는 법인 본사나 주사무소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을 위한 사옥 및 대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 (5) 地方移轉事業(工場 및 本社)에 대한 投資稅額控除 등 : 지방이전한 공장이 이전후 사용하기위하여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3%(국산기자재의 경우 10%)를 稅額控除하거나 해당자산 취득가액의 30%(국산의 경우 50%)를 일시상각할 수 있다. 首都圈外 지역으로 법인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의 취득가액중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의 10%를 稅額控除하고 건물전체에 대해서 50% 割増償却한다.
- (6) 首都圈外 지역으로 移轉하는 中小企業의 租稅特例 : 中小企業이 수도권 내에서 수도권 밖으로 완전히(본사 등 포함)이전한 경우 이전일로 부터 3년간 50%, 그후 2년간은 30%의 법인세(소득세)를 면제한다.
- (7) 首都圈外 지역에 所在하는 企業의 投資準備金 : 수도권외지역에 생산시설을 갖고(법인의 경우 본사포함) 있는 中小企業이 아닌 제조업 및 광업(내국인)은 사업용자산의 10%에 해당하는 投資準備金을 설정하여 中小企業 投資準備金에 준하여 처분할 수 있다.
- (8) 首都圈內 投資에 대한 租稅減免 排除 :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내에서 신규창업하거나 기존기업에 대하여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여러가지 조세감면 혜택의 적용이 배제된다.<sup>2)</sup>

2) 자세한 것은 조세감면 규제법 제 43조의 6 참조.



## 7. 産業合理化에 대한 租稅特例

- (1) 中小企業間 統合 : 합병장려업종 中小企業간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면제한다.
- (2) 法人轉換에 따른 租稅特例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水産業 등의 法人轉換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한다.
- (3) 中小企業 事業轉換에 따른 讓渡所得稅 등 免除 : 제조업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의 사업전환을 위한 자산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法人稅 및 特別附加稅를 면제한다.
- (4) 事業轉換 中小企業에 대한 法人稅 등 減免 : 中小企業의 經營安定 및 構造調整 促進에 관한 特例措置法에 따라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 및 광업에 대해서는 전환일로부터 3년간 100%(부분전환의 경우는 50%), 그후 2년간은 50%(부분전환의 경우는 30%)의 법인세나 소득세를 면제한다.
- (5) 産業合理化에 따른 資産讓受渡의 租稅特例 : 산업합리화 대상 지정기업 또는 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정기업 또는 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특정한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한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sup>3)</sup>
- (6) 産業合理化에 따른 産業轉換 또는 主力業種施設에 대한 租稅特例 :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사업을 전환하거나 주력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상기한 특정한 방법으로 양도한 자산의 대금을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6% (국산의 경우 10%)投資稅額控除 또는 100% 割増償却 중에서 선택하여

---

3) 특정한 방법이란 다른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이 경우 양수자는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성립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양도 또는 위탁양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직용받을 수 있다.

- (7) 産業合理化 등에 따른 金融機關에 대한 租稅特例: 금융기관이 산업합리화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의 양도(取得日로부터 2년 이내)로부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 Ⅲ. 租稅誘因政策의 一般的 問題點과 改編의 基本方向

#### 1. 租稅誘因 政策目標의 散漫性

우리나라 租稅誘因政策이 갖고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중의 한가지는 租稅誘因政策의 목표가 지나치게 다양하고 산만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租稅誘因政策效果에 대한 과실에서 연유된 것일 수도 있고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租稅誘因政策을 ‘특혜’로 오해한 결과일 수도 있다. 여하튼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租稅支援’이 추가되었으며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도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도입되었던 지원제도들은 없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앞 절에 요약되어있는 지원대상과 그 내용만 보더라도 대단히 복잡함을 알 수 있다.

다행히 ‘重要産業’에 대한 지원은 완전히 정비되어 세제를 가지고 너무 특정한 목표(target)에 지원을 집중시킨다는 비난이나 또 이에 따른 실제적인 부작용은 해소 되었으나 아직도 중요한 經濟社會政策目標을 무엇이나 租稅政策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자세가 역력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잉 정책목표의 달성을 정말로 의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색을 맞추고 명분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목표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여러가지 목표와 수단을 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租稅誘因政策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정된 經濟的 資源을 消費하는 것이다. 우선 직접적으로 세수의 손실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이 공적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특정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좀 더 經濟 理論的인 관점에서 보면 租稅誘因의 도입에 따르는 資源

配分の歪曲과 이에 의한 死重的 損失을 租稅誘因의 社會的 費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효율성의 기준을 엄밀하게 적용한 정책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사중적 손실 보다는 세수의 손실이 더 알기 쉬우므로 예컨대 일정한 세수감소허용액(또는 租稅支出 가능액)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생각해야 하며 여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간에 優先順位를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 2. 全體的인 調和와 調整의 未洽

목표가 산만하면 대체로 수단이나 정책체계가 조화를 잃고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租稅誘因政策에 대해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불만이 이른바 綜合限度制에 관한 것이다. 綜合限度制를 폐지해 달라는 것이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重複適用을 排除하는 규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감면분에 대해서는 방위세를 할증율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반복해서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租稅誘因을 세부담을 감면시켜주는 특혜로 오해한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실효성도 없는 수많은 지원제도가 다분히 우발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그 결과로 제도전체적인 조화나 조정은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든 유인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태의 변화, 예컨대 투자의 증가나 기업의 지방이전 등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특혜를 얼마나 나누어 주었느냐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므로 綜合限度를 정하고 많이 깎아준 기업은 다른데서 더 거둬서 형평을 맞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

重複適用排除規程도 조정의 미흡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각각의 제도가 의도했던 목표들은 결과적으로 지원제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지는 사태가 야기되는 것이다. 각 수단이 의도하고 있는 목표와 관련된 相對價格이나 限界費用 또는 限界收入 등이 誘因政策의 결과로

의도한 방향으로 민감하게 움직여 주어야 하는데 綜合限度制 등 때문에 한계가 적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기업의 세후순이익만을 늘려주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 3. 方法上の問題

誘因政策의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좀더 구체적인 문제들이 제기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유인수단들은 投資稅額控除制度, 特別償却制度(割増償却 및 초년도 상각), 特定期間 租稅減免(所得控除 포함), 각종 준비금 제도 등이다. 그러나 이들중에서 投資稅額控除나 특정기간 조세감면은 직접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줄여가는 경향을 보였고 特別償却과 準備金등이 주요 유인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직접지원이라든가 또는 간접지원이라는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결국은 특정한 기업의 행동과 관련하여 조세부담의 현재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 誘因政策의 주요 수단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위의 여러가지 방법은 결국 모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의미있는 것은 정부가 자원배분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간섭하느냐 아니면 相對價格에 영향을 주어 시장메카니즘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한 구분이며 이런 의미에서 직접간섭을 줄이고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책수단을 바꾸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위에 예시된 여러가지 조세면의 誘因政策手段들은 이런 구분으로 보면 모두가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간접적인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이들 政策手段들 간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은 주로 實用性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 우선 제도가 단순해서 제도의 利用者나 제도의 管理者(세무행정당국)가 모두 쉽게 이해하고 최소의 行政費用으로 이용 또는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의 효과가 복잡한 메카니즘을 거쳐서 나타나고 그 효과의 크기가 쉽게 추정되지 않으면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유인제도의 의도하는 반응을 나타내기가 어려워진다. 제도를 까다롭게 만들어 이용율을 낮추면 그 만큼 稅收減少가 줄어들어 애국하는 것 같지만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특정한 행위를 장려

하는 것이 사회전체로 더 유익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므로 제도의 이용도가 낮은 것은 비효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관리하는 당국 모두에게 사무 또는 행정과 관련된 비용의 증가를 가져다 준다.

利用性 면에서 이와같은 나쁜 특성을 갖고있는 제도가 바로 각종 준비금제도이다. 준비금제도는 그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관리해야 하므로 관리의 비용이 많이 든다. 회계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어서 실제로 사무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도의 효과가 直接可視的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고위책임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또하나의 문제는 그 誘因效果가 市場의 利率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이다. 이제도의 또 다른 약점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서 그 실효가 작다는 점이다. 실제의 혜택은 준비금에 해당하는 세금의 납부를 지연해 주는데 따르는 이자상당액일 뿐이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이제도의 문제점을 추가하면, 특히 각종 投資準備金에 있어서, 준비금의 積立限度가 실제투자수준에 비해서 충분히 크지 못할 때는 투자확대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기업의 平均費用만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다.<sup>4)</sup> 특히 투자규모가 대단히 커질 수 있는 技術開發 投資準備金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特別償却制度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減價償却制度의 개편논의와 관련하여 特別減價償却制度의 問題點은 이미 충분히 논의한 바 있다.

#### 4. 改編의 基本方向

이상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零點(zero-base)에서부터 誘因制度의 設計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모든 租稅誘因을 백지화하고 租稅誘因政策 目標의 優先順位를 새로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들이 조화조정되어 수단들 간에 일관성을 갖도록 새롭게 디자인하는

---

4) 李元暎(1984) 참조.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상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을 하는데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와같은 정신과 각오로 租稅支援體制를 수술할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대내 및 대외적인 경제여건의 대폭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 減價償却制度의 대폭적인 개혁도 이러한 시각에서 제안되었다.

첫째로 誘因政策의 目標와 優先順位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이미 1980년대 중에 상당한 조정이 이루어진 셈이지만 아직도 산만하고 또 더 많은 목표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産業部門의 空洞化를 방지하면서 技術開發을 촉진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중에서 전자의 목표는 減價償却制度의 加速化를 통한 機械設備投資에 대한 일반적 지원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의 誘因政策手段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상당기간 고용의 지속적 확대가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中小企業의 지원에도 높은 優先順位가 부여되어야 한다. 특히 中小企業 創業支援은 인노베이션의 촉진, 雇傭機會의 창출, 그리고 자본의 해외도피나 불건전한 투기자금화 방지 등에 직접 간접으로 유효하므로 적극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地域間 均衡開發을 위한 정책목표는 그 자체로서는 중요성이 높은 것이지만 기업세계상의 誘因政策手段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둘째로 수단의 정비가 필요하다. 앞에서 논의한대로 각종준비금제도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稅額控除 등 단순한 유인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시에 제도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정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特定期間租稅減免 등은 그 적용시점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업이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하는 대신 지원기간을 단축해 줄 수 있다. 대체로 창업초기 또는 투자초기에는 이익이 작든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런기간을 조세감면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효는 없으면서 지원의 규모는 큰 것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 또 투자의 회입기간에 따라

세제혜택이 달라지게 되어 회임기간이 짧은 투자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왜곡시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세제로 租稅誘因制度 전체로 충분한 조정과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 綜合限度制나 重複適用排除 등이 불필요하게 하든지 그런 제도가 존속된다해도 해당되는 경우가 극소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같은 誘因制度를 巨視的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소위 租稅支出豫算制度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sup>5)</sup>

#### IV. 主要 個別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 技術 및 人力開發

우리 경제의 構造調整과 成長潛在力의 축적 그리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의 회복을 위해서 기술개발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종업원복지와 나아가서 국민의 복지도 결국은 기술의 향상을 통한 生産性向上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기술개발이 정부의 지원이 있을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기업의 환경이 열악하여 생존을 위해서는 기술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더 효과적으로 인노베이션이 일어난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의 개발을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기술개발과 관련된 限界費用이나 限界利潤에만 영향을 주는 효율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의 상황이 당장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生産技術의 開發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술개발을 위한 재정의 직접투자나 정부에 의한 직접개발 등 보다는 租稅誘因을 통한 限界의 方法으로 기업의 技術開發活動을 자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기술이나 인력개발 정책은 크게 두가지

---

5)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차명권·최광(1988) 참조.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基礎科學技術이나 이에 관련된 인력은 公共財(public good)的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公共部門에 의한 생산공급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서 정부연구소나 정부의 전폭적지원을 받는 대학 등에 주로 맡겨져야 한다. 한편 산업에 보다 가까운 기술(生産技術)은 공공재는 아니지만 外部經濟效果(external economy)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限界的 支援이 合理化 될 수 있으며 租稅誘因政策은 이런 경우에 적절한 政策手段이 되는 것이다.

稅制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방법에도 몇 가지가 있다. 첫째로 개발단계에서 投資資金의 限界費用을 낮추어 줌으로써 개발투자의 규모를 크게하는 방법이다. 둘째로 技術開發의 稅後期待所得을 높여 주거나 危險負擔을 낮추어 주는 방법이다. 이것 역시 기술개발의 투자수준을 높이는 효과로 나타난다. 세째로 개발된 기술을 실제로 産業化하는 단계에서 危險負擔을 줄여주거나 초기의 여러가지 애로를 줄여주고 또는 세후소득을 높여주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들 중 우리나라의 技術 및 人力開發 政策은 주로 첫번째의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投資準備金制度和 開發費 稅額控除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한편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두번째 방법에 해당되고 新技術事業化에 대한 지원, 冒險企業 및 冒險資本 등에 대한 지원과 나아가서 中小企業에 대한 일반적 지원까지 세번째의 방법에 의한 技術開發促進政策으로 생각할 수 있다.

技術投資 또는 開發費支出 등을 크게 하려는 노력은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자칫하면 量的인 또는 外形的인 성과에만 지나치게 연연하게 할 소지가 크다. 이러한 목표가 가장 기초적인 것이므로 이의 추구를 막아야 할 필요는 없겠으나 실제로 기술개발의 성과가 나타나게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投資準備金制度는 앞서도 그 일반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投資準備金制度가 목적하는 투자의 확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는 이를 投資稅額控除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개발비 지출확대를 위한 誘因에 있어서도 지출액 보다는 그 증가분(예컨대 과거 3년간 평균에 대비한 증가분)에 현재보다 다소 높은 控除率을 적용하게 하고 공제할 세액이 없을 때에는 이를 부기한 이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人力開發은 기업에 의한 기술계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립을 허용한다거나 社會政策的 目的의 職業訓練이나 再訓練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하는 일이 인력개발비에 대한 한계적 지원보다 더 효과적이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 2. 中小企業 및 創業

中小企業의 지원은 흔히 주장되고 있는 것처럼 中小企業이 弱者이기 때문에 또는 中小企業者가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中小企業의 지원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시각에서 그 합리성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이다. 산업조직적인 관점에서 中小企業比重의 증대는 市場組織을 보다 경쟁적인 것으로 만들고 따라서 전반적인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또 中小企業은 일반적으로 고용흡수력이 높기 때문에 中小企業의 육성은 雇傭機會를 확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中小企業의 지원, 특히 創業中小企業이나 新技術을 事業化하려는 中小企業 등의 지원은 인노베이션을 가장 구체적으로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資本의 退藏, 海外逃避, 投機 등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이와같은 창업의 활성화를 생각할 수도 있다. 특히 冒險資本會社나 기타 유사한 금융기관을 통한 高리스크 高收益金融資産의 공급을 통해 창업기업 등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길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도 投資準備金制度를 投資稅額控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創業中小企業 등에 대한 특정기간 조세감면(tax holidays)은 기간을 다소 단축하더라도 감면기간의 선택을 기업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一般償却이 加速化되면 特別償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中小企業의 創業이나 新技術의 事業化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들이 있는데 이중 투융자 손실 준비금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험자본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은 중요하므로 세제가 일종의 保險機能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단한 한가지 대안으로 이런 금융기관에 한하여 투융자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의 無期限 移越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

### 3. 輸出 및 海外投資

우선 수출지원을 생각해 본다. 당장의 여건을 보면 輸出의 促進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제상의 두가지 준비금제도는 별 실효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6)</sup> 별 실효가 없는데도 이런 제도를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무역마찰의 가능성만 높이고 있다. 國際競爭力의 提高는 기술개발의 지원과 生産性向上등을 통한 원천적인데서 이루어져야 한다. 減價償却制度의 加速化도 제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國際收支均衡은 換率政策 등 巨視經濟政策의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운용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一般減價償却制度의 加速化와 함께 수출산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외국항행 사업에 대한 特別償却 등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경제상황때문에 당분간 세제상에서 輸出을 支援해 줄 필요가 있다면 전체의 수출산업의 기계설비 자산에 投資稅額控除나 추가적인 初年度 償却을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차피 수출산업의 기계설비에 혜택을 주면 주로 제조업과 광업, 수산업 등이 혜택을 받을 것이므로 굳이 이런 업종들을 세법에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다.

海外投資損失準備金이나 海外事業損失準備金 등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준비금제도가 갖는 일반적인 문제도 있고 또 國際收支의 일시적인 대폭 黑字때문에 통화관리의 측면에서 해외투자를 장려해야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 지속적으로 나타나리라고 보기는

---

6) 郭泰元(1986) 참조.

어려우며 또 우리의 국내경제여건이 아직은 資本蓄積이 일반적으로 부족한 형편에 있어서 일부러 해외투자를 촉진해야할 필요는 없는 국면이라고 판단된다.

#### 4. 地域間 均衡開發

首都圈 및 大都市 集中과 地域間 不均衡開發의 問題는 대단히 중요한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조세감면정책에서도 이러한 우선순위가 반영되어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중요한 문제점중 하나는 대부분의 제도가 首都圈이나 大都市內에 소재하는 공장이나 본사건물 등에 대해서 대부분 ‘支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大都市內에 소재하는 공장 등을 ‘지원’해야 할 것인지 ‘차별’해야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관적 인 기준은 혹시 세울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한 주관적 기준이 조세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정책의 유효성 면에서 그리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 정책의 유효성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大都市 등에서 지방 등으로 이전하는 행위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충분치 않다. 또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은 ‘移轉’하는 행위자체가 아니고 지방 등에 ‘所在’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 인센티브를 주기보다는 소재하는 위치에 따라 차별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 공평하다. 이전에만 혜택을 주면 원래 지방 등에 소재하던 기업이나 지방 등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불리해 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大都市나 首都圈地域에 所在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重課稅되고 지방 등에 所在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輕課稅되도록 인센티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7)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규정만이 지원이 아닌 誘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적극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며 또한 조세감면대상업종만 수도권투자를 기피하게 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地方移轉과 관련한 準備金制度, 讓渡差益 課稅免除, 地方移轉事業의 投資稅額控除나 特別償却, 首都圈 밖으로 이전하는 中小企業의 租稅特例 등은 정리하는 대신 地方創業 및 地方所在企業 등에 대한 支援을 強化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首都圈이나 大都市에 소재하는 기업 등에게는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중과가 어렵다면 공해규제의 강화 및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교통관련 규제나 부담금제도의 활용, 재산관련과세의 현실화 등으로 大都市나 首都圈地域에 소재하는데 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特權'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게 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5. 産業合理化

현행의 産業合理化 관련 租稅政策의 주된 내용은 대부분 不動產의 거래 또는 이전과 관련된 조세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기업의 인수, 합병, 또는 은행부채의 정리 등을 원활하게 해 준다는 것이다.

부동산이라는 生産要素의 移動性(mobility)을 높여준다는 것은 資源配分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원배분의 이동성을 막는 요인이 세제에 의한 것이었다면 특정한 경우에만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稅制의 公平性과 一貫性에 損傷을 주게되고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이 '特惠'로 인식되어 政府의 倫理性이나 信賴性에도 금이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企業의 不實化가 완전히 예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장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企業을 不實하게 한 應分の 責任은 당사자들에게 돌려지는 관행과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정부는 社會政府的인 차원에서 善意의 被害者를 구제해 주기위한 최소한의 資源만을 사용한다는 원칙이 세워지고 제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第7章 企業의 海外進出과 그 課稅合理化

### I. 國際化의 進展과 課稅整備의 必要性

① 우리나라의 經濟는 1986년에 국제수지가 흑자기조로 진입하고 전면적인 개방화가 추진되면서 국내기업의 海外進出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산권과의 交易의 문을 연 北方政策의 진전에 따라 앞으로 中共·蘇聯·東歐圈으로의 우리 企業進出은 더욱 活發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海外進出 推移를 보면 <表19>와 같다.

<表 19> 年度別 海外投資 推移

(單位：千弗)

| 年度     | 年 中 投 資 |         | 年 度 末 投 資 |           |       |
|--------|---------|---------|-----------|-----------|-------|
|        | 件數      | 純 投 資   | 件數        | 投資殘額      | 增加比   |
| 1985   | 11      | 31,492  | 443       | 476,188   | 100   |
| 86     | 32      | 157,153 | 475       | 633,341   | 133.0 |
| 87     | 59      | 332,715 | 534       | 966,056   | 202.8 |
| 88     | 134     | 153,106 | 668       | 1,119,162 | 235.0 |
| 89     | 231     | 324,982 | 899       | 1,444,144 | 303.2 |
| 90.1~2 | 52      | 104,776 | 951       | 1,548,920 | —     |

1) 年數는 現地法人單位 基準으로서 新設만 포함

2) 純投資=總投資-清算等(청산분+減資+貸付金상환)

3) 投資殘額은 당해기말까지의 純投資累計액

資料：「財政金融總計」, 대한민국 재무부, 1990. 3.

海外投資의 地域別 現況은 <表20>과 같다. 現在까지는 東南亞과 北美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表 20〉

地域別 投資現況 (單位：千弗)

1990. 2 현재

殘存投資

| 구 분 | 計         | 東南亞     | 中 東     | 北 美     |
|-----|-----------|---------|---------|---------|
| 건 수 | 951       | 335     | 34      | 325     |
| 금 액 | 1,548,920 | 450,908 | 109,992 | 666,964 |
| 구성비 | 100%      | 29.1    | 7.1     | 43.1    |
| 구 분 | 中南美       | 유 럽     | 아프리카    | 大洋洲     |
| 건 수 | 81        | 82      | 24      | 50      |
| 금 액 | 89,826    | 85,512  | 37,389  | 111,329 |
| 구성비 | 5.8       | 5.3     | 2.4     | 7.2     |

資料：「財政金融總計」, 재부부, 1990.3.

② 우리나라의 큰 企業들은 그 규모나 技術등 축적정도에 있어서 海外로 進出할 能力이 增大되어 가고 있다. 수출입의존도가 70%수준에 이르고 있는 우리경제가 各國의 保護貿易障壁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現地生産・ 재3국을 통한 우회진출등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로서는 海外資源의 長期的 安定確保를 위한 海外投資의 필요성이 점점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北方政策의 일환으로 우리 企業의 공산권 국가로의 進出도 가까운 將來에 활발해 질것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조세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종래의 資本輸入國의 立場에 편향된 稅制에서 資本輸出國의 立場을 함께 指向하는 稅制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海外進出企業에 대한 課稅合理化와 支援이라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資本輸出國의 觀點에 국한하여 그 課稅合理化方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관점의 검토범위도 租稅條約上の 諸問題와 國際的 租稅回避 防止問題는 論外로 하고 우리 現行 法人稅法에 기준을 두면서 國際的 二重課稅의 조정방법인 外國稅額의 直接控除法에 대한 改善・間接控除法의 導入問題만을 검토범위로 하고자 한다.

## II. 外國稅額의 直接控除制度 擴充

### 1. 現行規定의 內容과 그 評價

#### 가. 現行규정의 개요<sup>1)</sup>

①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國外源泉所得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外國法人稅額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 공제는 무조건의 전액공제가 아니고 法定限度額의 범위내에서만 그 공제가 허용된다. 그리고 공제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다음의 것을 말한다.(法稅24의3, 法稅令 78의 2 ①)

1) 초과이익세 및 법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稅의 附加稅額

3) 법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稅와 동일한 稅目으로서 소득 이외에 수입금액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공제한도액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法文은 一括限度控除方法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실시운영은 國別限度控除方法에 의하고 있다.<sup>2)</sup>

$$\text{控除限度額} = \text{算出稅額} \times \frac{\text{當該事業年度課稅標準에 算入된 國外源泉所得}}{\text{當該事業年度課稅標準}}$$

#### 나. 國際的 二重課稅調整의 3가지 方法

① 국제과세의 原則은 소득의 발생원천이 소재하는 나라에서만 과세권을 가진다고 하는 源泉地國課稅原則과 自國의 居住者가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所得發生의 원천이 어느나라에 소재하던 상관없이 居住地國이 과세권을 가진다고 하는 居住地國課稅原則이 있다. 특히 후자는 全世界所得課稅(Worldwide income taxation)를 지칭하는 것이다.

1) 우리나라는 國外納付法人稅額을 우리나라 本店法人의 과세소득 계산상 損金에 算入하는 方法을 선택할수 있도록 되어있다(租減28의 2).

2) 大判, 1987. 2.24, 85누651 참조

行政解釋인 法人稅法 基本通則 3-2-7도 같은 내용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大部分의 국가는 自國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소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하고, 非居住者(外國法人)에 대하여는 원천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제적 경제활동으로 창출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2개국 이상의 課稅權이 정합하면서 국제적 二重課稅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同一한 課稅權下에서의 二重課稅 문제를 다루는 배당소득에 대한 經濟的 二重課稅와 다른 관점에서의 二重課稅 調整問題이다.

② 국제적 이중과세는 조세의 公平性과 中立性을 저해하여 資源의 效率의 配分을 歪曲하므로 그 二重課稅가 조정되어야 하는 바 그 조정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外國所得免除方法(tax exemption method)이다. 이는 居住地國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課稅權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方法으로 국제적 二重課稅를 피하는 方法이다.

둘째 外國法人稅所得控除方法(tax deduction method)이다. 이는 거주지국이 국외원천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면서 국외법인세액을 과세소득 계산상 損金으로 인정하여 費用控除하는 方法이다.

셋째 外國稅額控除方法(tax credit method)이다. 이는 居住地國이 국외원천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서 自國의 法人稅를 과세하되 원천지국의 法人稅額을 거주지국의 법인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方法이다.

위의 3가지 方法에 의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효과를 비교분석하면<表21>과 같다.



〈表 21〉

3가지 方法의 國際的 二重課稅 調整效果 比較

| 計算要素         | 外國納付稅額控除<br>tax credit | 外國所得免除<br>tax exemption | 外國稅額所得控除<br>tax deduction |
|--------------|------------------------|-------------------------|---------------------------|
| ㉑ 國외원천소득     | 100                    | 100                     | 100                       |
| ㉒ 外國세율       | 40%                    | 40%                     | 40%                       |
| ㉓ 外國납부세액     | $40(a \times b)$       | $40(a \times b)$        | $40(a \times b)$          |
| ㉔ 세후국외원천소득   | $60(a - c)$            | $60(a - c)$             | $60(a - c)$               |
| ㉕ 거주지국세율     | 50%                    | 50%                     | 50%                       |
| ㉖ 거주지국세액     | $50(d \times e)$       | —                       | $30(d \times e)$          |
| ㉗ 外國납부세액공제   | $40(c)$                | —                       | —                         |
| ㉘ 거주지국납부세액   | $10(f - g)$            | —                       | $30(f)$                   |
| ㉙ 총납부세액      | $50(c + h)$            | $40(c)$                 | $70(c + h)$               |
| ㉚ 실효부담율(㉙÷㉔) | 50%                    | 40%                     | 70%                       |

資料：金完淳·鄭泰仁, “國際租稅分野” 「韓國稅制의 合理化 研究」(서울: 한국조세연구회, 1988. 7)에서 引用

위의 調整效果의 比較結果는 源泉地國의 法人稅率과 居住地國의 法人稅率이 위 事例와 反對인 경우는 사실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일응 위의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외국세액소득공제방법은 그 조정이 不充分하고 외국소득 면제방법은 그 조정폭이 지나치며(거주지국 세율이 원천지국의 그것보다 높기 때문임) 가장 公平한 것은 외국세액공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채택하고 있는 바 그것은 타당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 우리 稅額控除方法의 具體的 評價

첫째 通常控除法은 타당한가?

① 외국세액공제방법은 다시 完全稅額控除方法(full tax credit method)와 通常稅額控除方法(ordinary tax credit method)로 나누어지는 바 전자는 居住地國에서 國外法人稅額을 제한없이 全額控除하는 것이고 후자는 거주지국에서 국외법인세를 세액공제함에 있어서 국외소득에다 거주지국의 법인세 實效稅率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限度로 공제하는 方法이다. 우리나라는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通常稅額控除方法을 채택하고 있다.

② 完全控除法은 源泉地國의 法人稅率이 居住地國의 그것보다 높은 경우에 그 공제액이 국내의 법인세 부담수준에 비추어 過大해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국외원천소득이 居住地國 법인세 과세표준에 合算됨으로 인하여 증가시킨 稅額 이상을 공제해 주는 것은 合理性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完全控除法을 채택하는 경우 우리企業이 우리나라 법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進出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內國法人보다 그와 같이 조세 우대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통상공제법의 채택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國別限度方法은 타당한가?

① 통상세액공제법에서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一括限度計算方法(overall country limitation)과 國別限度計算法(per country limitation)으로 立法例가 나누어진다. 前者는 國外源泉所得이 발생한 원천지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모든 국외소득을 합쳐서 일괄하여 限度額을 계산하는 것인 바 이 方法은 원천지국의 세율이 나라마다 다른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平準化시키며 어느 한 원천지국에서 缺損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다른 원천지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상계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한도액을 계산하게 된다.

後者는 源泉地國마다 別途로 공제세액의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인 바 원천지국의 법인세율이 거주지국의 그것보다 높으면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이 발생하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실제로 납부한 국외납부법인세액이 限度額에 未達되면서 실지의 국외납부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즉 공제세액을 平準化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위 두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海外進出企業에 有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국외소득의 원천지국이 2개 이상인 경우 어떤 나라는 거주지국보다 높은 實效稅率로 과세되고 어떤 나라는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데 모든 원천지국에서 所得이 발생하고 있으면 일괄한도계산방법이 유리하다. 그러나 1개국의 원천지국에서 缺損이 발생하고 다른 원천지국에서 所得이 발생했는데 양자

를 相計한 結果가 零이되는 경우등에는 限額算方法이 不利할 수도 있다. 이를 事例로 計算해 보면 <表22, 23>과 같다.

〈表 22〉 限額 計算方法上의 差異와 調整效果 (I)

| 구 분              |    | 원천지국<br>별 소득 | 세율% | 외국납부<br>세액 | 공 제 전<br>내국세액 | 공제세액  | 추가납부세액 | 과부족             |
|------------------|----|--------------|-----|------------|---------------|-------|--------|-----------------|
| 國<br>別<br>限<br>度 | A  | 1,000        | 50  | 500        | 350           | 350   | 0      | 초과150           |
|                  | B  | 2,000        | 30  | 600        | 700           | 600   | 100    | —               |
|                  | C  | 1,000        | 30  | 300        | 350           | 300   | 50     | 미달50            |
|                  | 국내 | 2,000        | 35  | —          | 700           | —     | 700    | —               |
|                  | 계  | 6,000        |     | 1,400      | 2,100         | 1,250 | 850    | 미달 50<br>초과 150 |
| 一<br>括<br>限<br>度 | 해외 | 4,000        | —   | 1,400      | 1,400         | 1,400 | 0      | —               |
|                  | 국내 | 2,000        | 35  | —          | 700           | —     | 700    | —               |
|                  | 계  | 6,000        |     | 1,400      | 2,100         | 1,400 | 700    | —               |

註： 1) A·C 국 소득의 국별한도액 계산

- $2,100 \times 1,000 / 6,000 = 350$ . 단 C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300이므로 이를 공제한
- $2,100 \times 2,000 / 6,000 = 700$

2) 限額한도액 계산

- $2,100 \times 4,000 / 6,000 = 1,400$

3) 實効負擔計算

- $(1,400 + 850) \div 6,000 = 37.5 \%$
- $(1,400 + 700) \div 6,000 = 35.0 \%$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원천지국의 세율이 일정하지 아니하며 우리나라 보다 높은 나라·낮은 나라가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所得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별한도액 計算方法이 不利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方法의 缺點은 그 計算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다.

셋째 限額 보다 국외납부세액이 많아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移越控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外國法人稅額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만 공제하도록 하고, 그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表 23〉

限度額 計算方法上の 差異와 調整效果 (Ⅱ)

| 구 분              |    | 원천지국<br>별 소득    | 세율% | 외국납부<br>세 액 | 공 제 전<br>내국세액 | 공제세액 | 추가납부세액 | 과부족   |
|------------------|----|-----------------|-----|-------------|---------------|------|--------|-------|
| 國<br>別<br>限<br>度 | A  | 1,000           | 50  | 500         |               | 175  |        | 초과325 |
|                  | B  | △2,000          | 40  | —           |               |      |        |       |
|                  | C  | 1,000           | 30  | 300         | 700           | 175  | 350    | 초과125 |
|                  | 국내 | 2,000           | 35  | —           |               |      |        |       |
|                  | 계  | △2,000<br>4,000 |     | 800         | 700           | 350  | 350    | 450   |
| 一<br>括<br>限<br>度 | 해외 | △2,000<br>4,000 | —   | 800         |               |      |        | 초과    |
|                  | 국내 | 2,000           | 35  | —           | 700           | 0    | 700    | 800   |
|                  | 계  | △2,000<br>2,000 |     | 800         | 700           | 0    | 700    | 800   |

註： 1) 원천지국 A의 국별한도액 계산

$$\bullet 1,000 - (\triangle 2,000 \times 1,000 / 2,000) = 500$$

$$\bullet 700 \times 500 / 2,000 = 175$$

B국의 공제한도액도 같음

2) 일괄한도액 계산

$$\bullet 700 \times \frac{1,000 + 1,000 - 2,000}{2,000} = 700 \times 0 = 0$$

$$3) \text{實効負擔} \cdot (800 + 350) \div 2,000 = 57.5\% \cdot (800 + 700) \div 2,000 = 75\%$$

그런데 國外稅額의 발생시기와 국내에서의 國外所得의 과세시 기간의 時間差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국외세액을 납부한 사업연도에 국내소득이 없거나 반대로 국외소득은 있으나 납부한 외국세액이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當該事業年度の 공제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당기의 외국세액만을 공제하도록 하고, 그 移越・控除를 허용하지 않는것은 국제적 이중과세의 배제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리고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本質이 租稅減免이 아닐뿐만 아니라 계속기업의 觀念에 비추어 보아도 그 이월공제를 不許하는 것은 不合理한 것이다.

## 2. 改善方案

첫째 現行 國別限度計算方法을 一括限度計算方法으로 轉換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源泉地國別로 일일이 限度額을 계산하는 計算節次를 간소화할

수 있다. 日本은 당초 1953에 외국세액공제를 창설할 당시는 국별한도액계산방법을 채택했었다. 1962년에는 이를 일괄한도액계산방법으로 바꾸면서도 어느 한 源泉地國에서 缺損이 발생하면 그것을 각 원천지국의 국외소득에 배분·차감하는 국별한도액계산방법을 남겨 두었다. 다시 1963年 改正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의 국외소득만으로 일괄하여 한도액을 계산하고, 적자가 발생한 원천지국의 缺損을 한도액계산에서 除外시키기에 이른 것이다.<sup>3)</sup>

美國도 현재 全世界一括限度額計算方法(over-all method)를 채택하고 있다.<sup>4)</sup>

또한 一括限度額計算方法이 大部分의 경우 企業의 海外進出에 有利한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控除限度超過의 外國法人稅額의 移越控除와 外國法人稅額이 공제한도액에 未達한 경우 그 미달금액상당을 다음 年度의 공제한도액 계산액에다 加算하는 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먼저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外國법인세액의 이월공제를 예로 들면 어느 연도의 공제한도액이 100인데 外國법인세액이 150 이라고 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外國세액 50은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서 공제받는 것이다. 다음 공제한도미달금액 상당액을 다음연도에 이월시켜서 공제한도액에 가산한다고 함은 어떤 연도의 공제한도액이 100이고 外國법인 세액이 70이어서 공제한도미달액이 30인데 다음연도의 공제한도액이 120으로 계산되었으면 전년도의 공제한도미달액 30을 이에 가산하여 공제한도액을 150으로 늘이는 것이다.

이 두가지 금액의 이월은 5年程度는 되어야 할 것이다.

日本은 현재 공제한도액을 초과한 外國법인세액의 이월공제와 공제한도액의

3) 渡邊淑夫, 「外國稅額控除: 國際的 二重課稅排除制度 研究」.

(東京: 同文館, 1980), pp. 22~25 참조

4) Internal Revenue Code § 904(a) 참조

美國에서는 外國納付法人稅額을 課稅所得計算上: 損金算入하던지 아니면 稅額控除를 받던지 그 中 한가지를 선택할수있다.

미달금액 이월에 의한 공제한도액가산은 모두 5年으로 규정하고 있다.<sup>5)</sup>

美國은 공제한도액 초과외 外國稅額은 2年遡及控除(carry-back)와 5年の 移越控除(carry-over)를 인정하고 있다.<sup>6)</sup>그러나 공제한도액의 미달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서 공제한도액에 가산하는 제도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美·日의 이월공제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外國納付稅額控除가 국별한도액 계산방법을 취하면서 移越控除마저 排斥하고 있는 것이 先進稅制에 비하여 落後되었고 海外進出企業의 국제경쟁력에는 沮害的이라고 한은 再음을 要치 않는다 할 것이다.

### Ⅲ. 外國稅額의 間接控除法 導入

#### 1. 序言

##### 가. 概念

국내의 기업이 海外에 진출하여 事業活動을 하는 形態에는 居住地國의 本店法人이 源泉地國에다 支店·出張所등의 固定事業場(恒久的 施設: permanent establishment)을 設置하고 이를 통하여 직접 사업을 경영하는 方法과 원천지국에다 現地法人인 子會社를 設立하고 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方法이 있을 수 있다. 固定事業場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稼得한 利潤은 직접 居住地國의 本店의 所得이 된다. 전절에서 검토한 外國納付稅額控除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國際的 二重課稅 調整裝置이므로 이를 直接控除法이라고 한다. 그런데 現地法人인 子會社가 원천지국에서 가득한 이윤의 경우에는 원천지국의 子會社가 그의 株主로 되어있는 居住地國의 母會社에게 配當을 할 때 비로소 거주지국의 母會社가 그 所得을 實現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거주지국의 母會社가 받는 배당소득은 원천지국의 子會社에서 발생한 所得 중 外國法人稅 負擔후의 금액이 배당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固定事業場

5) 日本 法人稅法 第69條 第2項 및 第3項 참조

6) IRC § 904(c) 참조

을 설치하여 직접 사업활동을 해서 번 稅後所得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이러한 現地子會社의 支給配當에 대하여 居住地國의 母會社에게 課稅함에 있어서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企業이 어떤 形態로 海外事業을 경영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稅負擔의 不公平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先進稅制에서는 國外子會社가 원천지국에서 부담한 外國法人稅를 거주지국의 母會社에 대한 課稅에서 稅額控除를 하고 있다. 즉 원천지국의 子會社로 부터 배당을 받은 居住地國의 母會社는, 그 배당의 기초가 된 子會社의 所得에 과세된 外國法人稅를 스스로 직접 납부한 것으로 看做하여, 이를 外國法人稅額으로 공제할 수 있는 方法을 강구했다. 이것이 외국세액의 間接控除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세액에 대하여 直接控除만을 인정하고, 間接控除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 나. 必要性

① 먼저 이 間接控除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固定事業場 設置方法으로 海外進出하는 때와 現地子會社 設立方法으로 해외진출하는 때의 실질적인 稅負擔의 差異를 比較·分析하고자 한다. <表24>의 計算例에서는 원천지국의 법인세율을 30%, 居住地國(本店 또는 母會社의 所在地國)의 법인세율은 50%, 그리고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의 원천징수세율은 10%로 가정한다. 現地子會社는 稅後所得을 전액 배당하며 주주는 母會社 1人으로 가정한다.

〈表 24〉

海外進出形態에 따른 實質稅負擔 比較

| 區 分            | 源 泉 地 國 所 在 |          |           |
|----------------|-------------|----------|-----------|
|                | 固定事業場       | 子 會 社    |           |
|                |             | 間接控除(無)  | 間接控除(有)   |
| 稅前國外所得         | 100         | 100      | 100       |
| 外國法人稅 ④        | 30          | 30       | 30        |
| 稅後國外所得         | 70          | 70       | 70        |
| 利益送金           | 70          | 配當 70    | 配當 70     |
| 國外源泉徵收 ⑤       | 0           | 7        | 7         |
| 稅後受入配當(居住地國) ⑥ | 70          | 63       | 63        |
| 居住地國 課稅所得      | ④+⑤ 100     | ④+⑤ 70   | ④+⑤+⑥ 100 |
| 算出稅額           | 50          | 35       | 50        |
| 外國納付稅額控除       | ④ △30       | ⑤ △7     | ④+⑤ △37   |
| 納付稅額 ⑦         | 20          | 28       | 13        |
| 實質負擔           | ④+⑦ 50      | ④+⑤+⑦ 65 | ④+⑤+⑦ 50  |

資料：渡邊淑夫,「前場書」P. 132 에서 引用

②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접공제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면 支店等 固定事業場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現地에다 子會社를 設立하여 진출하는 방법 보다 稅負擔上 有利하다. 이는 企業의 經營形態 選擇上 企業稅制가 그 의사결정을 歪曲한다. 더구나 中共·東歐圈·蘇聯·EC지역등으로 우리기업이 진출함에 있어서 보호무역장벽을 넘고 現地の 사람들과 合作投資를 하기 위해서는 現地子會社의 設立이 불가피한 현실에 놓여 있다.

말하자면 資本輸出國의 立場으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래의 資本輸入國의 立場에서 租稅를 보던 視角을 이러한 우리의 經濟現實에 맞추어 轉換시켜야 하는 바 그 代表的인 것으로서 外國法人稅額의 間接控除의 導入이라고 할 수 있다.

## 2. 導入方案

외국납부세액의 間接控除法은 위에서 본 必要性에서와 같이 企業의 海外進出의 經營形態에 대한 意思決定에 稅制가 中立性을 갖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의 當面된 經濟現實에 비추어 보아서도 그 導入은 서둘러야 한다.

도입한다고 할 때 그 制度의 設計는 어떻게 할 것인가? 資本輸出의 經驗이 풍부한 先進稅制에서 그 모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국제조세제도의 하나인 이 制度는 국제적인 세제조화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도 그런 것이다.

制度構想의 參考에 공하기 위하여 日本의 立法例를 소개하고자 한다.<sup>7)</sup> 日本은 外國세액의 間接控除制度를 1962년에 導入했다.

그 法文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日,法稅69 ④). 즉 內國法人이 外國子會社로부터 받은 利益의 配當 또는 剩餘金의 分配額(이하 「배당등」이라고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外國子會社에 대하여 과세된 外國法人稅額 중 그 배당등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施行令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金額은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內國法人이 納付한 外國法人稅額으로 보아 外國稅額控除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가. 外國子會社의 범위

간접공제대상이 되는 外國子會社의 要件은 다음과 같다.

① 外國子會社로부터 배당을 받은 母會社(內國法人)은 그 배당지급 확정일 이전 6월이상 계속하여 그 外國子會社의 發行株式 總數 또는 出資金額의 25% 이상의 株式 또는 出資를 소유하거나 決議權 있는 株式의 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할 것<sup>8)</sup>

② 그 外國子會社가 스스로 事業活動을 할 目的이 없는 外國法人 또는 주로 조세부담의 輕減을 목적으로 外國에 本店등을 둔 外國法人이 아닐 것.

이 요건은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의 法人이 輕課稅國(tax haven)에다 持株會社(holding company)나 유령회사(paper company)인 子會社를 설립하고 거기 에다 利益을 留保시켜 두는 方法으로 出資法人인 母會社의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까지 間接控除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7) 渡邊淑夫, 前掲書, pp. 133~153 참조

8) 이 株式所有比率는 美國의 경우는 10%이다(IRC § 902(a)).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要件 ②에 해당하는 法人에 대하여는 그러한 外國子會社의 실지 배당은 물론 留保所得까지도 內國法人인 母會社의 課稅所得에 合算하여 과세하도록 하면서(措法 66의6) 그렇게 合算된 경우에는 외국세액공제를 하도록 하고 있다(措法 66의7).

나. 外國子會社로 부터 받는 配當의 범위

외국세액의 間接控除는 위에서 본 要件을 充足한 外國子會社로 부터 利益配當 또는 잉여금의 分配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그 배당에는 優先配當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理由는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이란 社債利子와 같은 것으로서 외국법인세의 多寡에 의하여 그 배당금액이 左右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보아 주주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세를 부담한 것이라고 볼 상관관계가 희박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간접공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 간접공제 대상의 外國法人稅

이는 직접공제에서 인정하고 있는 외국법인세의 범위와 同一하다.

그런데 外國子會社의 所在地國의 法令에 의하여 外國子會社의 소득 중 支給配當에 充當된 部分에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外國子會社의 所在地國의 法令이 支給配當을 과세소득계산상 損金算入을 인정하는 경우등)에는 그 所在地國의 外國法人稅(留保분에 과세된 세액)은 간접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日·法稅令 147 ② II).

라. 外國子會社의 配當에 대응된 外國法人稅

공제대상이 되는 外國法人稅額은 外國子會社가 源泉地國에서 負擔한 법인세액중 내국법인인 母會社가 지급받은 配當額에 대응되는 部分의 金額이다. 그 計算式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sup>9)</sup>

9) 공제 한도액 계산은 직접공제와 合算해서 함께 계산한다. 그러므로 간접공제의 한도계산이 따로 있을 수 없다.

美國의 공제 한도액 계산도 그 기본 구조는 같다.(IRC § 904(a)).

• (A)=外國子會社の 支給配當額을 계산하는 基礎가 된 소득금액의 外國子會社の 事業年度분 法人稅額. 즉 배당된 소득을 발생시킨 사업연도분 법인세액이다. 과거의 적립금을 移入하여 배당한 경우등에 대하여는 그 區分基準이 따로 상세히 정해져 있다.

• (B)=外國子會社の 지급배당에 관련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C)=內國法人인 母會社가 그 外國子會社로 부터 받은 配當額

$$(A) \times \frac{(C)}{(B)-(A)} = \text{控除對象外國法人稅額}$$

이 계산식은 外國子會社の 支給配當額이 稅後所得을 그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稅後所得額에 대한 支給配當額의 比率에 의하여 내국법인(母會社)이 받은 배당액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배분·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마. 國外所得計算上 外國法人稅의 益金算入

間接控除는 前述한 直接控除와 別途로 독립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外國子會社에 과세된 外國法人稅額을 內國法人인 母會社가 납부한 것으로 看做하여 直接控除方法에 의해 함께 계산하여 稅額控除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직접공제에 있어서 내국법인인 母會社의 課稅所得에 外國法人稅 控除前 所得金額이 合算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間接控除에 있어서도 母會社의 과세소득에는 受入한 配當額만이 아니고, 이 배당의 원천이 된 소득이 外國子會社の 단계에서 부담하는 외국법인세액까지 포함하여 合算하여야 한다. 즉 外國子會社가 배당부분에 대하여 國外에서 부담하는 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인 母會社의 과세소득에 算入됨과 동시에 공제한도액을 계산하는 소득금액에도 算入된다(日·法稅 28, 日·法稅令 48 ②).

이는 직접공제의 경우에 외국법인세액이 損金不算入된 상태 (국외소득에서 外國法人稅額을 공제하지 아니한 상태)로 課稅所得에 合算되는 것과 그趣旨가 같은 것이다.

기타 상세한 것은 이를 생략한다.

## 第8章 要約 및 結論

### 1. 研究의 基本視角

현재 우리나라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급격한 變化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危機가 될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視角에서 보면 또 한번의 도약을 할 수 있는 機會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국민적 潛在力을 동원하고 組織化하여 발전의 역량으로 昇華시키는 일은 앞으로 기업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주도적 役割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기업이 能動的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企業關聯 租稅政策은 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수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企業稅制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기업세제에 대한 基本視角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기업세제가 기업의 경제활동을 歪曲시킬 가능성을 극소화해야 한다는 것 즉 資源配分에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업세제 개편방향 모색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았다.

둘째, 그러한 中立性을 추구하는 가운데도 기업관련 조세정책이 彈力性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기업세제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가 급변하는 對内外興件에 우리 경제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데 있다면 이러한 방향 설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세째, 稅制는 단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실현가능성의 문제의 핵심적 요구이며 그 집행상의 社會的 費用을 줄인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네째, 경제의 全面的 開放에 수반하여 우리나라는 資本輸入國의 위치에서

資本輸出國으로 지위가 변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질 것이 예상되는 바, 그에 기업이 적응할 수 있는 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法人稅 稅率體系의 재검토, 企業體質強化裝置의 합리화, 二重課稅調整制度의 도입 가능성, 減價償却制度의 합리화, 기업의 활력 제고와 대외경쟁력강화를 위한 租稅誘引政策, 그리고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비한 과세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중심으로 현행제도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改善方案을 모색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 2. 法人稅 稅率體系의 再檢討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율은 법인의 種類에 따라 그 最高限界稅率의 높이가 다르고, 또한 2단계 超過累進構造로 되어 있는 바, 법인종류간 세율의 差等化는 資源配分을 왜곡시키고 초과누진구조는 垂直的 公平을 실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公共法人을 제외하고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은 單一比例稅率로 전환시키되 그 높이는 Imputation 制度의 導入을 전제로 35% 수준이 적합할 것으로 보았다. 방위세가 본세에 흡수된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법인세율의 引下調整이 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中小企業法人에 대한 법인세 부담의 輕減은 稅率引下에 의하여 접근하는 것보다 組合課稅方法에 의하는 것이 보다 實効性이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二重課稅調整을 擴充하지 않는다면 30%의 單一比例稅率이 적합할 것으로 제안한 것이다.

## 3. 企業體質 強化裝置의 합리화

현행법은 自己資本 充實化를 유도하기 위하여 增資所得控除制度를 두고, 반면 他人資本에 의한 경영행태를 제지하기 위하여 支給利子를 損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두고있는 바, 自己資本과 他人資本간의 資本費用을 均衡

화시킴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는 그 공제를 인정하는 기간이 너무 短期이기 때문에 그 實効性이 불충분하고 負債比率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채액에서 발생하는 支給利子를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는 제도는 增資를 誘導하는 기능이 비록 있다고 하더라도 架空所得을 법으로 擬製하여 이에 과세하는 근본적인 缺陷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결함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正道는 법인소득에 대한 二重課稅 조정제도임을 상기시키고자 했다.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확충 내지 정식으로 도입하지 않는다면 증자소득공제를 확충하고(공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당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공제액의 5년간 移越控除) 配當稅額控除를 확충하면서 負債比率 200%를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의 損金不算入制度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4. 二重課稅調整制度의 導入 檢討

현행 이중과세제도인 配當稅額控除制度는 매우 불충분하다. 이것이 우리 기업 경영행태에 있어서 借入金依存經營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개방경제하에서는 특히 자본자유화시대를 맞는다고 할 때 기업세제를 국제적으로 調和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서구의 EC제국이 벌써 부터 實定法化하여 실시하고 있는 이중과세 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했다. 만약 우리의 企業稅制가 分離獨立課稅를 고집하면서 세제의 국제적 조화를 게을리한다면 발이 빠른 資本은 이중과세를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세 부담이 낮은 나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EC제국이 실시하고 있는 Imputation 方法의 도입이 바람직하나 法人稅收 減少의 衝擊을 줄이려고 한다면 과도기적으로 캐나다가 실시하던 50% Gross-up 方法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5. 減價償却制度의 問題點과 그 改善

먼저 감가상각제도를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대내외여건과 역사적 발전과정에서의 1990년대의 의미를 음미할 때 減價償却制度는 적어도 당분간은 적극적인 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촉진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減價償却制度를 보면 외형적으로는 다양한 특별가속상각제도들이 도입되어 있어 자본형성을 적극 지원해 주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기본제도에 있어서 대체로 내용연수가 길고 殘價率 등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들이 남아 있어서 자본비용의 회수가 충분히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 1990년대에 들어와 중기 내지는 장기적으로 물가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국면에 처해있어 減價償却과 관련된 인플레이稅를 조정해주는 장치가 보완되어야 함을 주장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인식에 바탕을 두어 본장에서 주장하고있는 減價償却制度의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계설비 등 제조업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산의 減價償却期間을 대폭 단축한다.

둘째, 이와함께 복잡한 세제상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특별상각제도는 완전히 폐지한다.

세째,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플레 조정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계 설비등에 대해서는 Auerbach-Jorgenson 등이 주장한 초년도 비용회수제도를 도입한다.

네째, 이와함께 자산재평가제도의 성격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이상과 같은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는데는 여러가지 좀더 검토하여야 할 점이 있고 준비해야 할 일도 생기게 마련이다. 따라서 좀 더 충분한 연구와 토의 및 각계의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이 제도의 채택여부가 결정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減價償却期間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한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6. 企業의 競爭力 強化와 租稅誘因政策

租稅誘因은 특정한 기업이나 산업에 혜택을 주자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태를 장려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억제하기 위한 유인장치일 뿐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評價基準은 철저하게 合理主義的인 것이어야 하며 效率性分析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제상의 유인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정부는 항상 그 유효성 즉 유도하고자 하는 성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租稅誘因政策의 유효성을 제고하면서 자원배분에 일반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산만한 租稅誘因體系를 단순화하고 體系化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용이 용이하고 기대되는 세부담 경감효과등이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기업의 의사결정에 직접영향을 주고 정책이 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조세정책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정선된 정책목표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추구할 수 있도록 誘因體系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현 租稅誘因體系를 대폭적으로 정비하고 단순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지원정책을 앞에서 논의한대로 일반 감가상각제도를 가속화 함으로써 대체하고 기술개발 등 構造調整과 成長潛在力의 배양에 불가피한 조치만을 세제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産業의 空洞化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構造的 高度化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로 技術 및 人力開發의 지원이 강화되고 그 실효성이 높아져야 한다.

둘째로 創業中小企業 등 이노베이션을 장려하는 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큰



부분에 지원이 집중되어야 한다.

세째로 지역간 균형개발이나 환경개선 등과 관련한 유인에 있어서는 지원효과가 있는 유인 뿐 아니라 罰則의 성격이 있는 유인도 균형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네째, 租稅誘因制度에 전체적으로 충분한 조정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종합한도제나 중복지원배제제도 등이 불필요해지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유인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실효가 적고 관리가 복잡한 準備金制度 등은 投資稅額控除 등 단순하고 그 효과를 쉽게 알 수 있는 유인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誘因制度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고 평가하기위하여 租稅支出 豫算制度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 7. 企業의 海外進出과 그 課稅合理化

1). 현행 外國納付稅額控除는 우리나라의 법인기업이 支店 등(국외에 恒久施設설치)을 국외에 두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인바, 이는 공제세액한도액 계산방법을 현행 國別計算에서 一括計算으로 개정하고 또한 공제세액의 移越控除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현행규정을 5년간의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법으로 개정할 것을 提案했다. 일본 미국등 선진국들은 기업의 대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外國稅額控除方法에서 공제한도액 계산에는 一括計算方法을 채택하고, 당년도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세액에 대하여는 遡及控除(carry back)와 移越控除(carry-over)를 허용하고 있다.

2).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母企業法人이 국외에 子會社를 설립하여 경제활동을 하여 稼得한 이윤을 母會社가 配當을 받은 경우 그 수입배당금을 母會社의 課稅所得에 산입하면서도 그 자회사가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모회사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지 않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세법이 國際的 二重課稅 調整方法의 하나인 間接控除法을 도입하고 있지 아니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子會社 設立形態)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금의 시대적 변화와 환경은 앞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업 세제도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방법으로서 국외의 자회사가 국외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국내의 모기업법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間接控除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간접공제법을 미국 일본 등 선진제국이 이미 실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 參 考 文 獻

### • 國內文獻

- 郭泰元,『減價償却制度와 資本所得課稅』,韓國開發研究院,1985.
- “産業政策에 있어서 租稅制度의 役割,”『韓國開發研究』8권1호(1986 봄),韓國開發研究院,1986, pp. 77-97.
- “資産再評價制度의 改善方向,”郭泰元·李啓植 編『租稅政策과 稅制發展』,韓國開發研究院,1986, pp. 275-97.
- 金完淳·鄭泰仁,“國際租稅分野,”『韓國稅制의 合理化研究』,韓國租稅研究所,1988.
- 申瓚秀,『最新稅務會計』,조세통람사,1990.
- 李元暎,『研究開發投資와 稅制上의 誘因政策』,韓國開發研究院,1984.
- 申鉉權·崔洸,『租稅支出豫算制度와 財政運用』,研究叢書2,韓國財政學會,1988.
- 韓國租稅研究所,『主要國의 法人所得課稅制度』,1987.

### • 外國文獻

- 佐藤進,『付加價值稅論』東京:稅務經濟協會,1973.
- 品川芳宣,『課稅所得 と 企業利益』,東京:稅務研究會,1982.
- 渡邊淑夫,『外國稅額控除:國際的 二重課稅排除制度研究』,東京:同文館,1980.
- Auerbach, A. and D. Jorgenson, “Inflation-Proof Depreciation of Assets,” *Harvard Business Review*, September-October 1980, pp. 113-18.

- CCH Tax Law Editors, *Explanation of Tax Reform Act of 1986*.  
Commerce Clearing House, Inc., 1986.
- Feldstein, M.S. and D. Frisch, "Corporate Tax Integration : The Estimated Effects on Capital Accumulation and Tax Distribution of Two Integration Proposals," *National Tax Journal*, 30. Mar. 1977.
- Feldstein, M., and L. Summers, "Inflation and the Taxation of Capital Income in the Corporate Sector," *National Tax Journal*, 32 (December 1979), pp. 445-70.
- Hulten, C. R. and F. C. Wykoff, "The Measurement of Economic Depreciation," in C. R. Hulten(ed.), *Depreciation, Inflation, and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Washington: The Urban Institute Press, 1981, pp. 171-238.
- Haberger, A.C., "The Incidence of Corporation Income Tax,"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 June 1962.
- Individual Taxes-A Worldwide Summary*, New York : Price Waterhouse, 1987
- Shoven, J.B. and J. Whalley, "A General Equilibrium Calculation of the Effects of Differential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in the U.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 Nov. 1972.
- The Taxation of Companies in Europe*, 4. Amsterdam : IBFD

• 研究報告書案内 •

◀ 研究叢書 ▶

|            |                                      |      |
|------------|--------------------------------------|------|
| 第1-81-01卷  | 現行税制의 綜合評價와 1982年度 税法改正方向研究          | 1981 |
| 第2-81-02卷  | 韓國經濟 短期豫測模型                          | 1981 |
| 第3-82-01卷  | 우리나라 企業의 人件費支拂能力評價와 賃金對策             | 1982 |
| 第4-82-02卷  | 韓國企業의 成長 및 財務行態                      | 1982 |
| 第5-82-03卷  | 租稅負擔의 測定과 適正負擔率에 관한 研究               | 1982 |
| 第6-82-04卷  | 韓國의 私金融市場에 관한 研究                     | 1982 |
| 第7-82-05卷  | 税法體系의 整備와 改善에 관한 研究                  | 1982 |
| 第8-82-06卷  | 所得稅體系 合理化를 위한 基礎研究                   | 1982 |
| 第9-82-07卷  | 財政機能의 再調整과 行政機能 官僚制度의 改編方案研究         | 1982 |
| 第10-82-08卷 | 韓國租稅文化의 反省과 税制의 綜合改善方向               | 1982 |
| 第11-83-01卷 | 稅收推計模型의 精密化와 中長期 稅收展望                | 1983 |
| 第12-83-02卷 | 韓國企業의 準租稅負擔에 관한 理論的 考察과 負擔水準의 實證的 分析 | 1983 |
| 第13-83-03卷 | 段階的 貿易自由化에 對應한 關稅率과 關稅行政의 改編方向       | 1983 |
| 第14-83-04卷 | 80年代 產業構造 高度化를 위한 輸入自由化와 關稅政策의 方向    | 1983 |
| 第15-83-05卷 | 法人所得과 配當所得의 二重課稅調整에 관한 研究            | 1983 |
| 第16-84-01卷 | 韓國의 貿易發展과 綜合貿易商社의 役割                 | 1984 |
| 第17-84-02卷 | 韓國의 赤字財政 研究                          | 1984 |
| 第18-84-03卷 | 韓國의 土地稅制 改編方向 研究                     | 1984 |
| 第19-84-04卷 | 臺灣의 產業政策                             | 1984 |

|            |                               |      |
|------------|-------------------------------|------|
| 第20-85-01卷 | 韓國의 地方財政 研究                   | 1985 |
| 第21-85-02卷 | 纖維産業의 構造調整에 관한 實證研究           | 1985 |
| 第22-85-03卷 | 稅法上 實質課稅에 관한 研究               | 1985 |
| 第23-85-04卷 | 金融費用增加와 物價上昇에 관한 微視的 分析       | 1985 |
| 第24-85-05卷 | 經濟體質強化를 위한 租稅政策方向             | 1985 |
| 第25-85-06卷 | 韓國貿易構造의 決定要因과 變化推移에 관한 研究     | 1985 |
| 第26-85-07卷 | 韓國企業의 經營特性要因에 관한 研究(Ⅰ)        | 1985 |
| 第27-85-08卷 | 半導體産業의 現況과 育成政策               | 1985 |
| 第28-86-01卷 | 信用配分과 金融自律化의 方向               | 1986 |
| 第29-86-02卷 | 우리나라 通貨의 役割과 産業別 資金配分の 效率性 分析 | 1986 |
| 第30-86-03卷 | 市場經濟體制의 高度化와 公正去來秩序           | 1986 |
| 第31-86-04卷 | 産業別 技術革新過程과 政策課題              | 1986 |
| 第32-86-05卷 | 製造業部門 比較優位構造의 變化推移에 관한 研究     | 1986 |
| 第33-86-06卷 | 非上場株式 課稅評價方法의 合理化方案           | 1986 |
| 第34-86-07卷 | 韓國과 臺灣의 通貨政策 및 物價             | 1986 |
| 第35-86-08卷 | 企業의 準租稅負擔에 관한 實證的 研究          | 1986 |
| 第36-86-09卷 | 韓國經濟學 研究序說                    | 1986 |
| 第37-86-10卷 | 韓國의 中小企業과 系列化                 | 1986 |
| 第38-87-01卷 | 海外轉換社債發行과 企業財務戰略              | 1987 |
| 第39-87-02卷 | 政府와 市場                        | 1987 |
| 第40-87-03卷 | 開放經濟下의 資金政策                   | 1987 |
| 第41-87-04卷 | 換率變動에 따른 韓·日의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   | 1987 |
| 第42-87-05卷 | 韓國의 地下經濟에 관한 研究               | 1987 |
| 第43-87-06卷 | 企業集團의 形成메카니즘과 評價              | 1987 |
| 第44-87-07卷 | 韓國 企業그룹의 多角化戰略 研究             | 1987 |

|            |                                          |      |
|------------|------------------------------------------|------|
| 第45-87-08卷 | 換率變動에 따른 國際競爭力과 産業內貿易의 變化推移              | 1987 |
| 第46-87-09卷 | 中小企業의 知識集約化에 관한 研究                       | 1987 |
| 第47-87-10卷 | 우리나라 相續課稅制度的 改編方案 研究                     | 1987 |
| 第48-88-01卷 | 技術革新의 産業組織的 特性에 관한 研究                    | 1988 |
| 第49-88-02卷 | 企業의 技術擴散에 관한 研究                          | 1988 |
| 第50-88-03卷 | 公企業 및 政府出資企業의 民營化 推進方向에 관한 研究            | 1988 |
| 第51-88-04卷 | 産業內貿易의 變化推移와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                 | 1988 |
| 第52-88-05卷 | 臺灣의 租稅構造와 貯蓄·投資                          | 1988 |
| 第53-88-06卷 | 韓國貿易收支와 主要産業 輸出構造 分析                     | 1988 |
| 第54-88-07卷 | 美國貿易의 政治經濟學과 韓國의 對應方案                    | 1988 |
| 第55-88-08卷 | 經濟發展에 있어서 國家財政의 役割                       | 1988 |
| 第56-88-09卷 | 韓國資本主義의 이데올로기 再定立方向                      | 1988 |
| 第57-88-10卷 | 韓國企業의 準租稅에 관한 研究                         | 1988 |
| 第58-88-11卷 | 資本自由化의 巨視經濟的 側面                          | 1988 |
| 第59-88-12卷 | 産業集中度의 決定要因 및 變化要因과 最適企業規模에 관한 研究(I)     | 1988 |
| 第60-89-01卷 | 開放經濟下의 金利政策                              | 1989 |
| 第61-89-02卷 | 韓國 大企業集團의 生成環境과 進路                       | 1989 |
| 第62-89-03卷 | 産業集中度의 決定要因 및 變化要因과 最適企業規模에 관한 研究(II)    | 1989 |
| 第63-89-04卷 | 經濟民主化와 金融通貨政策                            | 1989 |
| 第64-89-05卷 | 南北韓 産業 및 技術協力の 推進方案에 관한 研究               | 1989 |
| 第65-89-06卷 | 蘇聯·東歐諸國의 政治 및 經濟政策의 變化와 産業 및 技術協力에 관한 研究 | 1989 |
| 第66-89-07卷 | 3高現象이 企業採算性에 미치는 效果에 관한 研究               | 1989 |

|            |                                      |      |
|------------|--------------------------------------|------|
| 第67-89-08卷 | 適正換率分析에 관한 理論定立                      | 1989 |
| 第68-89-09卷 | 民間主導型 尖端技術革新을 위한 政策 및 企業戰略에<br>관한 研究 | 1989 |
| 第69-89-10卷 | 우리나라 所得不平等의 現況과 要因分析                 | 1989 |
| 第70-90-01卷 | 日本의 新産業戰略과 技術革新                      | 1990 |
| 第71-90-02卷 | 勞動費用과 國際競爭力                          | 1990 |
| 第72-90-03卷 | 韓國經濟 分期計量模型                          | 1990 |
| 第73-90-04卷 | 韓國의 工業化와 勞動力(I)                      | 1990 |
| 第74-90-05卷 | 主要産業別 向後 投資需要 推定 및 最適<br>資金調達戰略      | 1990 |
| 第75-90-06卷 | 開放經濟下의 企業稅制 改編方向                     | 1990 |

### ◀ 研究調查資料 ▶

|            |                          |      |
|------------|--------------------------|------|
| 第1-81-01卷  | 아시아·太平洋地域의 貿易 및 産業調整     | 1981 |
| 第2-81-02卷  | 現行 租稅의 問題點               | 1981 |
| 第3-82-01卷  | 民主資本主義의 將來               | 1982 |
| 第4-82-02卷  | 地方歲入의 地域的 不均衡에 관한 經驗的 研究 | 1982 |
| 第5-83-01卷  | 政府規制 緩和方向과 美國經濟 展望       | 1983 |
| 第6-83-02卷  | 韓國經濟學의 摸索                | 1983 |
| 第7-83-03卷  |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 1983 |
| 第8-83-04卷  | 民主資本主義와 企業의 成長           | 1983 |
| 第9-83-05卷  | 民主主義와 民間調整機構             | 1983 |
| 第10-83-06卷 | 韓國과 第4次 産業革命 : 1960~2000 | 1983 |
| 第11-83-07卷 | 企業稅制 合理化的의 基礎研究          | 1983 |
| 第12-83-08卷 | 民主資本主義와 韓國의 發展           | 1983 |



|            |                                   |      |
|------------|-----------------------------------|------|
| 第13-83-09卷 | 國民租稅意識의 調查研究                      | 1983 |
| 第14-84-01卷 | 成長經濟에 있어서의 資本所得에 관한 適正稅率과<br>歸着分析 | 1984 |
| 第15-84-02卷 | 資本主義精神과 反資本主義心理                   | 1984 |
| 第16-84-03卷 | 美·日의 産業政策과 韓國의 對應                 | 1984 |
| 第17-84-04卷 | 企業의 社會奉仕                          | 1984 |
| 第18-85-01卷 | 中共의 經濟法令 解說                       | 1985 |
| 第19-85-02卷 | 우리나라 通貨의 役割과 通貨信用政策의 方向           | 1985 |
| 第20-85-03卷 | 家計貯蓄増大를 위한 租稅政策方向                 | 1985 |
| 第21-88-01卷 | 轉換期の 勞使問題와 對應方向(Ⅰ)                | 1988 |
| 第22-88-02卷 | 轉換期の 勞使問題와 對應方向(Ⅱ)                | 1988 |
| 第23-88-03卷 | 換率變動의 輸出入價格에의 轉嫁度와 示唆點            | 1988 |
| 第24-88-04卷 | 金融自律化의 效率的 推進方向                   | 1988 |
| 第25-88-05卷 | 원貨切上에 따른 輸出企業 對應戰略                | 1988 |
| 第26-88-06卷 | 中國의 經濟改革과 韓國企業의 進出                | 1988 |
| 第27-88-07卷 | 國際收支 黑字管理와 巨視經濟政策                 | 1988 |
| 第28-89-01卷 | 원高·賃金上昇의 物價 및 企業利潤에 미치는 影響分<br>析  | 1989 |
| 第29-89-02卷 | 韓國의 物價要因과 金利 및 通貨政策方向             | 1989 |
| 第30-89-03卷 | 韓國企業의 資本構造와 資本費用                  | 1989 |
| 第31-89-04卷 | 賃金構造와 産業構造 再編方向                   | 1989 |
| 第32-89-05卷 | 換率政策의 課題와 展望                      | 1989 |
| 第33-89-06卷 | 研究開發活動에 있어서 公企業과 民間企業의 役割과<br>課題  | 1989 |
| 第34-89-07卷 | 勞總·經總 賃金指針의 比較分析                  | 1989 |
| 第35-90-01卷 | 우리나라 企業의 成長推移 및 規模變動要因分析          | 1990 |
| 第36-90-02卷 | 南美的 經驗과 韓國經濟                      | 1990 |

|            |                                              |      |
|------------|----------------------------------------------|------|
| 第37-90-03卷 | 金利自由化의 成果와 課題                                | 1990 |
| 第38-90-04卷 | 金融實名去來制 導入實施에 따른 經濟的 波及效果<br>및 企業體 設問調查結果 分析 | 1990 |
| 第39-90-05卷 | 混合企業의 經濟的 效果                                 | 1990 |

### ◀ 研究報告 ▶

|           |                                |      |
|-----------|--------------------------------|------|
| 第1-85-01卷 | 金融革新과 通貨金融政策 改編方向              | 1985 |
| 第2-85-02卷 | 金融自律化 및 銀行與信管理 改善方案            | 1985 |
| 第3-86-01卷 | 現行經濟法の 問題點 및 改善方向              | 1986 |
| 第4-87-01卷 | 우리나라에 있어서 金利가 貯蓄·投資에<br>미치는 影響 | 1987 |
| 第5-87-02卷 | 日本의 貿易·資本自由化와 그 對應政策           | 1987 |

### ◀ 政策研究 ▶

|          |                    |      |
|----------|--------------------|------|
| 第1-86-1卷 | 財政規模의 持續的 膨脹과 是正方案 | 1986 |
| 第2-86-2卷 | 經濟力集中에 대한 視角과 認識   | 1986 |
| 第3-86-3卷 | 1987年 通貨政策 運用方向    | 1986 |
| 第4-87-1卷 | 經濟民主化와 市場經濟體制의 定立  | 1987 |
| 第5-87-2卷 | 賃金調整과 對應政策課題       | 1987 |
| 第6-88-1卷 | 經濟民主化의 基本構想        | 1988 |
| 第7-89-1卷 | 3高時代의 對應戰略         | 1989 |